2014. 12. 1. 현재

법 규 집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윤리강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 ·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 ·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일 러 두 기

1. 수록범위

법규집에는 2014년 11월까지 공포된 현행 변호사법, 동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윤리장전,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을 비롯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무에 관한 각종 규칙 및 규정 등을 수록하였다.

2. 목차

각종 규칙 및 규정을 찾기 쉽도록 “ㄱ, ㄴ, ㄷ순 찾기”와 “편목차”를 설치하였다. “편목차”는 크게 “법령, 회칙, 회규”로 나누었으며, “회규”는 다시 “사업계획 등, 회의 등, 변호사등록, 변호사징계, 법제ㆍ인권,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 업무ㆍ홍보, 공익활동 등, 외국법자문사, 회계 등, 사무국 등”으로 나누었다.

3. 찾아보기

규칙 및 규정 등의 이름을 모를 때에는 목차 중 “편목차”를 본다.
규칙 및 규정 등의 이름을 알 때에는 목차 중 “ㄱ, ㄴ, ㄷ순 찾기”를 본다.

4. 개정 연월일 표시

개정된 조ㆍ항ㆍ호에는 개정 연월일을 표시하되 2회 이상의 개정 조항에는 최종 개정 연월일만 표시하였다.

목 차

법 령

- 변호사법 ····· 17
- 변호사법 시행령 ····· 58
- 변호사시험법 ····· 77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 82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89
- 외국법자문사법 ····· 92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 108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 115

회 칙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 121
- 변호사윤리장전 ····· 137
-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 146

회 규

1. 사업계획 등

- 사업계획규칙 ····· 153
- 회규관리규칙 ····· 155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 157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 166
- 선거관리위원회규정 ····· 193
- 임원인사규칙 ····· 195
- 임원선거규칙 ····· 202
-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 208
- 회칙개정특별위원회규정 ····· 209

2. 회의 등

- 총회운영규칙 ····· 211
- 이사회운영규칙 ····· 219
- 상임이사회운영규칙 ····· 221
- 위원회운영규칙 ····· 222

3. 변호사 등록

- 변호사등록규칙 ····· 227
-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 240

CONTENTS

- 변호사등록규칙에의한각종신고서의첨부서류에관한규정 ····· 290
-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 294
-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 299
-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 307
-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 309
- 변호사신분증규칙 ····· 325
-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 329

4. 변호사 징계

- 변호사징계규칙 ····· 332
-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 345
- 윤리위원회규정 ····· 348
- 윤리위원회운영세칙 ····· 351
-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규정 ····· 352

5. 법제 · 인권

- 사법평가위원회규정 ····· 354
-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 356
-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 358
-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 360
-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 362
- 법조제도연구위원회규정 ····· 364
-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 366
-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 367
- 간통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 369
- 반부패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 371
- 당직변호위원회규정 ····· 373
- 여성아동위원회규정 ····· 375
- 지식재산권위원회규정 ····· 378
- 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규정 ····· 380
- 모의재판경연대회운영위원회규칙 ····· 382
- 변협포럼운영규정 ····· 384
- 독도특별위원회규정 ····· 386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 388
- 노인법률지원위원회규정 ····· 390
-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규정 ····· 392
-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운영규정 ····· 394
-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규정 ····· 397
- 공익소송특별위원회규정 ····· 399

목 차

-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 401
-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 403
-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규정 ····· 405
-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규정 ····· 407
- 입법평가위원회규정 ····· 409
-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규정 ····· 411

6. 변호사 연수 등

- 변호사연수규칙 ····· 413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 422
- 개별연수방법등에관한규정 ····· 433
-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규정 ····· 437
- 한국법률문화상규칙 ····· 438

7. 변호사 업무 · 홍보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441
-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 446
-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 447
-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 451
- 변호사사무원규칙 ····· 453
- 고충처리위원회규정 ····· 456
- 고충처리위원회시행세칙 ····· 458
- 회지간행규칙 ····· 463
- 회지편집위원회규정 ····· 466
-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 468
- 회지게재논문심사규정 ····· 470
- 종합지간행규칙 ····· 472
- 종합지편집위원회규정 ····· 474
- 신문간행규칙 ····· 475
-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 480
-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 481
- 대변인규정 ····· 485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 486
-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 491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 494
-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 496
- 변호사백서간행특별위원회규정 ····· 500
- 협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 502
-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규정 ····· 504

CONTENTS

-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 506
-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 508
- 2020년IBA총회서울유치추진위원회규정 ····· 509
- 국제교류특별위원회규정 ····· 511
- 자료보존특별위원회규정 ····· 513
- 정치발전위원회규정 ····· 515
- IT특별위원회규정 ····· 517
-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규정 ····· 519
- 법조일원화위원회규정 ····· 521
- 법관임용지원자 평가지침 ····· 523
-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 526
-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 528
- IT법정책위원회규정 ····· 530
- 입법 · 행정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 532
- 도산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 534

8. 공익활동 등

-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 536
-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 539
- 변호사공익대상규정 ····· 541

9.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 ····· 543
-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 545
-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 ····· 553
-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 591
-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 592
-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 596
-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 604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 608

10. 회계 등

- 예산회계규칙 ····· 612
- 회계처리규정 ····· 622
- 분담금납부규칙 ····· 631
- 위임전결규정 ····· 633
- 여비규정 ····· 635
- 임원등해외여비규정 ····· 639

목 차

- 변호사포상규칙 ····· 640
- 경조규정 ····· 644
- 세제위원회규정 ····· 646
-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 648

11. 사무국 등

- 사무국직제규칙 ····· 650
-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 657
- 직원인사규칙 ····· 658
- 직원인사규정 ····· 664
- 급여규정 ····· 676
- 사무처리규정 ····· 681

12. 규칙 · 규정 번호 ····· 706

13. 폐지된 회규 ····· 711

CONTENTS

ㄱ, ㄴ, ㄷ 순 찾기

【ㄱ부】
- 간통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 369
- 개별연수방법등에관한규정 ····· 433
- 경조규정 ····· 644
- 고충처리위원회규정 ····· 456
- 고충처리위원회시행세칙 ····· 458
- 공익소송특별위원회규정 ····· 399
-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 536
-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 539
-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 294
- 국제교류특별위원회규정 ····· 511
-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 403
-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규정 ····· 397
- 급여규정 ····· 676

【ㄴ•ㄷ부】
- 노인법률지원위원회규정 ····· 390
-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 401
- 당직변호위원회규정 ····· 373
- 대변인규정 ····· 485
-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 648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 121
-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 480
-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 329
- 도산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 534
- 독도특별위원회규정 ····· 386

【ㅁ부】
-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규정 ····· 407
-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 508
- 모의재판경연대회운영위원회규칙 ····· 382
-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운영규정 ····· 394

목 차

【ㅂ부】

- 반부패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 371
-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규정 ····· 392
- 법관임용지원자 평가지침 ····· 523
-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 506
-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 299
-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 307
-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규정 ····· 437
-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 491
- 법조일원화위원회규정 ····· 521
- 법조제도연구위원회규정 ····· 364
- 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규정 ····· 380
- 변협포럼운영규정 ····· 384
- 변호사공익대상규정 ····· 541
- 변호사등록규칙 ····· 227
- 변호사등록규칙에의한각종신고서의첨부서류에관한규정 ····· 290
-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 240
- 변호사백서간행특별위원회규정 ····· 500
- 변호사법 ····· 17
- 변호사법 시행령 ····· 58
- 변호사사무원규칙 ····· 453
-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 451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 422
- 변호사시험법 ····· 77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 89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 82
- 변호사신분증규칙 ····· 325
-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 481
- 변호사업무광고규정 ····· 441
- 변호사연수규칙 ····· 413
- 변호사윤리장전 ····· 137
-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규정 ····· 352
-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 447
-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규정 ····· 504
- 변호사징계규칙 ····· 332
-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 345
- 변호사포상규칙 ····· 640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 388
- 분담금납부규칙 ····· 631

CONTENTS

【ㅅ부】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 494
- 사무국직제규칙 ····· 650
- 사무처리규정 ····· 681
-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 657
-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 356
- 사법평가위원회규정 ····· 354
- 사업계획규칙 ····· 153
-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 367
- 상임이사회운영규칙 ····· 221
- 선거관리위원회규정 ····· 193
-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규정 ····· 411
- 세제위원회규정 ····· 646
- 신문간행규칙 ····· 475

【ㅇ부】

- 여비규정 ····· 635
-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 496
- 여성아동위원회규정 ····· 375
- 예산회계규칙 ····· 612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 608
-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 545
-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 ····· 553
- 외국법자문사법 ····· 92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 115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 108
-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 592
-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 604
-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 146
-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 ····· 543
-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 596
-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 591
- 위원회운영규칙 ····· 222
- 위임전결규정 ····· 633
- 윤리위원회규정 ····· 348
- 윤리위원회운영세칙 ····· 351
- 이사회운영규칙 ····· 219
-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 468
-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 446
-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 526

목 차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규정 ····· 405
임원등해외여비규정 ····· 639
임원선거규칙 ····· 202
임원인사규칙 ····· 195
입법 · 행정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 532
입법평가위원회규정 ····· 409

【ㅈ부】
자료보존특별위원회규정 ····· 513
정치발전위원회규정 ····· 515
종합지간행규칙 ····· 472
종합지편집위원회규정 ····· 474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 309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 208
지식재산권위원회규정 ····· 378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규정 ····· 519
직원인사규정 ····· 664
직원인사규칙 ····· 658

【ㅊ•ㅌ 부】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 486
총회운영규칙 ····· 211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 358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 360

【ㅎ부】
한국법률문화상규칙 ····· 438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 366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 166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 157
협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 502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 528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 362
회계처리규정 ····· 622
회규관리규칙 ····· 155
회지간행규칙 ····· 463
회지게재논문심사규정 ····· 470
회지편집위원회규정 ····· 466
회칙개정특별위원회규정 ····· 209

CONTENTS

【기타】

- 2020년IBA총회서울유치추진위원회규정 ····· 509
- IT법정책위원회규정 ····· 530
- IT특별위원회규정 ····· 517

법 령

법 령

변호사법

1949. 11. 7.
법률 제63호

개정 1962. 4. 2. 법률 제1047호 1962. 9. 24. 법률 제1154호
1971. 12. 28. 법률 제2329호 1973. 1. 25. 법률 제2453호
1973. 12. 30. 법률 제2654호 1982. 12. 31. 법률 제3594호
1985. 9. 14. 법률 제3790호 1987. 12. 04. 법률 제3992호
1993. 3. 10. 법률 제4544호 1995. 12. 29. 법률 제5055호
1996. 12. 12. 법률 제5177호 1997. 12. 31. 법률 제5453호
1999. 2. 5. 법률 제5815호 2000. 1. 28. 법률 제6207호
2004. 1. 20. 법률 제7082호 2005. 1. 27. 법률 제7357호
2005. 3. 31. 법률 제7428호 2007. 1. 26. 법률 제8271호
2007. 3. 29. 법률 제8321호 2008. 3. 28. 법률 제8991호
2009. 2. 6. 법률 제9416호 2011. 4. 5. 법률 제10540호
2011. 5. 17. 법률 제10627호 2011. 7. 25. 법률 제10922호
2012. 1. 17. 법률 제11160호 2013. 5. 28. 법률 제11825호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제 1 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 3. 28〉

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2 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 3. 28〉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 〈삭제〉 (2008. 3. 28)

제 3 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 3. 28〉

제7조 [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

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 5. 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8. 3. 28.)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조 [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 [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 [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 [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 [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 [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 [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4 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 3. 28〉

제21조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2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 [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 ·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 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5. 17., 2013. 5. 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 5. 17)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 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 수사기관 · 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 [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 [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5 장 법무법인 〈개정 2008. 3. 28〉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 ·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 · 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4조 [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 [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 [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2. 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1조 [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 [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4조 [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5조 [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5조의2 [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56조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 [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 1. 27.〉

제58조의2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 [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 ·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5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9 [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0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2 [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3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4 [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5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6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7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장의3 법무조합 〈신설 2005. 1. 27〉

제58조의18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9 [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0 [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 · 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2 [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3 [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4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 · 감독한 구성

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6 [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7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8 [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9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0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1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 6 장 〈삭제〉 〈2005. 1. 27.〉

제59조 〈삭제〉 (2005. 1. 27.)

제60조 〈삭제〉 (2004. 1. 27.)

제61조 〈삭제〉 (2005. 1. 27.)

제62조 〈삭제〉 (2005. 1. 27.)

제63조 〈삭제〉 (2005. 1. 27.)

제 7 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 3. 28〉

제64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 · 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 수 · 선임 ·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 [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8조 [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 [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의2 [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70조 [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전문개정 2008. 3. 28.)

제71조 [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수습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 [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5조 [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5조의2 [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의2 [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 8 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 3. 28.〉

제78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9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의2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81조 [임원]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호의 임원의 구성 · 수 · 선임 ·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82조 [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83조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 [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 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 · 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6조 [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 9 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 3. 28〉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 1. 26.)

제89조 [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 · 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 · 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8.)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2 [윤리협의회의 구성]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3 [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 ·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 · 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 ·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 · 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종전 제89조의6은 제89조의7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 · 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89조의7은 제89조의8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8 [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의 위원 · 간사 · 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7에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 10 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 3. 28〉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전문개정 2008. 3. 28.)

제91조 [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2조의2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경우 검사 2명 중 1명은 법무부차관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5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

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2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 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3 [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4 [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9조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1조 [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1조의2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 ·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11 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10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0조 [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 · 검사, 그 밖에 재판 ·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 ·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08. 3. 28.)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 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3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17.)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5.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6.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4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116조 [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7조 [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 · 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5. 28)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17., 2013. 5. 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 · 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8.)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그 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3. 5. 28.)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전문개정 2008. 3. 28.)

부 칙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공증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법률 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7082호, 2004. 1. 20.〉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 칙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은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 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 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 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894호, 2006. 3. 2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 칙 〈법률 제8271호, 2007. 1. 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991호, 2008. 3. 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증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 〈법률 제10540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627호, 2011.5.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922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160호, 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825호, 2013.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589호, 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변호사법 시행령

1970. 4. 15.
대통령령 제4918호

개정 1964. 7. 7. 대통령령 제 7172호
전문개정 1983. 2. 23. 대통령령 제11061호
개정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53호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4호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1호 2007. 7. 27. 대통령령 제20196호
2008. 9. 3. 대통령령 제20983호 2010. 2. 4.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5호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
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 · 법인 · 조합 · 단체나 사무소 중에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2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2. 6. 7.) (전문개정 2008. 9. 3.)

제7조 [장부의 작성 · 보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 · 당사자 ·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 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7조의2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 · 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2.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3. 「군사법원법」 제5조 각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4.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6.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7. 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7조의3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변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1. 10. 26.)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9)

1. 재판기관
   가. 헌법재판소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다. 「군사법원법」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
2. 수사기관
   가.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나.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경찰서
   다. 「정부조직법」 제37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제5장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마.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전문개정 2008. 9. 3.)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9. 3.)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전문개정 2008. 9. 3.)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4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

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무법인(유한)은 제4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5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 ①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 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적은 후 제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7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4조 〈삭제〉 (2005. 7. 27.)

제15조 〈삭제〉 (2005. 7. 27.)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08. 9. 3.)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 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18조 [법조윤리협의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7. 27.)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의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의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2 [윤리협의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를 대표하고 윤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3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4 [윤리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5 [윤리협의회의 의사] 윤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6 [윤리협의회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의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7 [윤리협의회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의회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8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 윤리협의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9 [윤리협의회의 재원]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10 [윤리협의회의 규칙] 윤리협의회는 윤리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법 제50조 ·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

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③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④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13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1. 20.)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 · 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본조신설 2011. 10. 26.)

제20조의14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본조신설 2011. 10. 26.)

제20조의15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를 말한다)
2. 퇴직공직자의 보수
3. 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합·분리,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처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부처는 동일한 부처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의 자격]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사,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9. 3.)

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

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 · 명칭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 · 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 · 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3조의3 [징계정보 열람 ·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①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②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 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1. 영구제명 · 제명: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 · 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 · 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3조의4 [열람 · 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①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 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전문개정 2008. 9. 3.)

제24조의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4조의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4조의5 [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7조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부 칙 〈대통령령 제16914호, 2000. 7. 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③ 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19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983호, 2008. 9.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등록신청, 자격인가 및 개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2.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0〉부터 〈1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265호, 2011.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취업 중인 퇴직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528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 제8장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80〉부터 〈418〉까지 생략

변호사시험법

2009. 5. 28.
법률 제9747호

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 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 · 실시한다.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2명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8조 [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7. 25.)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9747호, 2009.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 [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0923호, 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2009. 8. 29.
대통령령 제21706호

개정 2009. 8. 29. 대통령령 제21706호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59호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1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출원절차,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11. 9. 29.)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출원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 9. 29.)

제4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 [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삭제〉 (2011. 9. 29.)

제12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1. 9. 29.)

제13조 [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응시 의사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그가 낸 응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11. 9. 29.)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시행, 응시자격 유무 및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합격 결정, 시험위원의 관리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운영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30.〉

부 칙 〈대통령령 제21706호, 2009.8.28〉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 · 진동규제법」"을 "「소음 · 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159호, 201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414호, 2014.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

(제7조제1항 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별표 2 (개정 2010. 6. 28.)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제7조제2항 관련)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

(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

개정 2011. 9. 21. 법무부령 제749호
2011. 12. 28. 법무부령 제75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의2 [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5조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 9. 21., 2011. 12. 28.)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제6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 9. 21., 2011. 12. 28.)

1.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2.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제7조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3. 법 제17조 각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
4. 영 제3조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합격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6.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7.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8.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9.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1. 12. 28.)

제8조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9조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9. 21.)

부 칙 〈법무부령 제695호, 201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749호, 201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759호, 201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법

2009. 3. 25.
법률 제9524호

개정 2011. 4. 5. 법률 제10542호
2011. 5. 19. 법률 제10629호
2014. 1. 31. 법률 제1196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원자격국)"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도)·주(주)·성(성)·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의 법령,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제 2 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제4조 [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 · 연구 · 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제6조 [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자격승인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9조 [보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공사단체)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10조 [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2조 [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사(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명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 시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15조 [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제16조 [설립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1. 제2항 각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제1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5. 법무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공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5.)

③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0조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 · 제4항 ·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제21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임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제22조 [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24조 [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중재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조약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제26조 [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체류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 · 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광고] ①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 신문 · 잡지 ·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본다.

제32조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 · 재산의 현황, 수임 · 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 법무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법무사 · 법무사합동법인 · 변리사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 세무사 · 세무법인 · 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법무사사무소 · 법무사합동법인 · 변리사사무소 · 특허법인 · 특허법인(유한) · 공인회계사사무소 · 회계법인 · 세무사사무소 · 세무법인 · 관세

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개정 2013. 7. 30.)

제34조의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3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4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5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본다.

제 6 장 징 계

제36조 [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37조 [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 · 검사 · 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검사 중에서 각 2명
3. 외국법자문사 중에서 각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5.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제3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변호사법」제97조의5를 준용한다.

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변호사법」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4조 [징계의 집행・절차 등] ①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변호사법」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 제2항・제3항, 제98조의5제3항・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공소)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변호사법」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변호사법」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제 7 장 벌 칙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2.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변호사법」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및 이에 고용된 변호사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관청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및 이에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3.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4. 제35조에서 준용되는「변호사법」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계쟁권리)를 양수한 사람
5.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사람

제50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4. 5.)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4.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9524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542호, 2011. 4.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변리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6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 [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제5조 [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부 칙 〈제21661호, 2009.8.5〉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5">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td><td rowspan="2">사 진
(3㎝×4㎝)

※ 6개월내에
촬영한 것</td></tr>
<tr><td>성 명</td><td colspan="2">(원 어)
(한 글)
(영 어)</td><td>성별</td><td>□ 남
□ 여</td></tr>
<tr><td>국 적</td><td></td><td>생년월일</td><td></td><td>출생지</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원 어)
(한 글)
(영 어)</td></tr>
<tr><td rowspan="2">외국
변호사
자격</td><td colspan="3">자격취득국가</td><td colspan="2" rowspan="2">외국변호사 명칭
(원 어)
(한 글)
(영 어)</td></tr>
<tr><td colspan="3">자격 취득연월일
년 월 일</td></tr>
<tr><td colspan="6">본인은 위 외국변호사자격에 기초하여 「외국법자문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무부장관 귀하

담당자:</td></tr>
</table>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서 약 서

Sworn Statement

1. 본인은「외국법자문사법」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do not come under any Item of the Article 5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2. 본인은「외국법자문사법」제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성실히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will sincerely perform my duty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after registering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provided in the Article 1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upon being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ovided in the Article 6 of the same Act.

년 월 일

이 름
서 명

법 무 부 장 관 귀하

담당자: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참고]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Article 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disqualified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1.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terminated or the exemption from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made definite;
2.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execution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the stay of the execution of the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or for whom two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lapse of the stay period;
3.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sentence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a stay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4.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fired from a public service through an impeachment or thre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dismissed or put to a heavier punishment through a disciplinary action;
5.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was put to an action equivalent to a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0 subparagraph 1 through 3 or Article 102 paragraph ②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for whom such an action has not been invalidated yet; and
6. A person who is incompetent, quasi-incompetent, or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is not yet rehabilitated, and a person who is treated likewise in accordance with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n original license country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서

1. 명칭

2. 사무실

주소:

전화: FAX:

3. 구성원 인적사항

가.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나.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4. 본점사무소

명칭 원어:

한글:

영어:

소재지: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 시기:

최초 사무소 소재지(본점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5. 대표자

본인은 (언제, 어느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사무소의 대표사무소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
3.

년 월 일

이 름
서 명

법 무 부 장 관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2011. 5. 6.
법무부령 제7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 · 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2.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10년 이상 해당 외국법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40조제2항제5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률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기피·회피]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정서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법무부령 제739호, 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 칙

회 칙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1952. 8. 29. 제 정 1963. 9. 16. 개 정
1970. 10. 7. 개 정 1974. 2. 12. 개 정
1983. 2. 8. 전문개정 1990. 2. 24. 개 정
1993. 6. 5. 개 정 1995. 10. 10. 개 정
1996. 6. 28. 개 정 1998. 6. 8. 개 정
2000. 7. 19. 개 정 2006. 2. 20. 개 정
2007. 7. 23. 개 정 2009. 2. 26. 개 정
2009. 10. 19. 개 정 2010. 2. 8. 개 정
2010. 12. 20. 개 정 2011. 12. 12. 개 정
2012. 10. 15. 개 정 2014. 2. 24. 개 정
2014. 10. 13.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앙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개정 2006. 2. 20.)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신설 2010. 2. 8.)

제3조 [구성] ① 이 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 [소재지] 이 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의견발표와 건의] ① 이 회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제1항의 의견발표와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회지의 간행]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8.)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2. 8.)
3.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신문의 간행] ① 이 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간행한다.

② 신문에는 법조회고, 논단, 판례 평석, 이 회 및 회원의 동정 및 기타 법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③ 신문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개정 2006. 2. 20.)

④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개정 2014. 2. 24.)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 ·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3.)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9.)

⑦ 외국회원은 이 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경우 이 회의 "외국회원(foreign member)"임을 부기하여야 하고, 달리 변호사 또는 개인회원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0. 2. 8.)

제9조의2 [공익활동 참가 등]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10조 [준회원]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 · 의무와 변호사의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개정 2011. 12. 12.) 다만, 선출직 대의원의 비례 및 균등 배정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로 인하여 위 대의원 총수와 비례 및 균등 배정 대의원의 비율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더라도 그 오차범위가 3% 이하일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0. 15.)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회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④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협회장 당선자가 대의원 선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2.)

제12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12. 12.)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5.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4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회원은 예산 또는 결산 의안 중 직접 외국회원에 관한 사항 및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회칙, 회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2. 8.)

제17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8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 6. 28.)
4.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5.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5의2. 조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5의3.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6.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 [의장 및 부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제22조 [준용규정]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

제23조 [종류]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 회 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내 (개정 2011. 12. 12.)
3. 상임이사 15인 이내

4. 이　　사　50인 이내 (개정 2011. 12. 12.)

5. 감　　사　3인 이내 (개정 2011. 12. 12.)

제24조 [선임]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총 유효 투표수의 1/3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1. 12. 12.)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고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⑤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1. 12. 12.)

⑥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1. 12. 12.)

제25조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9.)

제26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7조 [직무]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겸하지 못하며,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독립하여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0. 13.)

제27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등] ① 협회장 및 기타 임원, 대의원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2.)

제 6 장 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제28조 [상임이사회]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의2. 징계개시청구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징계혐의사건의 조사회부에 관한 사항

3의3.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3의4.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3의5.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의6.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3의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3의8.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3의9.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2. 8.)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 [상임이사회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위원회]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2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1998. 6. 8.)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제 7 장 사 무 국

제33조 [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4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0.)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④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 [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등록과 신고

제36조 [변호사의 등록]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 (개정 2009. 2. 26.)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변호사의 신고] 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한 때
2.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
3. 휴업한 때
4. 변호사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② 변호사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회에 등록하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0. 2. 8.)

제39조 [합동사무소의 신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8.)

1. 설립 및 설치
2. 규약의 변경 및 사무소의 이전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4. 업무집행정지사유의 발생
5. 설립인가의 취소

제40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신고]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설립 및 변경의 등기
2.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및 합병

제40조의2 [법무조합의 신고]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
2. 규약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본조신설 2006. 2. 20.)

제40조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0조의 2에서 이동 2006. 2. 20.)

제40조의4 [위임규정] ①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 3에서 이동 2006. 2. 20.)

제41조 [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6.)

제41조의2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41조의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 9 장 지도와 감독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외국법자문사의 윤리] 외국법자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이 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43조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다.

②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③ 변호사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이 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집합연수와 위탁연수 및 협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이 회는 법 제21조의2제10항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집합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법 제21조의2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12.)

제44조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2. 20.)

④ 〈삭제〉 (2000. 7. 19.)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 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45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징계] 〈삭제〉

제46조 [지방변호사회의 이해조정] 이 회는 지방법원의 신설, 폐합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변호사회의 보고] 지방변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인가
2.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인가
3. 총회의 개최 및 결의내용
4. 임원의 선임 및 퇴임
5. 공무소에 대한 자문회답 및 건의
6.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48조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이 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의2장 징 계

제48조의2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등록한 변호사, 법인회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2. 24.)

제48조의3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신설 1998. 6. 8.)

②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8. 6. 8.)

제48조의4 [위임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6. 8.)

제48조의5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이 회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8.)

제 10 장 법률구조사업

제49조 [사업의 시행] 이 회는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제50조 [법률구조재단의 설치]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법률구조재단을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에 법률구조재단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19.)

제51조 [사업의 기금]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출연금,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독지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 2. 20.)

② 법률구조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타에 전용하지 못한다.

제 11 장 재 정

제52조 [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개정 1990. 2. 24.)
2. 특별회비
3. 등록료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53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년도 세입 ·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특별회계] 이 회는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56조 [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규칙 및 규정] ① 이 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8조 [겸직금지] ① 등록심사위원회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및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0. 2. 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회칙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이사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이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⑤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회칙 제36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⑥ 변호사는 제5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5.)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회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0. 1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9.)

이 회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부 칙 (2009. 10. 1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4조에 관한 사항은 2013년 실시되는 협회장 선거 및 2013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윤리장전

1962. 6. 30. 선 포
1973. 5. 26. 개 정
1993. 5. 24. 개 정
1995. 2. 25. 개 정
2000. 7. 4. 전문개정
2014. 2. 24. 전문개정

윤 리 강 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 ·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 · 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윤 리 규 약

제1장 일반적 윤리

제1조 [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제2조 [기본 윤리] ①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④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 규칙 · 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 [공익 활동 등] 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그에 참여한다.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 ·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중 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8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 · 감독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 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대방 비방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제11조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종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

제 3 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 1 절 일반규정

제13조 [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임 거절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제17조 [국선변호인 등] ①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②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제18조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 2 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제19조 [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0조 [수임 시의 설명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 · 중재인 · 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제24조 [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26조 [공동 직무수행] ① 변호사는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린다.

제27조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제30조[분쟁 조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절 보 수

제31조 [원칙]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32조[서면계약]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추가 보수 등]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보수 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 1 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제35조 [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6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한다.

제 2 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제41조 [비밀 이용 금지]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겸직 시 수임 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겸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제3자에 대한 윤리

제43조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지 아니한다.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업무 형태

제 1 절 법무법인 등

제46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 의무] ①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 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비밀유지의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제48조 [수임 제한] ①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법무법인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49조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법무법인 등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0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변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변호사의 사무소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기 타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2조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53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

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제54조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3.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이 윤리장전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 [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윤리장전은 종전의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계속 중이거나 이 윤리장전 시행 후에 개시되는 징계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2010. 2. 8. 선 포

제 1 장 일반적 윤리

제1조 [목적]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은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윤리]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외국윤리의 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 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4조 [회칙준수 등] 외국법자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회칙, 규칙, 규정,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상의 직무] 외국법자문사는 공익상의 직무를 위촉받아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과대선전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선전 또는 업무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2중사무소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건의 유치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선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주선업자 이용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또는 주선에 관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거나,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대방 비방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개입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제14조 [위법행위 협조금지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증교사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6조 [성실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 · 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임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 친척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8조 [수임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과 친족 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자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인의 외국법자문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이에 위반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뒤에 수임한 사건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

제19조 [수임거절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비밀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외국법자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물건의 수수] 외국법자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문서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수에 관한 윤리

제22조 [적정보수] 외국법자문사의 보수는 경제적 이익,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23조 [서면계약] 외국법자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추가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조건부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보수전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교제용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담당 공무원과의 교제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증거조작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보수의 부당경쟁 규제]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보수분배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 규

회 규

사업계획규칙

1983. 5. 21.
규칙 제9호

개정 2000. 7.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업무집행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업집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사업이라 함은 회칙 제2조에 정한 이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회가 집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② 이 회의 사업은 일반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업을 특별사업으로 하고, 그 나머지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한다.

1. 〈삭제〉 (2000. 7. 4.)
2. 법률구조사업
3. 변호사의 연수

제3조 [적용범위] 이 회의 사업집행에 관하여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사업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집행의 원칙] ① 이 회가 집행하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초에 확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사업연도 초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연도 중 수시로 그 사업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연도 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예산과의 관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과 관련하여 양자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구분] ① 사업계획은 일반사업과 특별사업으로 나누어 책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계획은 그 중요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나누어 책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책정된 장기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연도의 갱신에 불구하고 매년도 수립하는 단기계획에서 이를 엄격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확정] ① 총무이사는 매사업연도 개시 2주일 전까지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책정할 때에는 예산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재무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매사업연도 초에 예산안과 함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집행] ①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는 사업계획에 맞추어 소관 사업을 엄밀히 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매 분기마다 총무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사업계획 집행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행계획의 작성]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사업보고] ① 협회장은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안과 함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를 확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에 앞서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감사의 감사를 받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사업연도 종료 후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대비한 집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감사] ① 감사는 회칙 제27조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하고, 정기감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며,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언제든지 실시한다.

③ 감사는 사업감사 결과 사업 집행상황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지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총회에 사업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집행된 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회규관리규칙

1983. 5. 21.
규칙 제1호

개정 2000. 7. 4.
2001. 10 29.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의 모든 회규의 제정, 개폐 및 공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회규라 함은 회칙, 규칙 및 규정을 말한다.

제3조 [규정사항] ① 회칙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1.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0조 및 제66조의 각호에 열거한 사항 (개정 2000. 7. 4.)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
3. 그 밖의 이 회의 조직,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규칙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회칙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
3.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1.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칙이 될 사항
2. 규칙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
3.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효력] ① 모든 회규는 법, 회칙 또는 이 규칙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규칙과 규칙에 위반되는 규정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③ 회규는 법령 또는 회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회의 모든 회원, 임원 및 직원을 구속한다.

④ 회규는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폐지일에 소멸한다.

제5조 [제정 및 개폐]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규칙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하고, 총회가 이를 의결하여 정한다.

③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 [공포] ① 협회장은 회규가 다음 구분에 따라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은 때
2.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은 때
3.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때

② 회규의 공포는 협회장 명의로 된 공포문서와 그 회규를 지방변호사회에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공포문서에는 제1항에 정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회규가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협회장이 기명날인한 후 협회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회규의 공포일은 제2항의 공포문서가 발송된 날로 한다.

제7조 [회규번호] ① 규칙 및 규정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각 회규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8조 [공고] 공포한 회규는 빠짐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9조 [시행일] 회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또는 시행된 회규는 다른 회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폐지한다. 다만, 1983. 1. 1.부터 시행한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은 새 규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③ [경과조치] 제7조에 의한 회규번호는 이 규칙시행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2012. 2. 20.
규칙 제34호

개정 2012. 5. 7.
2012. 10. 15.
2012. 12. 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1조 제2항, 제5항, 제24조 제1항, 제2항,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30인 이내에서 협회장이 임명하되, 각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학계,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회의 임원, 각 지방변호사회장,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각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이 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협회장, 대의원 및 감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의 각 선거공고일 전 15일을 기준으로 이 회에 등록 및 개업 신고를 한 회원은 각 선거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다.

② 전항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회원의 경우는 재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휴업신고 후 개업신고한 회원의 경우는 당해 개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제 2 장 협회장 선거

제4조 [선거 방법]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유효 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

④ 제1, 2항의 경우 최다득표자의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5조 [선거인 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4일 전까지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을 확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 회 홈페이지에서 각 선거인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 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공고한 사실 및 열람 방법, 열람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우편, 기타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1회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의 기재 사항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결정하여 결정 내용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공고] ① 위원회는 협회장 선거일 49일 전까지 다음 각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협회장 선거일
2. 협회장 선거인 명부
3. 선거운동기간
4.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절차
5. 선거관련 금지행위 등 기타 위원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② 선거공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1. 대한변협신문
2.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제7조 [선거일 및 선거운동기간] ① 협회장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중의 날 중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② 협회장 선거운동기간은 45일로 하고 후보 등록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8조 [후보자등록 및 비용납부] ① 협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공고 시 후보자 등록일로 지정한 날 및 지정시간까지 위원회에 서면 등록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후보자 등록 시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선

거비용을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비용납부 증명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납부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선거 종료 후 선거비용 정산 결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각 후보별 선거비용 부담액이 납부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전액
2.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후보의 귀책사유 없이 후보자 등록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납부금 전액
3. 전 호의 사유 외에 후보자 사퇴, 후보자 등록 무효의 경우에는 납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몰취하고,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금 반환의 사유, 반환 시점,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제9조 [후보자 등록 무효 및 후보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 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후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별 선거사무책임자 및 선거회계책임자] 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후 3일 이내에 이 회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거사무책임자 및 선거회계책임자를 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사무책임자 및 선거회계책임자는 이 회의 회규를 준수하고 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 선거비용 사용 등 선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협회장 선거운동] ① 후보 및 이 회의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선거사무소 개설은 1개소에 한한다.
2.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 · 도화,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발송 기타 배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5.)
3. 위원회가 지정한 정기간행물 중 어느 한 곳에 1회에 한해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4.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15.)
5. 본 조 제3항 각호에 기재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신설 2012. 10. 15.)

② 후보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소 개설
2.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 · 도화, 인쇄물의 발송
3.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 방문
4. 본 조 제3항 각호에 기재된 선거운동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선거운동을 주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2. 합동연설회 개최
3. 공청회, 합동연설회 등의 중계방송 및 이에 관한 동영상 배포, 홈페이지 게재
4.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5. 후보자가 제작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의 3회 발송 (개정 2012. 10. 15.)
6. 선거벽보 제작 및 게시 (개정 2012. 10. 15.)
7.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및 공표
8. 기타 위원회가 이 회의 선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④ 후보자는 제1항 제1호의 선거사무소 개설의 경우 미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 각 신고의 내용이 제12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거나 기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⑤ 본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금지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실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
3.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4. 후보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선거권자, 기타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등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5.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하는 행위
6.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3조 [조기 투표] ① 선거권자가 부득이한 용무 또는 사고로 인해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기 투표일 및 투표기간, 전국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③ 조기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 잔여투표용지를 각 봉쇄·봉인하고 미리 정한 장소로 송부하여 선거일 개표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기 투표함은 선거일에 투표가 종료한 후 개함 및 개표한다.

제14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관리 및 감독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자, 후보별 선거사무책임자, 기타 회원 등에게 일부를 위탁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투표소마다 각 후보가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한 자 1인 이상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투표가 종료되면 당해 투표소 담당 위원의 개표 지시에 따라 조기 투표함, 선거당일 투표함 순으로 개표를 실시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별로 개표 및 집계를 실시하되, 1개의 지방변호사회에 관할 투표소가 수개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개표장소로 모든 투표함을 이송한 후 일괄하여 개표 및 집계를 실시한다.

⑤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별로 개표절차를 주관할 위원 및 위원의 지시에 따라 개표 사무를 수행할 자를 각 1인 이상, 각 후보가 지정한 개표참관인 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투표 무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이 회가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경우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가 정한 이외의 문자 또는 표시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시를 동시에 한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투표가 무효인 경우로 사전 공고하거나 사후에 결정한 경우

제16조 [투표결과 공표]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가 결정되거나 결선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선투표] ① 제4조 제1항에 의한 선거결과 당선자가 없는 경우 협회장 임기 만료일 전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 [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없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제1항의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선거일, 후보자 등록 등 재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궐선거] ① 협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협회장 권한 대행자는 협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의장과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선거일은 협회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날로 한다.

제20조 [선거사무 위탁 및 선거관리자] ①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선거사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소속 회원을 추천받아 당해 지방변호사회의 선거관리자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사무 위탁 및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변호사회와 선거관리자는 위원회의 선거사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 선거

제21조 [대의원 선출] ①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득표자의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12. 12. 5.)

제21조의2 [대의원선거 시 전자투표 실시 등] ① 대의원은 정보 · 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의 실시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을 통한 직접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자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된 전자투 · 개표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투 · 개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대의원의 수] 이사회는 회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4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범위에서 대의원의 총수
2. 지방변호사회별로 비례 배정할 대의원의 수 및 균등 할당 배정할 대의원의 수
3. 대의원 1인을 배정할 일정 회원의 수
4. 대의원 1인을 배정할 일정 회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의원 배정 기준 및 그 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의원의 수에 관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 [대의원 선거일 및 선거운동기간] ① 대의원선거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 20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 10. 15.)

② 대의원 선거운동기간은 14일로 하고 후보자 등록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23조의2 [후보자등록]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5.)

제24조 [대의원 선거구 획정 및 선거인 명부] ① 대의원 선거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지방변호사회 및 선거권자의 사무소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획정한다.

② 위원회는 대의원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선거권자인 소속 회원의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분하여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선거구당 3인 이상 7인 이하의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획정하여야 하고, 3인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인 미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법무법인 등의 소속 선거권자 수가 대의원 3인 이상 7인 이하 기준의 선거구 선거권자의

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등 별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인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의원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제3조 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명부 및 대의원 선거구별 선거인 명부를 각 작성하여야 한다.

⑤, ⑥, ⑦ 〈삭제〉 (2012. 10. 15.)

제25조 [대의원 선거공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1. 대의원 선거일
2. 대의원 선거구 획정표 및 선거인 명부
3. 선거운동기간
4.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절차
5. 선거관련 금지행위 등 위원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② 선거공고는 이 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 [대의원 선거운동 및 금지행위] ① 대의원 후보 및 대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 · 도화,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발송 기타 배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4항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동일한 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5.)
2.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1조 제3항 각호에 기재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소 개설
2.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 · 도화 인쇄물의 발송
3.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 방문
4. 제11조 제3항 각호에 기재된 선거운동

③ 선거공보는 이 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④ 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 소개서 등을 이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⑤ 제12조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준용한다. (신설 2012. 10. 15.)

제27조 [선거 사무] ①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칙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1. 선거구 획정,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이에 관한 열람,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3. 선거공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2. 10. 15.)
5.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금지사항 위반여부에 관한 신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투표소 및 개표소 지정과 설치, 투표용지 배부, 개표, 집계 또는 전자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선거 당일 투표 및 개표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개정 2012. 12. 5.)
7.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회 또는 이 회의 회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대의원 선거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각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 1인 이상을 지방변호사회에 파견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무투표당선] 선거구별 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 [보고] ① 위원회는 대의원 선거 종료 후 지체 없이 투표, 개표 및 집계의 결과, 당선인 명단 및 기타 이 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② 회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협회장 당선자가 대의원 선출 및 보고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5.)

제30조 [대의원 결원] ① 위원회는 대의원이 임기 개시 전 또는 임기 중 사퇴 ·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전체 대의원 수의 10분의 1 또는 지방변호사회별 대의원 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회장이 후임대의원을 지명한다. (개정 2012. 10. 15.)

제30조의2 [준용규정]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31조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2. 10. 15.)

② 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절차 등이 회칙 및 이 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 및 당선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라는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위원회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의 의견이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에 부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총회가 선거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이 규칙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2.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3.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4.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 요청

② 전항 각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 [선거비용] ① 협회장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은 후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이 회의 부담 부분을 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은 이 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2. 10. 15.)

제34조 [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재의 협회장 및 대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종전 규칙에 의한 선출로 정하여진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0.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재의 대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2012. 9. 24.
규정 제115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협회장 선거

제1절 총 칙

제2조 [위임]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의 관리를 지방변호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소속 회원을 추천받아 당해 지방변호사회의 선거관리자로 1인 이상을 위촉한다.

제2절 선거인명부

제3조 [명부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 15일 현재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개인회원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별로 회원성씨의 가, 나, 다 순에 의한 선거인명부 정본 1부를 선거공고일 4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투표소에 제1항의 선거인명부를 사본하여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선거인명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선거인명부에 정본, 사본임을 표시하여 위원회의 직인을 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명부 열람] ①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선거인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사실, 열람 방법 및 열람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공지는 규칙 제6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 3 절 후보자

제5조 [등록신청] ① 협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 및 최고 학위 증명서
3.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4.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에 관한 증명서
5. 명함판 사진 5장 및 사진 파일
6. 선거비용 납부증명서 1부
7. 후보자의 의견 및 공약 등을 기술한 소개서 원고 1부 및 그 파일

② 협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제7호의 후보자 소개서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장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양식 및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등록신청의 수리 거부]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선거비용납부 증명이 없는 등록신청
3.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② 위원회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후보자 사퇴]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 사퇴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등록 등 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규칙 제6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별지 제4호의 가, 나, 다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9조 [후보자의 게재 순위] ①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대리인은 추첨 전에 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참석자의 추첨 이후 잔여 순위번호 중 해당 후보자의 연장자순으로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제 4 절 선거운동

제10조 [광고] 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변협신문
2. 법률관계 전문 신문
3. 법률관계 전문 잡지

제11조 [선거공보] 규칙 제11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선거공보는 선거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 규격 및 내용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 [후보자의 선거 인쇄물] ① 규칙 제11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인쇄물의 규격은 길이 297mm, 너비 210mm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면수는 12면 이내로 한다.

② 인쇄물의 게재내용은 후보자 자신의 사진 · 성명 · 전화번호 · 학력 ·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제13조 [선거벽보] ① 규칙 제11조 제3항 제6호에 의한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길이 530mm, 너비 380mm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 이내로 한다.

② 선거벽보는 회원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거절차

제14조 [선거공고] 규칙 제6조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투표구] ①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1개의 투표구로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지회별로 투표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 [투표소의 설비] 선거관리자는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기표소, 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자의 좌석,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좌석을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용지 등] ① 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조제하여 각 투표소에 선거일(부재자 선거일을 포함한다)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정해진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투표용지의 교부] ① 선거관리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변호사신분증에 의하여 선거인명

부에 등재된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멸실, 훼손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재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투표함의 규격] 투표함의 규격은 별지 제1호 그림과 같이 하고,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투표방법] ① 투표권자는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 아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 중 하나의 기표란을 선택하여 기표도구를 이용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거관리자와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기표소설치] ①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 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표 도구의 모양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10:00~17:00로 한다. 다만, 마감시간 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순번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 [투·개표참관인의 신고] ① 각 후보자 측은 투 · 개표참관인을 각 선정하여 투표소 설치일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의 투 · 개표소별 투 · 개표참관인의 수는 각 2인 이하로 한다.

제24조 [투·개표참관] ① 투 · 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자를 통하여서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사무종사원] 투 ·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사무국직원 중에서 투 · 개표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투·개표참관인 등의 기장] 투 · 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자, 투 · 개표사무원 및 투 · 개표참관인의 가슴에 부착하는 기장은 왼쪽 가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 그림에 의한다.

제27조 [투표록] 투표록의 서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 [투표함 등의 송부] ① 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즉시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를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한 후 그 투입구와 자물쇠에 선거관리자가 봉인을 하여야 하며, 잔여투표용지는 봉투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함 등의 보관]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는 개표 시까지 선거관리자의 책임하에 선거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개표소의 설치] 선거관리자는 적당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설치된 개표소에 투표함의 개함, 점검, 검산,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제31조 [개표절차] ① 선거관리자는 투표가 종료된 후 지정한 개표장소로 투표함을 이동한 후 즉시 개표한다.

② 투표함의 개함 및 점검은 선거관리자가 행한다.

제32조 [개표결과의 보고] ① 선거관리자는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및 선거록에 서명 · 날인 한 후에 즉시 개표결과를 위원회가 정하는 팩시밀리 또는 전자메일 전송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 [투표지의 봉인]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용지를 봉인하고, 선거관리자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규칙 제6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35조 [개표 및 선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위원회는 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하여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절 조기투표

제36조 [조기투표 기간 등] ① 조기투표는 1일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투표일은 선거일 전 날로 한다. 다만, 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 업무일로 한다.

② 조기투표소는 위원회가 회원들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기투표시간은 선거일 10:00~17:00로 한다. 다만, 마감시간 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순번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제37조 [조기투표함의 봉쇄·봉인] ① 조기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 · 봉인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38조 [투표함 등의 운반] 선거관리자는 조기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과 그 열쇠,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서류를 위원회가 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7 절 결선투표

제39조 [결선투표] ① 규칙 제17조에 의한 결선투표는 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결선투표 공고는 선거일 공고 시 한다.

③ 결선투표방식은 임기 만료에 의한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기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대의원 선거

제 1 절 선거인명부

제40조 [명부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개인회원을 조사하여 지방변호사회별로 회원성씨의 가, 나, 다 순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대의원 선거구별 선거인명부 정본 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투표소에 제1항의 선거인명부를 사본하여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선거인명부에 정본, 사본임을 표시하여 위원회의 직인을 각 날인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선거인명부의 비치는 이 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명부 열람] ①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선거인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사실, 열람 방법 및 열람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공지는 규칙 제25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 2 절 후보자

제42조 [등록신청] ① 대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및 그 파일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자기 소개서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장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양식 및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3조 [등록신청의 수리 거부]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② 위원회는 제42조 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후보자 사퇴] 규칙 제30조의 2에 따라 후보 사퇴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5조 [등록 등 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규칙 제25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별지 제4-1호의 가, 나, 다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46조 [후보자의 게재 순위]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 3 절 선거절차

제47조 [선거공고] 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다.

제48조 [준용규정] ①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제16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49조 [당선자공고 등] ① 위원장은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당선자 명단을 별지 제10호 및 제10-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 [재선거·보궐선거] 제2장 제1절 내지 제7절의 규정은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에 준용하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의신청] ① 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에는 취지와 이유 및 증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서는 주문과 이유 및 증거를 설시하고 관여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정본, 사본)

○○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번 호	성 명	등록번호 생년월일	사무소 주소	투 표 용 지 수 령 인	비 고

별지 제2호 서식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후보자구분	협회장
성명	(한자)
변호사등록연월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지방변호사회	
사무소	

년 월 일

협회장 후보자 ㊞

첨부서류
- □ 이력서
- □ 최종학력 및 최고 학위 증명서
- □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증명서
- □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에 관한 증명서
- □ 명함판 사진 5장 및 사진 파일
- □ 선거비용 납부증명서
- □ 후보자의 의견 및 공약 등을 기술한 소개서 원고 및 그 파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1호 서식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후보자구분	대의원
성명	(한자)
변호사등록연월일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지방변호사회	
사무소	

년 월 일

대의원 후보자 ㊞

첨부서류 □ 사진을 첩부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그 파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사 퇴 신 고 서

본인은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대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신청 하였으나 에 의하여 사퇴하고자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가)

공고 제 호

협회장 후보자 등록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구분	협회장
성명	
변호사 등록 연월일	
생년월일	
소속 지방변호사회	
사무소	
최종 학력 및 최고 학위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및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	

별지 제4호 서식 (나)

공고 제 호

후보자 사퇴, 사망 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는 년 월 일 사퇴,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단

번 호	후 보 자 명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다)

공고 제 호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9조에 의하여 그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1. 후 보 자 구 분 :
2. 성 명 :
3. 무효 등의 이유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4-1호 서식 (가)

공고 제 호

대 의 원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 보 자 구 분	대 의 원
성 명	
변호사 등록 연월일	
생 년 월 일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사 무 소	
최종 학력 및 최고 학위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및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	

별지 제4-1호 서식 (나)

공고 제 호

후보자 사퇴, 사망 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는 년 월 일 사퇴,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단

번 호	후 보 자 명	비 고

별지 제4-1호 서식 (다)

공고 제 호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9조 및 제30조의 2에 의하여 그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1. 후 보 자 구 분 :
2. 성 명 :
3. 무효 등의 이유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5호 서식

공고 제 호

선 거 공 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6조 및 동 시행규정 제14조에 의거 제○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선 거 명 : 제○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2. 선거사유 : 협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3. 선거일정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 열람장소 :

□ 후보자 등록기간 :

■ 등록장소 :

□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선거일 :

■ 선거장소 :

□ 결선투표일 :

■ 선거장소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5-1호 서식

공고 제 호

선 거 공 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25조 및 동 시행규정 제47조에 의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선 거 명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2. 선거사유 : 대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3. 선거일정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 열람장소 :

□ 후보자 등록기간 :

■ 등록장소 :

□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선거일 :

■ 선거장소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6호 서식

(백색)

선거관리위원회 (인)

(협회장/대의원) 투 표 용 지

순번	(협회장/대의원) 후보	기표란

별지 제7호 서식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대의원) 선거에 있어 (협회장/대의원) 후보자의 투 · 개표참관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정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다 음

구분	성 명	생 년 월 일	투표구 배정	비 고 (투표 / 개표)
1				
2				
3				
4				
5				
6				
7				
계				

년 월 일

(협회장/대의원) 후보자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투 표 록

(○○ 지방변호사회 ○○ 투표소)

투 표 개 시 시 간 :

투 표 종 료 시 간 :

선 거 권 자 수 :

투 표 자 수 :

기 권 자 수

투표용지 교부수 :

잔여투표용지수 :

특 이 사 항 :

선거관리자 ㊞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별지 제9호 서식

(협회장/대의원) 선거 개표결과

년 월 일 시행한 (협회장/대의원) 선거에서 지방변호사회 개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 선거인수 :

□ 투 표 수 :

□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1.

2.

3.

4.

5.

□ 무효표수 :

□ 기 권 수 :

□ 비 고 :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선거관리자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표에 관여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0호 서식

공고 제 호

당선자 공고

년 월 일 시행한 협회장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협 회 장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0-1호 서식

공고 제 호

당선자 공고

년 월 일 시행한 대의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대 의 원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호 그림

투 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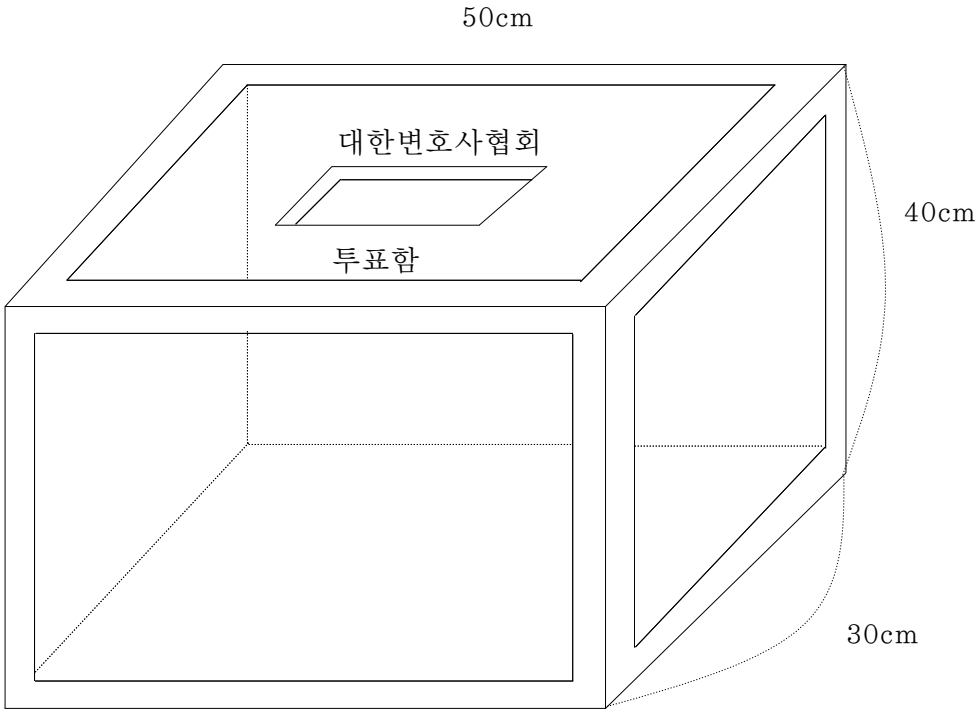

별지 제2호 그림

투표소 및 개표소 출입자의 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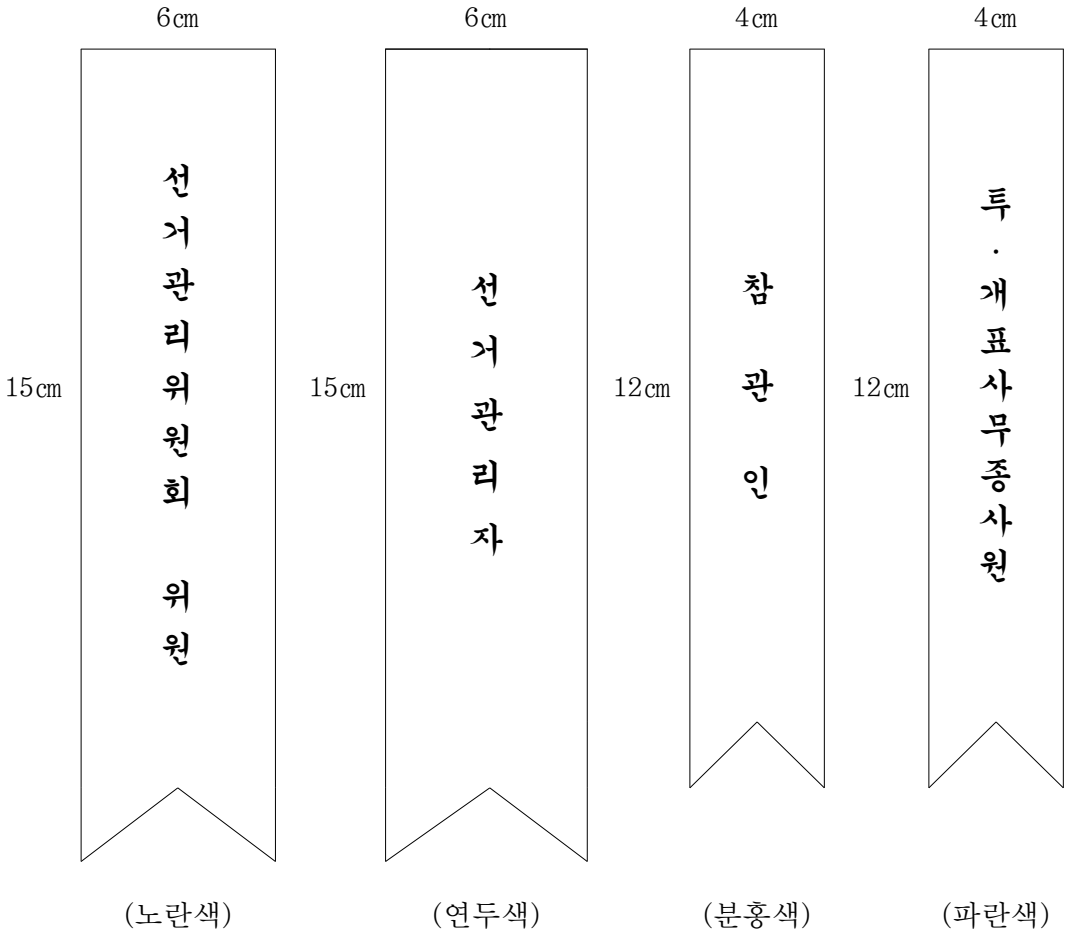

선거관리위원회규정

2012. 4. 23.
규정 제11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회칙 제27조의 2 제2항,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34조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동 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임명하되, 각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학계,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 회의 임원, 각 지방변호사회장,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각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이 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협회장, 대의원 및 감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안 및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한 출장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이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인사규칙

1983. 5. 21.
규칙 제7호

개정 1985. 6. 22. 1988. 2. 27. 1990. 2. 24.
1993. 5. 24. 1996. 6. 29. 1997. 3. 1.
1997. 10. 27. 2000. 7. 4. 2001. 10. 29.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7. 7. 23. 2010. 2. 8. 2010. 12. 20.
2012. 10. 15. 2014. 10. 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임원의 정원과 직무분담, 선임, 직무집행과 보수, 기타 인사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이 회를 위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회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임원과 이 회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성격]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판공비, 직무수당 또는 실비변상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제4조 [겸임금지] ① 〈삭제〉 (2012. 10. 15.)

② 임원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③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고,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며, 부협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5조 [남설금지] 이 회의 임원은 회칙과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남설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 또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2장 정원 및 직무분담

제6조 [상임이사 및 이사회의 정원] ① 상임이사회의 정원은 회칙 제23조 제3호에 따라 1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0. 15.)

② 이사의 정원은 회칙 제23조 제4호에 따라 5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0. 15.)

제7조 [협회장 직무대행]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협회장 중 협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상임이사의 종류] 협회는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상임이사 각 1인 및 그 외의 특정 업무들을 담당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1. 총무이사
2. 재무이사
3. 법제이사
4. 인권이사
5. 교육이사
6. 회원이사
7. 공보이사
8. 국제이사 (개정 2001. 10. 29.)
9. 기획이사 (신설 2003. 10. 27.)
10. 사업이사 (신설 2003. 10. 27.)
11. 윤리이사 (신설 2014. 10. 13.)

제9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이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이 회의 회칙 및 규칙,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개정 2000. 7. 4.)
3.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의사록의 작성
4. 이 회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5.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2. 수입 및 지출의 관리
3. 재산의 관리
4. 기타 이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법제이사] 법제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2. 사법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개선
3. 판례의 조사연구
4. 법령의 질의 및 해석

제12조 [인권이사] 인권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인권사상의 보급 및 계몽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건의
3. 〈삭제〉 (2007. 7. 23.)

제13조 [교육이사] 교육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변호사사무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2.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개정 2006. 2. 20.)
3.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4. 변호사시험합격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개정 2012. 10. 15.)
5. 변호사연수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신설 2012. 10. 15.)

제14조 [회원이사] 회원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안건의 조사 (개정 2014. 10. 13.)
2. 지방변호사회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설립 (개정 2006. 2. 20.)
3. 〈삭제〉 (2014. 10. 13.)
4. 변호사의 권익옹호 및 분쟁조정 (개정 2000. 7. 4.)
5. 회원의 포상, 경조 및 공제
6. 회원의 복지후생

제14조의2 [윤리이사] 윤리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14. 10. 13.)

1.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조사 및 징계
2.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조사 및 징계
3. 기타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윤리와 관련한 사항

제15조 [공보이사] 공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이 회의 홍보, 선전 및 대변
2. 회지 · 신문의 편집 및 간행 (개정 2000. 7. 4.)
3. 법률지식의 보급 기타 출판물의 간행 (개정 1988. 2. 27.)
4. 언론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7. 23.)

제16조 [국제이사] 국제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개정 2001. 10. 29.)

1. 국제법률문화의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제휴
2. 회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사의 초청
3.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제17조 [기획이사] 기획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변호사직역 및 유사직역에 대한 연구 및 대책수립
2. 관계 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신설 2003. 10. 27.)

제18조 [사업이사] 사업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1. 국선변호, 당직변호,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2. 법정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3.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회원들의 의견 수렴
5.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개정 2007. 7. 23.)

제19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① 상임이사가 결원되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협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8조의 소관 상임이사의 업무를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0. 2. 24.)

제20조 [감사의 직무분담] 감사들은 상호 협의하여 감사의 직무를 분담 · 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선 임

제21조 [협회장의 선출] ① 협회장은 회칙 제24조에 따라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 10. 15.)

② 협회장 선출절차는 이 회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 10. 15.)

③ ~ ⑤ 〈삭제〉 (2012. 10. 15.)

제22조 [부협회장의 선임] ① 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10. 15.)

② 부협회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참작하여 지역 간에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③ 부협회장의 선임결의 정족수는 회칙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5.)

제23조 [상임이사의 선임] ①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다만, 그 선임결의의 정족수는 회칙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10. 12. 20.)

제2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결의의 정족수는 회칙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을 개선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15.)

제24조의2 [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감사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선거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15.)

제24조의3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의 특례]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입후보한 자가 회칙

제23조의 정수 이내인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5.)

제25조 [투표권의 대리행사금지]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 [보선] ① 협회장은 회칙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후임자를 보선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회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총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15.)

제27조 [임원선임 등의 공시] ① 협회장은 임원이 선임, 개선 또는 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임원의 선임, 개선 또는 퇴임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8. 개정)

제 4 장 직무집행과 보수

제28조 [협회장 등의 직무집행]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칙 제29조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칠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칙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각자 그의 소관 직무를 집행한다.

제29조 [이사의 직무집행]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5.)

제30조 [감사의 직무집행] 감사는 회칙 제27조제5항의 직무를 각자 처리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하여 분담 · 처리하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5.)

제31조 [사무국의 보조 등]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국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제32조 [판공비·직무수당]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매 년도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판공비 또는 직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3조 [실비변상] 임원이 회무처리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실비를 변상받는다.

제34조 [사무총장의 급여] ① 〈삭제〉 (2010. 12. 20.)

② 사무총장의 급여, 수당 기타 보수는 매 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6. 22.)

이 규칙은 1985. 6.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7.)

이 규칙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 5. 24.)

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2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회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6. 6. 29.)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5.)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13.)

이 규칙은 2003. 10.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2015년 정기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선거규칙

2002. 11. 25.
규칙 제28호

개정 2012. 2.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이 회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회칙 제2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2. 2. 20.)
2. "선거"라 함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 ·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선거일"이라 함은 임원을 선임 · 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총회일을 말한다.
4.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조 [선임] ①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2. 20.)

②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 2. 20.)

③ 〈삭제〉 (2012. 2. 20.)

제4조 [선거임원정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선거할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하 (개정 2012. 2. 20.)
2. 상임이사 15인 이하 (개정 2012. 2. 20.)
3. 이사 50인 이하 (개정 2012. 2. 20.)
4. 감사 3인 (개정 2012. 2. 20.)
5. 〈삭제〉 (2012. 2. 20.)

② 이사는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 개선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조 [선거관리] ① 이 규칙에 의한 선거의 관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의장이 담당한다.

② 총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부의장, 협회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 [선거권]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의원은 임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 20.)

제7조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이 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등록취소 후 재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휴업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2. 2. 20.)

제8조 [후보자 추천] ① 협회장 당선자는 부협회장 후보자와 상임이사 후보자, 이사 후보자를 선임 직전까지 총회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감사를 제외한 결원이 된 수에 해당하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 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 2 장 감사 선거 (2012. 2. 20. 본장 제목 개정 및 제7조 뒤에서 현 위치로 이동)

제9조 [선거공고] ① 협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인 명부
2. 선거운동기간
3. 감사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절차
4. 선거 관련 금지행위 등 기타 협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② 선거 공고는 다음 가 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방식의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1. 대한변협신문
2.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전문개정 2012. 2. 20.)

제10조 [등록신청]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11조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 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회에 후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12조 [등록공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2. 2. 20.)
2.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개정 2012. 2. 20.)
3.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② 제1항의 공고는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방식의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 3 장 선거운동

제13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14조 [선거공보 및 서신] ① 협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문서 · 도화, 인쇄물의 발송을 선거운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되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문서 · 도화, 인쇄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15조 [금지사항]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1. 제14조 제2항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서신 또는 문서를 발송 또는 반포하는 행위
2. 회원의 자택을 개별로 방문하는 행위
3. 회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4. 후보자의 신문, 경력, 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5. 이 회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2. 20.)

제16 조 [선거 후 답례금지] 누구든지 선거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회원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0.)

제17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후보가 이 규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총회 의장은 선거당일 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18조 [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 선언
2. 투표 및 개표요령의 안내
3. 투표
4. 개표
5. 당선자 결정
6. 당선 선포

(전문개정 2012. 2. 20.)

제19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연기한 투표용지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 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표방법은 투표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0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이 회가 마련하고 이 회의 회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등록번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실효 또는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1조 [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는 선거참관인이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 수의 확인
2. 무효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전문개정 2012. 2. 20.)

제22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1.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표가 삐뚤어지거나 메워진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투효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3조 [선거참관] ① 총회 의장은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사 후보는 각 2인 이내의 선거참관인을 선정하여 총회 의장에게 선거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의장은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참관인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4조 [무투표당선] 감사 후보자가 제4조에서 정한 정수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신임투표를 하여 당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25조 [당선정족수] 감사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26조 [당선선포] 총회 의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장이 신임투표의 시행 여부를 총회에 문의하고, 신임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27조 [재선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 ·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선거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 4 장 보 칙 (2012. 2. 20. 본장 제목 개정 및 제12조 뒤에서 이동)

제28조 [보궐선거]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의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감사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9조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의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 선거활동, 선거절차 또는 당선결정이 회칙 및 이 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총회 의장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며 그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④ 총회 의장이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협회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이를 임시총회에 부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총회가 제2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정한 선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정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⑥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관한 총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회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무효의 결정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30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이 회가 부담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선거공보제작 및 발송을 제외한 감사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0.)

제31조 [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0.)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재의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종전 규칙에 의한 선출로 정하여진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07. 4. 16.
규정 제7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소집,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협의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한 협회장의 자문기구이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의장 및 부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 중 연장자가 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사회자로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회를 위임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6조 [소집]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협의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 [개최 장소] 협의회의 개최 장소는 협회장이 지정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순서에 따라 개최한다.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변협과 협의회를 주최하는 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8조 [의사록] ① 협의회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의장과 간사가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개최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것으로 본다.

회칙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0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특별위원회로서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연구한 후 회칙 및 관련 회규 제 ·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선거방식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규 제 · 개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

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2호

개정 1986. 2. 22.
1990. 2. 24.
1993. 5. 24.
2001. 10. 29.
2010. 2. 8.
2012. 10. 1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총회의 구성, 기관, 소집, 의사, 의사록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 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결사항] 총회는 회칙 제13조에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총회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지방변호사회장] ①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은 그 지위를 보유하는 동안 당연히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총회 구성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회칙 제24조 제6항의 적용에 있어서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제6조 [대의원의 선거] ①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대의원의 선거는 이 회의 회칙과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가 실시한다.
② 대의원의 선거는 정기선거와 보궐선거로 한다.
③ 정기선거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는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 실시한다.

제7조 [대의원 수의 배정통지] 〈삭제〉 (2012. 10. 15.)

제8조 [대의원 결원의 통지] 〈삭제〉 (2012. 10. 15.)

제9조 [대의원선거의 절차] 〈삭제〉 (2012. 10. 15.)

제10조 [선출의 통지] 〈삭제〉 (2012. 10. 15.)

제11조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대의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며, 후임자가 선출되면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대의원의 임원겸직금지] 〈삭제〉 (2012. 10. 15.)

제14조 [회의수당] 총회의 구성원이 총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매 년도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출장비와 체재여비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부담한다.

제 3 장 기 관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총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사회자로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회를 위임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의장·부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의 정기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의 회의일에는 그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0. 2. 24.)

③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단기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선출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원된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그 후임자를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의장 또는 부의장직에서 퇴임한다.

제17조 [간사] ① 총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 구성원 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직후에 지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총회의 의사진행을 보조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 4 장 소집과 의안제출

제18조 [소집시기] ① 정기회는 매년 2월 중 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회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제19조 [소집요구] ①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협회장이 회칙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요구의 이유를 명시한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늦어도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요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때에는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 요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집절차] ① 의장이 회칙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개회 1주일 전까지 총회 구성원 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2. 개회장소
3. 회의의 목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칙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제1항의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소집통지서가 총회 구성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회칙 제12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 요구자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장소] 총회의 소집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회의 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이어야 한다.

제22조 [의안의 제출]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일 10일 전까지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시회의 경우는 소집을 요구한 자가 지체 없이 의안을 작성하여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2. 22.)

② 총회 구성원은 7인 이상 찬반으로 서면으로써 총회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6. 2. 22.)

제23조 [의안의 송부] 의장은 늦어도 개회 3일 전까지 총회에 부의할 의안을 총회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회칙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출의 제한] 총회에서 부결된 의안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의안은 부결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의사진행과 발언

제25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총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장에 게시하거나 총회 구성원에게 유인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2. 전회 의사록의 통과와 의사록 기명 날인자의 지명
3. 각종 보고
4. 전회 심의미완료 의안의 심의
5. 새로운 의안의 심의
6. 폐회의 선언

제26조 [개회선언] ① 의장은 개회시각이 되면 간사로 하여금 출석자의 수를 확인하여 회칙 제14조제1항에 정한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간사로부터 의사정족수에 도달되었음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개회선언 후에 국민의례절차를 진행하고 간단한 개회인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 [의사록 통과] ① 의장은 개회벽두에 간사로 하여금 전회 총회의 의사록을 보고하게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전회 의사록에 수정 또는 가감할 것이 있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수정 또는 가감하고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전회 의사록이 통과되면 회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의 의사를 기록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구성원 2인을 지명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각종 보고] ① 총회는 의안심의에 앞서 다음의 각종 보고를 접수한다.

1. 의장의 보고
2. 임원의 보고
3. 감사의 보고

② 의장은 전회 총회 종료 후부터 이번 총회까지 사이에 긴급한 문제로 의장이 단독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 재정 및 사무 집행상황에 관한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위촉]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그 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은 바로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를 마치면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바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발언] ① 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기립하여 의장을 부르고, 자기의 이름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고시한 다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기립하여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먼저 기립한 자를 지명하여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바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32조 [질서유지] ① 구성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의원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의장의 발언] 의장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장을 의장석에 앉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의안심의

제34조 [심의의 순서] ① 의안의 심의는 전회 총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의안을 먼저 심의하고 새로 제출된 의안을 뒤에 심의한다.

② 각종 의안의 심의는 의사일정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의안의 부의와 제안설명]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제25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의안을 부의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을 부의하게 되면 먼저 그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질의] ① 제안설명이 끝나면 구성원은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구성원은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질의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종결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④ 더이상 질의를 하는 자가 없거나 제3항에 의한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37조 [토론] ① 질의가 종결되면 구성원은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자유로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을 할 수 있다.

②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순서로 교차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토론이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구성원은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토론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토론종결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⑤ 더 이상 토론을 하는 자가 없거나 제4항에 의한 토론종결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38조 [동의, 개의 또는 재개의] ① 구성원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부의된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동의가 성립되면 그 동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로써 개의를 제출할 수 있고, 개의가 성립되면 또 다른 구성원은 재개의 또는 재재개의의 순서로 다른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의 또는 개의는 어느 것이나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재개의 이하의 수정동의도 같다.

제39조 [표결] ① 의장은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토론이 종결되면 그 토론과정에서 성립된 동의와 각종 수정동의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② 의장은 표결선언을 한 직후 그 표결방법을 총회에 문의하여 총회의 의사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칙 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표결방법이 정하여지면 최종수정동의로부터 시작하여 원동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의를 차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동의 또는 수정동의 중 어느 하나가 만장일치로 표결된 때에는 나머지 동의에 대한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표결은 회칙 제14조 제2항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여야만 가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부결된다. 다만, 회칙 또는 규칙으로 재표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가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그 가부를 총회에 선포하여야 한다.

제40조 [폐회]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친 때에는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1조 [총회의 연기·속행] ① 총회는 시간의 부족, 예비심사 기타 사정으로 그 날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의안을 모두 심의할 수 없을 때에는 결의로써 그 의안의 심의를 다음 총회로 연기하거나, 그 날의 회의를 중지하고 따로 열리는 계속회에서 속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의한 계속회는 그 회의가 중지된 전회 총회와 동일한 총회로 보고, 따로 제20조에 의한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③ 제1항 후단에 의한 계속회는 그 회의가 중지된 전회 총회와 근접한 날에 열어야 하고, 그 장소도 달리 결의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못한다.

제42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총회의 일시
2. 총회의 장소
3. 출석구성원의 수

4. 의사의 경과요령
5. 의사의 결과
6. 폐회

제43조 [의사록의 기명날인] ① 의사록에는 그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여한 의장과 의사록을 작성한 간사가 먼저 기명날인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② 기명날인한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확정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하는 총회 구성원은 이 규칙에 의한 총회 구성원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하는 의장과 부의장은 이 규칙에 의한 의장과 부의장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24.)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사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3호

개정 1996. 6.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사회의 구성, 임원, 소집,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회칙 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회자로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회를 위임한 때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이사회의 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6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 협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요구, 소집절차 및 소집장소에 관하여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운영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협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을 늦어도 회의개시 전까지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의사진행과 발언]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발언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의안심의] 이사회의 의안심의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이사회의 연기·속행] 이사회의 연기와 속행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의장과 간사가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협회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이사회는 정기회로 한다.

부 칙 (1996. 6. 17.)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상임이사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4호

개정 1993. 2.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임이사회의 구성, 소집,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및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심의기관으로서 회칙 제29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임 집행부의 부협회장 또는 상임이사 중 1인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출석 발언케 할 수 있다.

제4조 [소집] 상임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협회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주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2. 27.)

이 규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위원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5호

개정 1988. 2. 27. 1990. 2. 24. 1993. 5. 24.
1995. 9. 25. 1996. 6. 17. 1998. 2. 27.
1998. 6. 8. 2001. 10. 29. 2003. 10. 27.
2005. 2. 21. 2006. 2. 20. 2007. 7. 23.
2014.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1조에 의하여 설치할 각종 위원회의 종류, 조직, 권한,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상설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총무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법제위원회
4. 인권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회원위원회
7. 공보위원회
8. 국제위원회 (개정 2001. 10. 29.)
9. 기획위원회 (신설 2003. 10. 27.)
10. 사업위원회 (신설 2003. 10. 27.)

③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업무를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③ 감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90. 2. 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 회의 임원개선에 불구하고 그 설치규정에서 정한 임기까지 재임한다. (개정 1998. 6. 8.)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

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지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88. 2. 27.)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1990. 2. 24.)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1998. 6. 8.)

⑤ 제3조제4항 내지 제7항은 임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3.)

② 위원회는 협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 10. 13.)

③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0. 2. 24.)

④ 위원회의 의사진행, 발언, 의안심의 기타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③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연석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위원회별로 따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케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4. 10. 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11조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개정 1998. 6. 8.)
3. 이 회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4. 기타 다른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2. 수입 및 지출의 관리
3. 재산의 관리
4. 기타 이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2. 사법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개선
3. 판례의 조사연구
4. 법령의 질의 및 해석

제14조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사상의 보급 및 계몽
2.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건의
3. 〈삭제〉 (2007. 7. 23.)

제15조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사무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2. 회원 및 변호사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3.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4. 변호사연수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제16조 [회원위원회] 회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의 등록과 신고,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안건의 조사
2. 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설립 (2006. 2. 20. 개정)
3. 〈삭제〉 (2014. 10. 13.)
4. 회원의 분쟁조정
5. 회원의 포상, 경조 (개정 2014. 10. 13.)
6. 회원의 복지후생

제17조 [공보위원회] 공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홍보, 선전 및 대변
2. 〈삭제〉 (1988. 2. 27.)
3. 법률지식의 보급 기타 출판물의 간행 (개정 1988. 2. 27.)
4. 언론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7. 23.)

제18조 [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0. 29.)

1. 국제법률문화의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제휴
2. 회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사의 초청
3.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0. 27.)

제19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직역 및 유사직역에 관한 연구 및 대책수립
2. 관계 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신설 2003. 10. 27.)

제20조 [사업위원회] 사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선변호, 당직변호,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2. 〈삭제〉 (2014. 10. 13.)
3.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의 조사연구 (개정 2014. 10. 13.)
4. 〈삭제〉 (2014. 10. 13.)
5.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개정 2007. 7. 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1984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88. 2. 27.)

이 규칙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7.)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98. 6. 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등록규칙

1983. 5. 21.
규칙 제15호

개정 1984. 2. 26. 1986. 2. 22. 1990. 2. 24.
1992. 2. 29. 1992. 5. 18. 1996. 6. 17.
1997. 2. 22 2000. 7. 4. 2001. 10. 29.
2003. 2. 10. 2004. 2. 23. 2006. 2. 20.
2007. 2. 26. 2007. 7. 23. 2009. 2. 26.
2010. 2. 8. 2011. 12. 12. 2012. 10. 15.
2014. 2. 24. 2014. 10. 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거하여 이 회가 행할 변호사의 각종 등록 · 신고 및 등록거부 ·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및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 2. 24.)

제3조 [명부의 비치] 이 회는 회칙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에 의한 변호사명부(이하 "명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4. 2. 24.)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주소)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취득의 연월일 및 사유 (개정 2014. 2. 24.)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개정 2014. 2. 24.)
9. 징계에 관한 사항

제4조 [명부의 작성]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다만,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명부의 보존] ① 명부는 전자문서 형태로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4. 10. 13.)

② 명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③ 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증서, 등록통지, 등록보고, 회지게재사항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등 록

제6조 [등록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호로 나눈다. (개정 2014. 2. 24.)

1. 변호사자격등록
2. 〈삭제〉 (2014. 2. 24.)
3. 소속변경등록

제7조 [변호사자격등록의 신청] 법 제7조제1항 및 회칙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 2통을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4.)

1.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09. 2. 26.)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개정 1997. 2. 22.)
3. 이력서
4.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5. 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6. 사진
7.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신설 2007. 2. 26.)

제8조 〈삭제〉 (2014. 2. 24.)

제9조 [소속변경등록의 신청] 법 제14조에 의하여 소속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소속변경등록신청서 2통을 새로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1. 〈삭제〉 (2000. 7. 4.)
2.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비완납증명
3. 이력서
4. 등록료 납부서 (신설 2000. 7. 4.)
5. 의견서 (신설 2000. 7. 4.)
6. 사진 (신설 2000. 7. 4.)

제10조 [지방변호사회의 처리] 지방변호사회가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류 1통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회의 처리] ①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10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 회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 2. 26.)

②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장은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심사결과 제12조에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의 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거부] ① 이 회는 제7조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1. 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개정 2014. 10. 13.)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 10. 13.)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개정 2014. 10. 13.)
4. 〈삭제〉 (2000. 7. 4.)
5.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및 면직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4. 10. 13.)
6. 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 10. 13.)
7. 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 10. 13.)

② 〈삭제〉 (2014. 2. 24.)

③ 〈삭제〉 (1990. 2. 24.)

제13조 [등록거부의 의결 등] ① 등록심사위원회가 협회장으로부터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거부안건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거부의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3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 [등록간주 및 등록명령의 처리] 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이 회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8조제4항에 의한 등록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의 절차] 협회장은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명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서와 함께 등록통지서를 송부하며,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증서를 송부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인이 종전에 소속하던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한다.

제16조 [등록료의 납부] ① 이 규칙에 의한 각종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회가 정한 등록료를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경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4.)

② 제1항에 의한 등록료를 받은 지방변호사회는 그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이를 이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등록료는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④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되는 때에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등록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1. 12. 12.)

제 3 장 신 고

제17조 [신고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신고는 다음의 5종으로 나눈다.

1. 변호사개업신고
2. 사무소이전신고
3. 변호사휴업신고
4. 소속변경신고
5. 명부변동신고

제18조 [변호사개업신고] 개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거나 휴업 중이던 등록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개업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호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2. 10. 15.)

1.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때
2.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때 (개정 2006. 2. 20.)
3.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된 때 (개정 2006. 2. 20.)

제19조 [사무소이전신고] 개업신고를 한 등록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이전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개설한 법률사무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의 다른 곳으로 이전한 때
2. 자기가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로서 소속한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 또는 구성원으로서 소속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의 다른 곳으로 이전한 때 (개정 2006. 2. 20.)
3.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가 된 때 (개정 2006. 2. 20.)
4.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있다가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다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다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된 때 (개정 2006. 2. 20.)
5.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로 있다가 스스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된 때 (개정 2006. 2. 20.)

제20조 [변호사휴업신고] 개업신고를 한 등록변호사가 일시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변호사휴업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속변경신고] 등록변호사가 제15조에 의한 소속변경등록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변경신고서 1통을 종전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명부변동신고] 등록변호사가 제3조 각호에 정한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명부변동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1986. 2. 22.)

제23조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신고서에는 각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명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지방변호사회의 처리] 지방변호사회가 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 1통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지체 없이 이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이 회의 처리] ①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24조에 의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고,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수리를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정기일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신고서류를 해당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④ 이 회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 당사자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접수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장 등록취소

제26조 [등록취소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취소는 다음의 3종으로 나눈다.

1.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2.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3. 명령에 의한 등록취소

제27조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① 이 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1. 사망한 경우 (개정 2014. 10. 13.)
2. 〈삭제〉 (1997. 2. 22.)
3. 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 10. 13.)
4. 〈삭제〉 (2014. 2. 24.)
5.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 10. 13.)
6.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4. 10. 13.)

② 등록변호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사유신고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2.)

③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소속변호사에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신고서 또는 스스로 작성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이 회에 송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5항의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2. 29.)

⑤ 이 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조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제27조의 2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7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30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취소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2.)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① 등록변호사가 법 제17조에 의한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취소신청서 2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변호사회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징계개시신청을 하였거나 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를 한 자는 등록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9. 2. 26.)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류 1통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지체 없이 이 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징계개시신청여부 또는 징계개시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3.)

제29조 [명령에 의한 등록취소] 이 회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9조에 의한 등록취소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제30조 [등록취소의 절차] ① 이 회가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14. 10. 13.)

② 협회장이 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통지서를 당사자(사망의 경우 제외),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③ 제2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가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2.)

제 5 장 등록심사위원회

제31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판사 1인, 검사1인, 변호사 4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인으로 구성하고, 동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개정 2009. 2. 26.)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09. 2. 26.)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심사 및 의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기구] ①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등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등록심사위원회는 업무를 보조하는 1인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다.

제34조 [안건의 회부] 협회장이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안건회부서와 관련자료를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안건이 회부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기일을 정하여 위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최초 심사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다음 심사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최초 심사기일의 통지서에는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또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선임이나 심사의 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0. 7. 4.)

⑤ 〈삭제〉 (2010. 2. 8.)

⑥ 〈삭제〉 (2010. 2. 8.)

제36 조 [당사자 등의 권리] ①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심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 [심사] ①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 개의 안건의 심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정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위원은 안건의 심사준비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심사기일에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심사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 여부, 심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결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39조 [보고] ① 이 회가 법 제2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7. 4.)

1. 제11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 의한 각종 등록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각종 등록의 거부
3.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각종 신고의 수리
4. 제30조제1항에 의한 각종 등록취소

② 제1항에 의한 각종 보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 [공고] 이 회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등록, 등록거부, 신고수리 및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41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 전의 변호사등록규칙(1983. 1. 1. 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의하여 이 회가 한 각종 등록, 신고 또는 등록취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변호사법개정법률(1982. 12. 31. 법률 제359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회에 인계된 변호사명부(이하 "종전 명부"라 한다)는 이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명부가 작성되어 대체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명부로 본다. 다만, 종전 명부 중 소속변호사회가 서울변호사회, 서울제일변호사회 또는 서울통합변호사회로 기재된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서울제이변호사회로 기재된 것은 인천지방변호사회로 본다.

② 협회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종전 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번호는 종전 명부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등록을 그에 이어서 붙인다.

③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등록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이 회는 제3항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종전 명부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명부를 새로 작성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새로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제30조에 의한 등록취소절차를 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 명부 중 소속변호사회가 마산지방변호사회로 기재된 것은 창원지방변호사회로 본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2008. 9. 28. 개정 변호사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13.)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 명부 중 소속지방변호사회가 '의정부'로 기재된 것은 '경기북부'로, '수원'으로 기재된 것은 '경기중앙'으로, '춘천'으로 기재된 것은 '강원'으로, '청주'로 기재된 것은 '충북'으로, '창원'으로 기재된 것은 '경남'으로, '전주'로 기재된 것은 '전라북도'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 작성된 종이형태의 명부는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한다.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 1. 17.
규정 제1호

개정 1986. 2. 10. 1997. 2. 10.
2000. 6. 26. 2009. 2. 16.
2010. 12. 6. 2013. 9. 9.
2014. 2. 3. 2014.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등록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과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2. 10.)

제2조 [명부] ① 규칙 제4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 2. 3.)

② 〈삭제〉 (2014. 6. 2.)

③ 제1항 변호사명부 확인란의 확인은 회원이사가 한다. (개정 2014. 6. 2.)

④ 회원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협회장은 제3항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상임이사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신설 1986. 2. 10.)

제3조 [각종 등록신청서] 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한 각종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2. 〈삭제〉 (2014. 2. 3.)
3. 소속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제4조 [이력서] 규칙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이력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사진] ① 규칙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진은 4매로 하며, 규칙 제9조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사진 3매로 한다. (개정 2000. 6. 26.)

② 제1항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의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의견서] 지방변호사회가 규칙 제10조에 의한 의견을 첨부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등록사무처리부] 협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규칙 제10조, 제24조,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한 서류를 송부 또는 제출받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규칙 제14조 또는 제29조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등록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10.)

제8조 [등록거부통지] 협회장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의한 등록거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 2. 10.)

제9조 [등록증서] 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증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 2. 3.)

제10조 [등록통지] 협회장이 규칙 제15조에 의한 변호사등록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등록료납부] 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등록료 납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각종 신고서] 규칙 제18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각종 신고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개업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2. 사무소이전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3. 변호사휴업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4. 소속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5. 명부변동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제13조 [보완명령] 협회가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신고접수증명] 규칙 제25조제4항에 의한 신고접수증명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등록취소사유신고서]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등록취소신청서] 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명부폐쇄방식] 협회가 규칙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부를 폐쇄할 때에는 변호사명부 비고란에 폐쇄의 취지와 사유, 폐쇄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2.)

제18조 [등록취소통지서] 협회장이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안건회부서] 규칙 제34조에 의한 안건회부서의 서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7. 2. 10.)

제20조 [심사기일통지서] 규칙 제35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일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7. 2. 10.)

제21조 [심사조서] 규칙 제37조제4항에 의한 주임심사위원회의 심사조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제5항에 의한 심사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7. 2. 10.)

제22조 [의결서] 규칙 제38조제2항에 의한 의결서의 서식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1997. 2. 10.)

제23조 [등록 등에 관한 보고] 협회가 규칙 제39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별지 제31호 내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해당명세서를 첨부한다. (개정 1997. 2. 10.)

제24조 [등록에 관한 공고] 협회가 규칙 제40조에 의한 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7. 2. 10.)

부 칙

이 규정은 1983. 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 2. 1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전에 변호사명부의 확인란에 확인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지서식목록 • • •

제 1 호 변호사명부/ 245
제 2 호 〈삭제〉 (2014. 2. 3.)
제 3 호 〈삭제〉 (2014. 6. 2.)
제 4 호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개정 2014. 6. 2.)/ 249
제 5 호 〈삭제〉 (2014. 2. 3.)
제 6 호 소속변경등록신청서/ 251
제 7 호 이력서/ 252
제 8 호 의견서 (개정 2014. 2. 3.)/ 254
제 9 호 등록사무처리부/ 255
제 10 호 변호사등록거부통지 (개정 2014. 2. 3.)/ 256
제 11 호 등록증서/ 257
제 12 호 〈삭제〉 (2014. 2. 3.)
제 13 호 변호사등록통지 (개정 2014. 2. 3.)/ 259
제 14 호 등록료납부서 (개정 2014. 2. 3.)/ 260
제 15 호 변호사개업신고서/ 261
제 16 호 사무소이전신고서/ 262
제 17 호 변호사휴업신고서/ 263
제 18 호 소속변경신고서/ 264
제 19 호 명부변동신고서/ 265
제 20 호 보완명령/ 266
제 21 호 신고접수증명/ 267
제 22 호 등록취소사유신고서/ 268
제 23 호 등록취소신청서/ 269
제 24 호 등록취소통지/ 270
제 25 호 안건회부서/ 271
제 26 호 심사기일통지서/ 272
제 27 호 주임심사위원 심사조서/ 273
제 28 호 심사조서/ 275
제 29 호 의결서/ 277
제 30 호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 278
제 31 호 변호사자격등록명세서/ 279
제 32 호 〈삭제〉 (2014. 2. 3.)
제 33 호 소속변경등록명세서/ 281
제 34 호 변호사등록거부명세서/ 282
제 35 호 변호사개업신고명세서/ 283
제 36 호 사무소이전신고명세서/ 284
제 37 호 변호사휴업신고명세서/ 285
제 38 호 명부변동신고명세서/ 286
제 39 호 변호사등록취소명세서/ 287
제 40 호 등록에 관한 공고/ 288
제 41 호 법률사무종사확인서/ 289

[제1호 서식]

<table>
<tr><td>등록년월일
20 . . .</td><td colspan="5">변 호 사 명 부</td><td>등록번호</td></tr>
<tr><td rowspan="2">① 성 명
(② 한 자)</td><td>한 글</td><td colspan="2">한 자</td><td>신고년월일
. . .</td><td>확인인</td><td rowspan="4">사 진</td></tr>
<tr><td></td><td colspan="2"></td><td>. . .</td><td></td></tr>
<tr><td rowspan="2">③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3">번 호</td><td>. . .</td><td></td></tr>
<tr><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rowspan="5">④ 주 소</td><td>이동년월일
. . .</td><td colspan="3">주 소</td><td>신고년월일
. . .</td><td>확인인</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rowspan="3">⑤ 등록기준지</td><td>전적년월일
. . .</td><td colspan="3">등록기준지</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rowspan="4">⑥ 사무소 명 칭</td><td>변동년월일
. . .</td><td colspan="3">명 칭</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rowspan="5">⑦ 사무소 소재지</td><td>이전년월일
. . .</td><td colspan="3">소재지</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r><td>. . .</td><td colspan="3"></td><td>. . .</td><td></td></tr>
</table>

변협서식 31-31
변호사명부(전면)

210㎜×297㎜
인쇄용지 80g/㎡

⑧ 소속지방변호사회	입회년월일 . . .	명 칭	지방변호사회	등록년월일 . . .	확인인
	. . .		지방변호사회	. . .	
	. . .			. . .	
⑨ 자격취득	취득년월일 . . .	취득사유		. . .	
	. . .			. . .	
⑩ 개 업	개업년월일 . . .	개업구분		. . .	
	. . .			. . .	
	. . .			. . .	
	. . .			. . .	
⑪ 휴 업	휴업년월일 . . .	휴업사유		. . .	
	. . .			. . .	
	. . .			. . .	
⑫ 등록취소	취소년월일 . . .	취소사유		등록년월일 . . .	확인인
	. . .			. . .	
	. . .			. . .	
⑬ 업무정지	결정년월일 . . .	정지사유		신고년월일 . . .	확인인
	. . .			. . .	
⑭ 징 계	처분년월일 . . .	징계사유	징계벌	. . .	
	. . .			. . .	
	. . .			. . .	
⑮ 비 고					

변호사명부(후면)

210㎜×297㎜
인쇄용지 80g/㎡

[제2호 서식]

(2014. 2. 3. 삭제)

[제3호 서식]

(2014. 6. 2. 삭제)

[제4호 서식]

변 호 사 자 격 등 록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 소			
		□□□-□□□ 전화 :	FAX :	
	⑤ 등록기준지			
	⑥ 휴대폰번호			
⑦ 자 격 취 득		년 월 일 제 회	사 법 시 험	합 격
		년 월 일 제 기	사법연수원	수 료
		년 월 일 제 기 ( )	법학전문대학원	졸 업
		년 월 일 제 회	변호사시험	합 격
		※ 년 월 일		
⑧ 소속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⑨ 개업하고자 하는 사무소소재지			□ 해당 없음	
		□□□-□□□ 전화 :	FAX :	
E - m a i l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7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자격등록을 신청합니다.

2 0 . . .

신 청 인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귀중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 이 력 서 □ 변호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 변호사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 사 진 □ 의 견 서(지방변호사회) * **⑦번 ※란은 사법대학원이나 군법무관시보 임용 사항 등을 기재**	경유증명	위 경유하였음. 2 0 . . .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31-1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5호 서식]

(2014. 2. 3. 삭제)

[제6호 서식]

소 속 변 경 등 록 신 청 서

<table>
<tr><td rowspan="6">신
청
인</td><td>① 성 명</td><td></td><td>② 한 자</td><td></td></tr>
<tr><td>③ 주 민 등 록 번 호</td><td>-</td><td>④ 휴대폰번호</td><td></td></tr>
<tr><td rowspan="2">⑤ 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 전화 : FAX :</td></tr>
<tr><td>⑥ 등록기준지</td><td colspan="3"></td></tr>
<tr><td>⑦ 자격등록 년 월 일</td><td>. . .</td><td>⑧ 자격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⑨ 종전소속의 지방변호사회</td><td colspan="3">지방변호사회</td></tr>
<tr><td colspan="2">⑩ 새로 소속할 지방변호사회</td><td colspan="3">지방변호사회</td></tr>
<tr><td colspan="2" rowspan="2">⑪ 새로 개업할 사무소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 전화 : FAX :</td></tr>
<tr><td colspan="2">E - m a i l</td><td colspan="3"></td></tr>
</table>

변호사법 제14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소속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2 0 . . .

신 청 인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귀중

<table>
<tr><td>첨부서류</td><td>□ 의 견 서
□ 회비완납증명
□ 이 력 서
□ 사 진</td><td>경유증명</td><td>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td></tr>
</table>

변협서식 31-3 210㎜×297㎜
소속변경등록신청서 인쇄용지 80g/㎡

[제7호 서식]

이 력 서

사 진 3㎝×4㎝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호 주 관 계	호 주 성 명		호주와의관계	

연 월 일	학력·경력사항	발 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협서식 31-27
이 력 서 (전면)

210㎜×297㎜
인쇄용지 80g/㎡

연 월 일	학 력 · 경 력 사 항	발 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 월 일	상 벌 사 항	발 령 자
. . .		
. . .		
. . .		

위와 같이 틀림없음

20 . . .

위 ㊞

이 력 서 (후면)

[제8호 서식]

의 견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 소			
	⑤ 등록기준지			
등 록 구 분		☐ 변호사자격등록	☐ 소속변경등록	

변호사법 제7조제3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위 등록신청에 관한 본 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의 견 요 지	☐ 등록이 타당하다	☐ 등록이 부당하다
이 유		

2 0 . . .

지방변호사회

회 장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변협서식 31-29
의 견 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9호 서식]

접수번호	접수년월일	신 청 · 신 고 의 요 지	신청 · 신고인	결정년월일	결정요지	비 고	취급자인	확인인

210㎜ × 297㎜
인쇄용지 80g/㎡

[제10호 서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 0 . . .

수 신

제 목 **등록거부통지**

등 록 구 분	□ 변호사자격등록 □ 소속변경등록
신 청 인	
경유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신청서접수년월일	2 0 . . .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8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거부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신청인은 이 등록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유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2
등록거부통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11호 서식]

등 록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위 사람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변호사명부에 등록하였음.

20　　.　　.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변협서식 31-34
등록증서

[제12호 서식]

(2014. 2. 3. 삭제)

[제13호 서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등 록 통 지**

등 록 구 분	□ 변호사자격등록 □ 소속변경등록
신 청 인	
경유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신청서접수년월일	20 . . .

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등록년월일 : 20 . . .
2. 등 록 번 호 : 제 호

첨부서류 : 등록증서 1통 끝.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1
등록통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14호 서식]

등 록 료 납 부 서

1. 금 원	
납 부 사 유	□ 변호사자격등록
	□ 소속변경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납부합니다.

20 . . .

납 부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변협서식 31-28
등록료 납부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15호 서식]

변 호 사 개 업 신 고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휴대폰번호	
	⑤ 주 소			
		□□□-□□□ 전화 : FAX :		
	⑥ 등록기준지			
	⑦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⑧ 자격등록번호	
⑨ 개 업 구 분		□ 단독사무소 □ 법무법인(공증합동)구성원		
		□ 법무법인(유한)소속변호사 □ **사내변호사(　　)**		
⑩ 개 업 년 월 일		20 . . .		
⑪ 사 무 소 명 칭				
⑫ 사무소소재지				
		□□□-□□□ 전화 : FAX :		
E - mail				

변호사법 제15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 이 력 서 □ 사 진 □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변호사시험합격자 해당 사항)**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수료증(변호사시험합격자 해당 사항)**	경유증명	(지방회 접수일 : 20 . . .) 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31-5
변호사개업신고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16호 서식]

개인·법인 사 무 소 이 전 신 고 서

신청인	① 성 명 또는 법 인 명	
	② 생 년 월 일 등 록 번 호	19 . . . 등록번호( )
	③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지방변호사회
	④ 휴대폰번호	
⑤ 이 전 사 유		**□개인사무소 □법인 등 변동* □사내변호사로 이전 □사내변호사에서 이전**
⑥ 이 전 년 월 일		20 . . .
⑦ 사 무 소 명 칭		
⑧ 사무소소재지		
		□□□-□□□ 전화 : FAX :
⑨ E - m a I l		

변호사법 제15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사무소 이전을 신고합니다.

20 . . .

신청인 ㊞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 변경인원 명단(법인 이전시) ※ 명단에는 생년월일, 등록번호 기재. *** ⑤번 법인 등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 가입 및 탈퇴 시 기재**	경유증명	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31-6
사무소이전신고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17호 서식]

변 호 사 휴 업 신 고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 소			
		□□□-□□□ 전화 :	FAX :	
	⑤ 등록기준지			
	⑥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⑦ 자격등록번호	
⑧ 사무소명칭				
⑨ 사무소소재지				
⑩ 휴업년월일	20 . . .			
⑪ 휴업사유	□ 유학 □ 질병 □ 공직임용( ) □ 교수임용 □ 사내변호사 □ 경영상어려움 □ 기타(자세히 기재)( )			
E-mail				

변호사법 제16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휴업할 것을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귀중

첨부서류	※ ⑪번 휴업사유에서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유증명	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31-7 210㎜×297㎜
변호사휴업신고서 인쇄용지 80g/㎡

[제18호 서식]

소 속 변 경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 소			
	⑤ 본 적			
⑥ 변경된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⑦ 변경등록년월일		2 0 . . .		

위 신고인은 위와 같이 소속이 변경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2 0 . . .

신 고 인

지방변호사회 귀중

납 부 서

1. 금 원

위 금액을 위 소속변경등록일까지의 미납회비로서 납부합니다.

2 0 . . .

납 부 인

지방변호사회 귀중

변협서식 31-8
소속변경신고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19호 서식]

명 부 변 동 신 고 서

<table>
<tr><td rowspan="6">신
청
인</td><td>① 성 명</td><td colspan="2"></td><td>② 한 자</td><td></td></tr>
<tr><td>③ 주 민 등 록 번 호</td><td colspan="2">-</td><td>④ 휴대폰번호</td><td></td></tr>
<tr><td rowspan="2">⑤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4">□□□-□□□ 전화 : FAX :</td></tr>
<tr><td>⑥ 등록기준지</td><td colspan="4"></td></tr>
<tr><td>⑦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td><td colspan="2">지방변호사회</td><td>⑧ 자격등록번호</td><td></td></tr>
<tr><td colspan="2">⑨ 변 동 사 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⑩ 변 동 내 용</td><td colspan="4">※ 종전 기재내용, 변동년월일, 변동사유 및 근거등을 상세히 기입할 것.</td></tr>
<tr><td colspan="2">E - m a i l</td><td colspan="4"></td></tr>
</table>

위 신고인에 대한 변호사명부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귀중

<table>
<tr><td>첨
부
서
류</td><td>□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본적변경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할 것.</td><td>경
유
증
명</td><td>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td></tr>
</table>

변협서식 31-9 210㎜×297㎜
명부변동신고서 인쇄용지 80g/㎡

[제20호 서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보 완 명 령**

신 고 서	
신 고 인	
경유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신고서접수년월일	20 . . .

귀하가 제출한 위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의 흠결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으므로 그 보완을 명하니 다음 기한까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1. 기재사항의 흠결내용 :

2. 미비된 첨부서류 :

3. 보완기한 : 20 . .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4
보완명령

210㎜×297㎜
인쇄용지 80g/㎡

[제21호 서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신고접수증명**

신 고 구 분	
신 고 인	
자 격 등 록 번 호	
경유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신고서접수년월일	20 . . .
명부기재년월일	20 . . .

위 신고를 접수하여 변호사명부에 기재하였음을 증명함.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5
신고접수증명

210㎜×297㎜
인쇄용지 80g/㎡

[제22호 서식]

등록취소사유신고서

당사자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 소			
	⑤ 등록기준지			
	⑥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⑦ 자격등록번호	
⑧ 등록취소사유	□ 사 망 □ 결격사유해당 □ 자격인가 개업허가 취소			
⑨ 취소사유내역				
⑩ 사유발생년월일	20 . . .			

위 사람은 변호사법 제18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27조 제1항에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경유증명	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31-10
등록취소사유신고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23호 서식]

등 록 취 소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한 자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주 소			
	⑤ 등록기준지			
	⑥ 자격등록 년월일	20 . . .	⑦ 자격등록번호	
⑧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⑨ 등록취소 신청사유		폐 업		
⑩ 폐업예정일		20 . . .		

변호사법 제17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변호사등록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경유증명	위 경유하였음. 20 . . . 지방변호사회장

변협서식 31-4
등록취소신청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24호 서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등록취소통지**

당사자	성 명		한 자	
	주 민 등 록 번호			
	사 무 소 명 칭			
	사 무 소 주 소			
	사 무 소 전 화		E-mail	
	소속지방변호사회	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사등록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당사자는 이 등록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취소의 구분 :

2. 등록취소 년월일 : . . .

3. 등록취소의 사유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변협서식 31-13
등록취소통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25호 서식]

안 건 회 부 서

당사자인적사항	성 명		한 자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		
경유 또는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등 록 번 호	
안건				
등록거부사유				
관련법규				
첨부서류				

위 당사자에 대한 (변호사등록거부 / 변호사등록취소) 안건을 회부합니다.

20 . .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귀중

210㎜×297㎜
인쇄용지 80g/㎡

[제26호 서식]

심 사 기 일 통 지 서

당사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경유 또는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등 록 번 호	
심 사 일 시		20 . . .		
심 사 장 소				
(등록거부, 등록취소) 사유의 요지				
고 지 사 항		당사자는 (1)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2)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3) 대리인의 선임이나, (4) 심사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안건회부서 1부		

귀하에 대한 { 변호사등록거부 / 변호사등록취소 } 안건의 심사기일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귀하

210㎜×297㎜
인쇄용지 80g/㎡

[제27호 서식]

주임심사위원심사조서

안건번호 :

당사자	성 명		한 자	
	경유 또는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심사일시		20 . . .		
심사장소				
주임심사위원				
참 여 인				
대 리 인				

심사의 경과 및 내용

20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주임심사위원 (인)

간 사 (인)

210㎜×297㎜
인쇄용지 80g/㎡

[제27호 서식별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28호 서식]

심 사 조 서

안건번호 :

당사자	성 명		한 자	
	경유 또는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주 소			
	주민등록번호	—		
	대 리 인			

심 사 일 시	20 . . .
심 사 장 소	
주 임 심 사 위 원	
출 석 위 원	
당사자 출석여부	
대리인 출석여부	
참 여 인	
공 개 여 부	

심 사 의 경 과 및 내 용

20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간 사 (인)

210㎜×297㎜
인쇄용지 80g/㎡

[제28호 서식별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29호 서식]

의 결 서

안건번호 :

당사자	성 명		한 자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소 속 회	지방변호사회	등 록 번 호	
	대 리 인			
주 문				
이 유				

20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210㎜×297㎜
인쇄용지 80g/㎡

[제30호 서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법무실장

제 목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

２０ . . .

변호사의 각종 등록, 등록거부, 신고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상황을 변호사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별첨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6
등록 등에 관한 보고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1호 서식]

변호사자격등록명세서

등록 년월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 번호	자격취득년월일 및자격취득사유	소속하고자하는 지방변호사회

변협서식 31-18
변호사자격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2호 서식]

(2014. 2. 3. 삭제)

[제33호 서식]

소속변경등록명세서

등록 년월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자격등록번호	구소속 지방변호사회	신소속 지방변호사회

변협서식 31-20
소속변경등록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4호 서식]

변호사등록거부명세서

거부 년월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 구분	신청 년월일	거부사유

변협서식 31-21
변호사등록거부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5호 서식]

변호사개업신고명세서

신고 년월일	성명 (한자)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개업 년월일	개업한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협서식 31-23
변호사개업신고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6호 서식]

사무소이전신고명세서

신고 년월일	성명 (한자)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이전 년월일	이전한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변협서식 31-24
사무소이전신고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7호 서식]

변호사휴업신고명세서

신고 년월일	성명 (한자)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휴업 년월일	휴업사유

변협서식 31-25
변호사휴업신고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8호 서식]

명부변동신고명세서

신고 년월일	성명 (한자)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변동사항	변동내용

변협서식 31-26
명부변동신고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9호 서식]

변호사등록취소명세서

취소 년월일	성명 (한자)	소속지방변호사회	자격등록번호	취소 구분	취소사유

변협서식 31-22
변호사등록취소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40호 서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공 고

변협공고 20 — 2 0 . . .

2 0 년 월 중 변호사의 각종 등록, 등록거부, 신고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상황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등록규칙 제40조에 의거하여 별첨 명세서 기재와 같이 공고한다.

첨부서류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7
등록 등에 관한 공고

210㎜×297㎜
인쇄용지 80g/㎡

[제41호 서식]

법률사무종사확인서

종사자 인적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 자			
	③ 주 소				
	④ 종 사 기 관			종사기관 연 락 처	
	⑤ 종 사 기 간		~ (_____개월_____일)		

위 사람은「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우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변 호 사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법률사무기관 지정서류(법무부 발급) 사본 1부.

변호사등록규칙에의한각종신고서의첨부서류에관한규정

1986. 2. 10.
규정 제13호

개정 1991. 6. 24.
1997. 2. 10.
2014. 9.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등록규칙에 의한 각종 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그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의 개업신고] ① 변호사자격등록을 마친 후 변호사개업신고서(이하 "개업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현황자료와 사진 2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진은 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천연색 사진으로 가로 50mm, 세로 70mm의 것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개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이력서(규정 제1호에 의한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호사자격등록을 마친 후 1년을 경과한 자
2. 변호사휴업신고 후 1년을 경과한 자 (개정 1991. 6. 24.)

제3조 [명부변동신고] 변호사명부의 기재사항변동사유로 인한 명부변동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성명, 등록기준지 및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2. 주소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 2. 1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전에 신고된 명부변동신고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 6.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현 황 자 료

<table>
<tr><td colspan="2">성 명(한글)</td><td colspan="3"></td><td>한 자</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td><td>성 별</td><td colspan="4">남 / 여</td></tr>
<tr><td colspan="2">등록기준지
(본 적)</td><td colspan="3"></td><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7">가
족
사
항</td><td>관 계</td><td>성 명</td><td>생 년 월 일</td><td>직 업</td><td colspan="2">취 미</td><td colspan="2">특 기</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 rowspan="2"></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 rowspan="3">병
역</td><td>군 별</td><td>계 급</td><td>근무기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소 속</td><td colspan="6">지방변호사회</td></tr>
<tr><td rowspan="4">학
력</td><td>연월일</td><td colspan="3">학 교 명</td><td colspan="3">학 위</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외
국
어
능
력</td><td>외국어명</td><td colspan="2">능 력</td><td rowspan="4">자
격
취
득</td><td>연월일</td><td>시 험 종 류</td><td colspan="2">시 행 청</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교
육</td><td>기 간</td><td>종 류</td><td>훈련기관</td><td rowspan="4">외
국
시
찰</td><td>기 간</td><td>목 적</td><td>국 명</td><td colspan="3">포 상</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연월일</td><td>훈격</td><td>시행기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경
력</td><td>기 간</td><td colspan="2">근 무 부 서</td><td>직 위</td><td>직 급</td><td>발 령 청</td><td rowspan="5">단
체
가
입</td><td>연월일</td><td>단체명</td><td>직위</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8">연구 · 활동 사항 및 취급업무 전문분야</td></tr>
</table>

• 명함판사진 2매(후면에 성명기재요)를 별첨하시기 바람.

210mm × 297mm
인쇄용지 80g/㎡

[제1호 서식후면]

현황자료 작성요령

1. 성명을 성명란(한글)과 한자란에 구분하여 기재
2. 〈삭제〉 (2014. 9. 22.)
3. 학력 : 고졸학력부터 순차적 기재(사법대학원, 사법연수원 수료 포함)
4. 자격취득 : 변호사자격을 우선 기재하되, 기타 취득자격도 기재
5. 외국어능력 : “상, 중, 하”로 구분 기재
6. 교육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급 이상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삭제〉) (2014. 9. 22.)
7. 연구활동사항란에는 논문발표, 세미나, 주제발표 등 연구발표 경력과 기타 중요 활동상황 기재
8.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에 추가해 주시기 바람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 5. 21.
규칙 제16호

개정 1993. 5. 24.
2000. 7. 4.
2001. 10. 29.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회칙에 따라 신고의무를 지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공증합동사무소"라 한다)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각종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4.)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규약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공증합동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규약준칙에 준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②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경유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④ 이 회가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4.)

제4조 [기타 인가신청] ① 공증합동사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1. 〈삭제〉 (2000. 7. 4.)
2. 규약의 변경

②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신고] ① 공증합동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원

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이 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와 설치인가를 받은 때 (개정 2000. 7. 4.)
2. 공증합동사무소가 그 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 (개정 2000. 7. 4.)
3. 규약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
4.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때
5. 법 제63조제2항에 의한 업무집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00. 7. 4.)
6.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의한 각종 신고에 첨부할 서류와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명부의 비치] ① 이 회에 공증합동사무소 명부를 비치하고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0. 7. 4.)

② 공증합동사무소 명부의 기재사항과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 7. 4.)

제7조 [공고] 이 회가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합동사무소는 이 규칙에 의한 합동사무소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합동사무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5.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공증합동사무소는 이 규칙에 의한 공증합동사무소로 본다.

부 칙 (2000. 7. 4.)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공증합동법률사무소규약준칙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규약

제1조 [명칭] 이 사무소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사무소는 구성원이 합동하여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칭한다) 규정에 의한 법률사무와 공증사무에 종사함으로써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위향상을 도모하고, 변호사윤리강령을 실천하며, 공정 · 신속한 사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구성] 이 사무소는 개업한 변호사로서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정절차를 마친 자로서 구성한다.

제5조 [신규가입] 이 사무소설립 후 구성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업한 변호사는 기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절차를 마친 자라야 한다.

제6조 [탈퇴] 구성원 중 탈퇴원을 자진제출 하였거나 법 제18조 해당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제명되었을 때에는 이 사무소에서 탈퇴한다. (개정 2000. 7. 4.)

제7조 [제명사유] ① 구성원이 법령에 위배하였거나 또는 현저하게 공익이나 품위를 해하여 본사무소에 누를 끼쳤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은 다른 구성원전원의 동의로써 한다.

제8조 [탈퇴 및 제명의 효력발생] 탈퇴 및 제명은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회의] ① 규약의 변경, 임원선출, 예산, 결산 등 사무소운영상 중요 안건은 구성원으로 조직된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소집과 결의방법] ① 총회는 대표자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동으로 결의한다.

②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연명으로 안건을 제시하여 대표자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시총회소집요구자 중 연장자가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대표자] ① 이 사무소 대표자는 구성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 유고 시 대표자직무대행자가 지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61조의 해당구성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자의 선출과 변경, 대표자직무대행자지명 및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임원] 이 사무소는 대표자 외에 총회결의로써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이 사무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출자] 이 사무소의 출자는 1구좌당 금○○○원으로 하고, 각 구성원은 그 인수구좌에 따라 지분권을 가진다.

제15조 [손익배분] 이 사무소의 손익배분에 관하여는 법과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성원 전원일치의 합의로써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 [채무에 대한 책임] 이 사무소의 채무는 구성원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제17조 [공정증서원본 또는 정본 보관 및 출납] ① 이 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원본 또는 정본은 이 사무소내에 설치된 장소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1992. 2. 29.)

② 서류보관장소를 변경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개정 1992. 2. 29.)

제18조 [사무보조자] 이 사무소의 사무보조자는 대표자가 임명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는다.

제19조 [타법의 준용] 이 규약에 없는 사항은 공증인법과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개정] 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당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약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실시한다.

② 이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구성원이 출자구좌수를 밝히고 기명날인한다.

20 . . .

구성원 대표자 변호사 ○ ○ ○

(출자구좌수 ○○구좌)

변호사 ○ ○ ○

(출자구좌수 ○○구좌)

변호사 ○ ○ ○

(출자구좌수 ○○구좌)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 5. 21.
규칙 제17호

개정 1993. 5. 24. 2000. 7. 4.
2001. 10. 29. 2006. 2. 20.
2009. 2. 26.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 회의 법인회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신고의무를 지는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각종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0.)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 ·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 제40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정관준칙에 준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3통을 예정된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법시행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경유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법시행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④ 이 회가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0.)

제4조 [기타 인가신청] ①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신청서류 3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법 제41조 및 제58조의3 단서에 의한 정관변경 (개정 2006. 2. 20.)
2. 〈삭제〉 (2000. 7. 4.)
3. 법 제55조에 의한 합병 (개정 2000. 7. 4.)

②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신고] ①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이 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때
2. 법 제43조제2항 및 제58조의5 제2항에 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마친 때 (개정 2006. 2. 20.)
3. 개업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
4.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
5.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때
6.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또는 변경이 있는 때
7.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하거나 직무를 행할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변동이 있는 때
8. 징계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은 때
9. 해산 또는 합병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각종 신고에 첨부할 서류와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명부의 비치] ① 이 회에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명부를 비치하고,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6. 2. 20.)

②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명부의 기재사항과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 2. 20.)

제7조 [공고] 이 회가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은 이 규칙에 의한 법무법인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5. 24.)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법무법인정관준칙

법 무 법 인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갑) 이 법인은 ○○법무법인이라 한다.
(을) 이 법인은 법무법인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2.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3.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의한 업무 (개정 2000. 7. 4.)
4.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절의 업무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② (갑)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1. ○○분사무소 ○○시
2. ○○분사무소 ○○시

(을)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존립시기] 이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만○○년간 존립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구성원과 출자

제5조 [구성원] ①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26.)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② 대표번호사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제6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자의 목적인 노무는 변호사로서의 계속적인 정신적 · 육체적 노무를 말한다.

구 성 원	목 적	가 액	평가기준	출자지분
○ ○ ○	금전	원	원	%
	노무	해당없음	원	
○ ○ ○	금전	원	원	%
	노무	해당없음	원	
○ ○ ○	노무	〃	원	%
○ ○ ○	노무	〃	원	%
○ ○ ○	노무	〃	원	%
합 계	금전	원	언	100%

제7조 [지분의 양도]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따른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자기거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구성원회의

제9조 [구성] 구성원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구성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3.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4. 대표변호사의 선임 및 해임
5. 대표변호사 및 업무담당구성원의 보수결정
6. 분사무소주재구성원의 결정
7. 계산서류의 승인
8. 법인의 해산, 합병
9.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 [소집] ① 구성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결산기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 구성원회의는 대표변호사가 소집한다. 다만, 구성원 ○분의 ○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

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변호사는 ○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의방법] 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출자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구성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성원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권] (갑) 각 구성원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을)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 [회의] ① 구성원회의의 의장은 대표변호사가 된다.

② 구성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업무집행과 법인대표

제15조 [업무담당변호사의 지정] ① 이 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대표변호사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6조 (갑) [대표변호사] ① 이 법인에 대표변호사 1인을 둔다.

② 대표변호사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변호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일절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대표변호사 유고 시에는 대표변호사가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을) [법인대표] 구성원은 각자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7조 [보고업무] 대표변호사는 다른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수] 대표변호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보수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분사무소주재구성원] ① 분사무소에 주재할 구성원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은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한다.

제 5 장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제20조 [가입] ① 구성원의 신규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구성원이 새로 가입한 때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탈퇴] 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4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외에 법원으로부터 제명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00. 7. 4.)

제22조 [상속] ①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인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여부를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구성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제명의 선고] 구성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변호사법 제52조제1항에 위반한 때 (개정 2000. 7. 4.)
3.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4.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5.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4조 [지분의 환급] (갑)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을)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의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 6 장 계 산

제25조 [영업연도] 이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계산서류의 승인] 대표변호사는 매영업연도 말에 다음 서류를 구성원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손익금처분에 관한 의안

6.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7조 [손익계산]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하고,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28조 [배당] ① 이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금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이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 [배당비율]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 7 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 [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제4조에 정한 존립시기의 도래
2. 구성원회의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1조 [재산처분]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32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배분] 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위 ○ ○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 ○ 법 무 법 인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2006. 2. 20.
규칙 제30호

개정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회칙에 따라 신고의무를 지는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각종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규약하고 법 제58조의18에 따라 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규약준칙에 준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경유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회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타 인가신청] ① 법무조합은 규약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신고]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이 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법무조합이 그 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
3. 규약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
4.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때

5.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또는 변경이 있는 때
6. 징계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은 때
7. 해산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각종 신고에 첨부할 서류와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명부의 비치] ①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법무조합의 기재사항과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공고] 이 회가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1983. 5. 21.
규칙 제18호

개정 1986. 2. 22. 1992. 5. 18.
1993. 5. 24. 1995. 2. 25.
1998. 6. 8. 2000. 7. 4.
2001. 10. 29. 2004. 2. 23.
2006. 2. 20. 2006. 8. 21.
2007. 7. 23. 2009. 2. 26.
2010. 2. 8. 2014. 2.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 및 회칙에 따라 이 회의 단체회원으로서 이 회의 감독을 받는 지방변호사회의 설립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준]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둔다. (개정 2000. 7. 4.)

②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법원이 신설 또는 합병되는 때에는 이에 맞추어 지방변호사회를 신설 또는 합병하여야 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① 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명칭에 표시된 지역명에 "지방변호사회"라는 용어를 붙여 정한다. 다만, 지방변호사회는 회칙변경의 절차에 따라 그 지역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8. 21.)

② 지방변호사회의 소재지는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본원소재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관할지역] ① 지방변호사회의 관할지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②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맞추어 지방변호사회의 관할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순서] 이 회가 명부의 관리, 문서의 작성, 대의원의 선출 기타 지방변호사회를 감독함에 있어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6조 [회원의 종류] ①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법인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2. 24.)

②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③ 〈삭제〉 (2014. 2. 24.)

④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개정 2006. 2. 20.)

⑤ 준회원은 변호사등록을 하였으나,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개업하였다가 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7조 [설립인가신청] 법 제65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회칙준칙에 준하여 회칙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2통을 발기인 대표자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제8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 회는 제7조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신청이 관계법령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설립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7조에 의한 인가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제7조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이 관계법령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설립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칙변경인가신청] ① 지방변호사회가 법 제65조 후단에 의하여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류 2통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4.)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 [이해조정] ① 이 회는 회칙 제46조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금 또는 자산의 양여
2. 회원의 소속변경

② 이 회가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계되는 각 지방변호사회 및 그 소속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변동되는 회원 수 비례에 따라 그 이해가 공평하게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① 지방변호사회는 회칙 제47조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의 요령과 첨부서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총회결의의 취소] ① 이 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가 법령, 이 회 또는 그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변호사회의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3.)

② 이 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7조제3항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총회결의취소여부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스스로 그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를 취소하거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0. 7. 4.)

제13조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한 지도와 감독] ① 이 회는 회칙 제4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분쟁조정에 관한 지도와 감독] ① 이 회는 회칙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사이 또는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② 제1항에 의한 지도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공고] 제11조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가 이 회에 보고한 사항과 기타 지방변호사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은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18.)

이 규칙은 1992.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24.)

이 규칙은 1992.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1986. 2. 22. 개정), (1992. 5. 18. 개정), (1998. 6. 8. 개정)
(2007. 7. 23. 개정), (2009. 2. 26. 개정), (2010. 2. 8. 개정)

지방변호사회의 순서

1. 서울지방변호사회
2.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3. 인천지방변호사회
4.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5. 강원지방변호사회
6. 충북지방변호사회
7. 대전지방변호사회
8. 대구지방변호사회
9. 부산지방변호사회
10. 울산지방변호사회
11. 경남지방변호사회
12. 광주지방변호사회
13. 전북지방변호사회
14. 제주지방변호사회

별 지

지방변호사회회칙준칙

지방변호사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지방변호사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2.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3. 변호사사무의 개선 및 발전
4.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5.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지도 · 감독
6.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제3조 [구성] 이 회는 관할지역안에 사무소를 두는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으로 구성한다.

제4조 [관할지역] 이 회의 관할지역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5조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시에 둔다.

제6조 [의견발표와 건의] 이 회는 관할지역에 관계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또는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문제에 관하여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이 회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2. 24.)

②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③ 〈삭제〉 (2014. 2. 24.)

④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제8조 [입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4.)

1.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변호사
2.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설립하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는 변호사
3.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4.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5.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설립하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9조 [입회절차] ① 이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의한 변호사자격등록, 소속변경등록 또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제2항의 입회금을 납입한 자는 그 때부터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④ 이 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입회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퇴회]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이 회에서 퇴회한다.

1. 변호사자격등록이 취소된 때
2. 소속변경등록에 의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
3.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해산하거나 인가취소된 때
4.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그 사무소를 이전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이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각종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공익활동 참가 등]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 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의례와 포상] ① 이 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와 의례를 행하고 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경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준회원등] ① 이 회를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로 정하여 등록하였으나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이 회의 회원으로 있다가 휴업신고를 한 자는 이 회의 준회원으로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 · 의무와 변호사의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원명부등] ① 이 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한다.

② 회원명부에 기재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모든 회원은 회원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16조 (갑)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을)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24.)

제17조 (갑)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 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 (을)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 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9조 (갑)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을)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 (갑) [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을)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제3항에 의한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의2. 조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6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 [의장] 이사회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8조 [준용규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

제29조 (갑) [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10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제29조 (을) [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5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제29조 (병) [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3인 이내
4. 이사 10인 이내
5. 감사 2인

제30조 (갑) [선임] ①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그와 차위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도 다수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선임한다. 다만, 이사는 매년 그 정원 2분의 1씩을 개선한다.

⑤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⑥ 대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30조 (을) [선임] (제4항 단서 및 제6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갑과 같다)

제31조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임원선거에 관한 준수사항] 회원은 임원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임원]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34조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회장은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갑)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담별로 회무를 분담처리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의2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회장과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6조 [위원회]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7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8조 [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9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0조 [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도와 감독

제41조 [등록과 신고] ① 변호사가 각종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4.)

② 회원이 소속변경등록을 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그 설립, 설치, 규약변경, 사무소이전, 구성원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은 그 설립 및 변경의 등기정관의 제정 및 변경, 개업, 사무소이전, 분사무소 설치, 구성원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이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유무, 등록요건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⑥ 등록이나 신고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의 종류, 자격, 인원, 연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사무직원회를 둔다.

④ 사무직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회원의 윤리] ① 회원은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규칙을 준수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거나 이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 제2호 또는 제111조,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이를 알선 받거나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광고를 하거나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이 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연수교육]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다.

제45조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징계] ① 회장은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계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실과 증거를 조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① 이 회는 사법연수원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을 담당한다.

② 이 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연수생을 회원에게 위촉하여 개별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받은 회원은 이 회가 정하는 지도계획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변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에게 면직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법연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분쟁조정] ①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위임인 또는 그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쟁당사자는 이 회에 서면으로 분쟁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분쟁조정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조정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조정위원은 변호사, 판사, 검사, 대학교수, 언론인, 소비자단체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조정위원의 과반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2 [정보제공 등] ① 이 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 경력 · 주요취급업무 · 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 · 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법률구조와 공제

제49조 [법률구조사업] ① 이 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② 이 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지부를 둔다.

제50조 [공제사업] ① 이 회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원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재 정

제51조 [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52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 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 년도 세입 · 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특별회계] 이 회는 변호사연수, 회원공제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55조 [회칙개정] ①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칙개정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규칙 및 규정] ① 이 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변호사회는 이 회칙에 의한 ○○지방변호사회로 본다.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의 기능은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행한다.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를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이사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에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이 회칙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는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부 칙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증원된 감사 1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징계개시신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상설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신분증규칙

2004. 2. 23.
규칙 제29호

전문개정 2010. 12. 20.
2013. 2.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변호사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제작 및 배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및 발급의 대행] ①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분증 제작 및 발급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발급 대행의 경우 이 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제3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 [필수기재사항] 신분증에는 이 회의 명칭, 회원의 성명, 소속지방변호사회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각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휴대 및 제시] 변호사는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재발급 및 변경] ①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변호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분증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5.)

②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변호사는 재발급 신분증 수령 즉시 종전 신분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재발급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이 아닌 규칙 시행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변호사가 영구제명 · 제명 · 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반납신분증의 폐기]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하며 폐기 조치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다.

부 칙 (2004. 2. 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 의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12.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2. 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13. 2. 25.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변호사신분증 폐기대장

연번	직 위	성 명	발급 번호	발행 일자	소 각 일 자	결 재		비 고
						담 당	과 장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1986. 6. 22.
규칙 제23호

개정 2009. 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상징하는 협회기 및 휘장에 관한 사항과 변호사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회기의 제식 등] 협회기의 제식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게양] ① 협회기는 회관건물 및 협회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협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협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협회기에 대한 예의] 협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협회휘장 및 변호사배지의 제식 등] ① 협회휘장의 제식 및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협회 발신문서, 철인 등에 사용한다.

② 변호사배지의 제식 및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삭제〉 (2009. 2. 26.)

제7조 [배지 제작권] ① 변호사배지는 협회가 제작한다.

② 협회 회원의 신청에 따라 금제변호사배지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금제변호사배지의 제식과 모양은 몸체의 재료를 금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제2항의 그것과 같이 한다.

제8조 [배지의 교부] ① 변호사배지는 협회가 변호사개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2개 이상의 변호사배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제7조제2항에 의한 금제배지의 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패용] ① 변호사가 변호사업무수행 중 또는 기타의 경우 그 신분표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변호사배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삭제〉 (2009. 2. 26.)

부 칙 (1986.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회기의 제식과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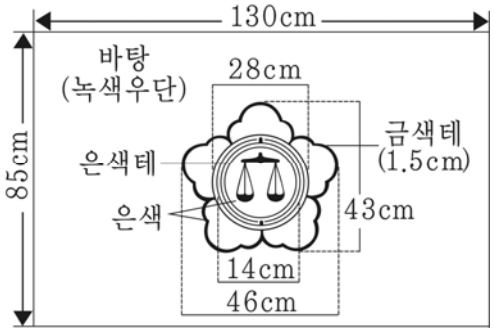

별표 2

협회휘장의 제식과 모양

철인 : 발신문서에 사용되는 휘장의 크기는 그 문서의 크기에 알맞게 확대 또는 축소한 크기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변호사배지의 제식과 모양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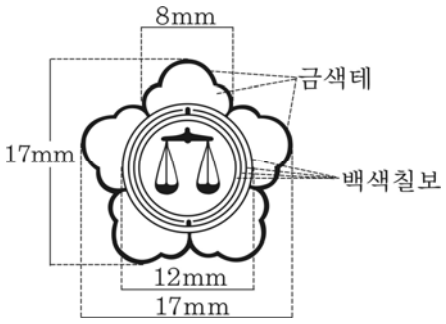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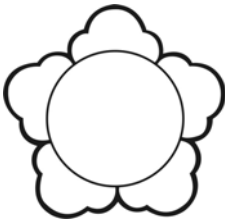

변호사징계규칙

1993. 5. 24.
규칙 제25호

개 정 1996. 6. 17. 1998. 6. 8.
2000. 7. 4. 2001. 10. 29.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7. 2. 26.
전문개정 2007. 7. 23.
개 정 2010. 2. 8. 2012. 2. 20.
2013. 2. 25. 2014. 2. 24.
2014. 10. 13.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변호사 3인, 법학 교수 1인,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자격의 예비위원을 동수로 둔다. (개정 2014. 10. 13.)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3.)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0. 13.)

제3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 조사위원회에 관여한 사건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6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제10조 [징계개시의 청구]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제9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이하 "징계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소속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12조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정 등] ①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② 협회가 전항의 진정, 고발, 고소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제3항의 기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4조 [협회장의 결정]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청구절차] ①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본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7조 [징계개시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본 1통을 송달하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5.)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사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결정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심의기일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 ·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의기일의 비공개] ① 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2조 [사건의 병합·분리]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8조 [심의기일조서 등]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 ·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삭제〉 (2010. 2. 8.)

③ 〈삭제〉 (2010. 2. 8.)

제30조 [비밀엄수] 위원장 · 위원 · 예비위원 · 간사 · 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31조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회 변호사포상규칙에 의한 수상 등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때에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4.)

제3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의신청]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 · 등사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 2. 25.)

제3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 · 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협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의 직무, 설치, 구성, 운영, 조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8조 [조사위원회의 직무]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변호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혐의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0. 13.)

③ 조사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9조 [조사위원회의 기구] ① 조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조사위원회에는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⑦ 제30조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에 준용한다.

제40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3.)

④ 〈삭제〉 (2014. 10. 13.)

⑤ 협회장은 조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결과보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3.)

제4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① 위원장은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기록과 함께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3.)

⑤ 조사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방법에 관한 제2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3.)

제41조의2 [징계개시신청서 및 재청원서에 대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동법 제97조의2, 이 규칙 제11조에 의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개시 신청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②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3항, 이 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청원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청원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피청원인에게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③ 피신청인과 피청원인은 조사위원회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3.)

제42조 [주임조사위원의 지정과 조사]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임조사위원의 조사절차와 방법은 제41조에 의한다.

제 5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43조 [징계의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제명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영구제명, 제명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보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공고] 협회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46조 [공고방법 등의 지정]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47조 [공고의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2. 20.)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 · 명칭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 · 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개정 전 제47조 제4호)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2. 20.)

1. 영구제명 · 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5. 법 5조에 의한 등록취소: 취소기간

③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④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제 6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48조 [신청자격]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2. 20.)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제49조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

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협회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49조의2 [예외사항] ① 협회장은 제49조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0.)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② 협회장은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제50조 [신청의 처리] 협회장은 정보제공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 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1조 [제공방법] ① 정보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한다. (개정 2012. 2. 20.)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2조 [유의사항] ① 협회가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회원이 아닌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정보제공 기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개정 2012. 2. 20.)

1. 영구제명·제명·법5조에 의한 등록취소: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제54조 [회원의 자기 정보 열람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55조 [비용 등 부담]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개정 전에 징계청구되었거나 징계결정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청구되거나 징계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제31조제2항 개정 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2000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판사, 검사의 자격으로 추가 선임되는 최초의 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장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징계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제4항에 정한 징계처분”을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에”를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에”로 하고, 제14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를 “변호사징계규칙 제41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1998. 5. 25.
규정 제50호

개정 2000. 6. 26.
2011. 5. 23.
2012. 12.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이하 "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변호사(이하 "피징계변호사"라고 함)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통보할 관계기관 및 피징계변호사에 대한 정직기간 중의 업무규제 등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본 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 등"이라고 함)가 취할 조치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사 및 변호사회 등에 대한 신뢰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처분의 적정·공평한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조 [징계사실을 통보할 관계기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 대검찰청, 피징계변호사가 속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관할 고등, 지방, 가정의 각 법원에 징계집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

② 〈삭제〉 (2012. 12. 28.)

제3조 [업무규제 등의 범위] 변호사회 등은 처분의 고지에 있어 피징계변호사에게 이하의 각호에 정한 사항 및 변호사회가 따로 정한 규제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준수를 설시하여야 한다.

1. (사건 등의 취급) 피징계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법원, 검찰청 및 행정청에 계속 전의 것도 포함)에 대하여 즉시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를 정지한다. 다만, 피징계변호사가 6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2. (고문계약의 취급) 피징계변호사는 의뢰자와의 고문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3. (기일변경신청 등) 피징계변호사는 기일의 연기·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피징계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원 등에서 서류의 송달 및 송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잘못 수령한 때에는 반환하는 등 곧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석보증금의 환부 등) 피징계변호사는 보석보증금의 환부, 보전보증금 및 공탁금의 수령, 회수 및 화해금 등의 변제의 수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민법 제69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의뢰자 등에게 인계) 피징계변호사는 제1호 단서의 경우 의뢰자 및 당해 사건을 새로 취급할 변호사에게 성실하게 법률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복대리의 선임 등) 피징계변호사는 새로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복대리인들의 감독) 피징계변호사는 처분을 받기 전에 선임한 복대리인 또는 고용한 변호사(이하 "보조변호사"라고 함)에게 지시·감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무소의 관리행위 등) 피징계변호사는 법률사무소로서 사용한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의 관리행위·임대차계약의 계속 및 보조변호사와 사무원과의 고용 등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무소의 사용) 피징계변호사는 정직기간 중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임하고 있는 법률사건의 인계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인정되어 있는 사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조변호사는 피징계변호사의 사무소를 자기의 법률사무소로서 사용할 수 있다. 피징계변호사의 사무소가 자택을 겸한 때에는 사생활 기타 변호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무원 등은 사무소의 관리, 청소, 우편물의 정리 기타 변호사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10. (법률사무소 표시의 제거) 피징계변호사가 6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인 것을 표시한 표찰·간판 등의 일체의 표시를 제거(표시로서의 기능을 잃게 하는 조치 일반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1. (변호사 명함 등의 사용)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 명의 또는 법률사무소명을 표시한 명함, 사무용지 및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12. (회무활동)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회 등의 회무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다.
13. (공직 등의 사임)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회 등의 추천에 의하여 관공서 등의 위원 등에 취임한 때에는 즉시 당해 관공서 등에 사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4. (변리사, 세무사 업무)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에 의한 변리사, 세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도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5. (지도·감독) 변호사회 등은 피징계변호사가 이 규정이 정하는 규제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규정

1997. 12. 15.
규정 제49호

개정 1998. 5. 25.
2000. 6. 26.
2001. 7.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8조의3 제1항 단서와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로서 변호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감찰위원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26.)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지방회별로 1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간사 수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2.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개시청구 요청 (신설 2000. 6. 26.)
3. 기타 협회장이 위촉하는 사항 (개정 2000. 6. 26.)

제6조 [권한] ① 위원회는 사건수임의 비리 및 부조리 등 윤리규칙 위반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 사무원, 의뢰인 및 진정인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지방회 및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윤리규칙 위반과 관련된 분쟁,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 윤리규칙 위반의 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위원회는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를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제7조 [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건 · 사항에 관한 혐의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협회장이 조사의뢰한 사건
2. 위원회에 접수된 변호사윤리와 관련된 진정사건
3. 사건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윤리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언론에 보도된 변호사의 윤리위반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0. 6. 26.)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건수임과정의 비리 및 부조리 등 윤리위반사건의 조사 및 조정을 위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조사 및 조정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0. 6. 26.)

제9조 [감찰위원의 선임·임기] ①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적정수의 감찰위원을 둔다. (개정 2000. 6. 26.)

② 위원회는 협회장에게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감찰위원을 추천한다.

③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감찰위원을 선임한다.

④ 감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0. 6. 26.)

제10조 [감찰위원의 직무·권한] ① 감찰위원은 매달 1회 이상 관내 소속변호사들의 사건수임실태와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사항을 조사 ·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소속변호사들에게 매월 형사, 민사, 행정, 가사 등 수임사건수, 사건명, 사건구분, 의뢰인의 인적사항, 소개인의 유무, 소개인의 성명, 수임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변호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찰위원은 제6조제1항의 권한을 가지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소속변호사들의 수임사건수, 사건명, 사무직원명단 등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찰위원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나 정보에 의하여 관내 소속변호사가 비리가 있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찰위원은 소속변호사가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횟수와 이유 등을 협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제11조 [위원 등의 해임] 협회장은 위원이나 감찰위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 또는 감찰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00. 6. 26.)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감찰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같다. 다만, 국가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거나 협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제13조 [수당] 이 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감찰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제14조 [준용] 윤리위원회와 감찰위원의 조사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 6. 26.)

제15조 [세칙제정]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1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운영세칙

1998. 7. 13.
세칙 제2호

제1조 [목적] 윤리위원회규정 제15조에 따라 변호사윤리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찰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① 감찰위원은 회원이 변호사윤리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협회장에게 보고한 후 당해 회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찰위원은 전항의 설명요구 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따라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회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감찰위원은 당해 사실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 [통보] 협회장은 감찰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회원이 속한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 7.13.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07. 4. 16.
규정 제7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의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한 후 변호사윤리장전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변호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에 관한 사항
2. 외국법자문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 각호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변호사윤리장전에 관한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변호사윤리장전개정을 위한 한시기구로서 변호사윤리장전개정안이 의결 ·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법평가위원회규정

1999. 3. 15.
규정 제52호

개정 2001. 7. 9.
2003. 6. 2.
2011. 2.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사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분석 · 평가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에 대한 적임자 추천 (제2호에서 변경 2011. 2. 14.)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법조관련 공직자의 경우 국회에 대한 의견 개진 (제3호에서 변경 2011. 2. 14.)
3. 재임용 법관에 대한 평가 (신설 2011. 2. 14.)
4. 기타 법관 및 검찰관에 대한 평가 (신설 2011. 2. 14.)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법연수원생, 법과대학원생 또는 시민사회단체 간부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 6 조의2 [평가방법 등] 법관평가 항목과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1. 2. 14.)

제 6 조의3 [평가결과의 발표 등] 사법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제출받은 협회장은 그 내용을 발표하거나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신설 2011. 2. 14.)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1999. 3. 15.)

이 규정은 1999.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0. 4. 5.
규정 제9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조전반에 걸친 제도개혁과 법조인력양성제도에 관하여 자료의 수집 · 연구와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조사 · 연구와 추진방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변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관 · 검찰관제도에 관한 사항
4. 법조일원화의 실현에 관한 사항
5. 법학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각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1985. 6. 10.
규정 제10호

개정 2001. 7. 9.
2003. 6. 2.
2014.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 업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다.

1. 북한의 사회 · 법률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통일헌법안 및 통일기본법안 등의 조사 · 연구와 입법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협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아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러한 위원을 협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잔임기간을 임기로 하여 지체 없이 보궐지명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임원의 임기와 보선에 관하여는 전 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1985. 6. 10.)

① 이 규정시행 후 최초로 지명되는 위원 중 반수의 임기는 1986년도의, 나머지 반수의 임기는 1987년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이 규정은 1985. 6.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2. 4. 23.
규정 제11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경험 있는 북한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보선에 관하여는 전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관] 이 위원회는 사업이사의 소관으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1991. 6. 24.
규정 제35호

개정 2000. 6. 26.
2001. 7. 9.
2003.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9.)

제2조 [권능] 위원회는 환경과 에너지 연구에 관하여 연구조사활동을 하여 그 개선책을 강구하고 개선안을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01. 7. 9.)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0. 6. 26.)

부 칙 (1991. 6. 24.)

이 규정은 1991. 6.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법조제도연구위원회규정

2003. 2. 20.
규정 제6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조 전반에 걸친 제도개혁과 법조인력양성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 연구와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법조제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조사 · 연구와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법조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직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법조일원화의 실현에 관한 사항
5. 사법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법관 · 검찰관제도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2. 10.부터 시행한다.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2009. 11. 23.
규정 제8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특별위원회로서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기본적 인권의 수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이념으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헌법을 조사 · 연구 · 심의하고, 본 협회의 새로운 헌법개정시안을 입안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협회장이 보궐임명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기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 1. 25.
규정 제9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형제도의 존속여부를 연구 ·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서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사형제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
2.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3.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대안
4. 사형제와 관련된 여론 조사
5. 기타 사형제 관련하여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간통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 1. 25.
규정 제9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간통제도의 존속여부를 연구 ·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로서 간통제도연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간통제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
2. 우리나라 간통제도의 역사와 현황
3. 간통제와 관련된 여론 조사
5. 기타 간통제 관련하여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반부패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 1. 25.
규정 제9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반부패제도연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국내 · 외 반부패 제도에 대한 조사 · 연구
2.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당직변호위원회규정

1995. 9. 11.
규정 제46호

개정 2001. 7. 9.
2003.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제도를 지원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정한 특별위원회로서 당직변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직변호사제도의 전국적 확대실시
2.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당직변호업무지원
3. 당직변호사제도의 홍보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4.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임기 2년의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② 위원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당직변호사운영위원장 및 협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임기 2년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협회장, 위원장,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의 위원회운영규칙과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 9.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여성아동위원회규정

2003. 2. 20.
규정 제61호

개정 2004. 2. 9.
2010. 4. 5.
2013. 9.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여성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조사 · 연구와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조직 및 관리
2. 여성 및 아동의 사회적 지위 및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4. 〈삭제〉 (2010. 4. 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여성 및 아동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9. 9.)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의 지원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사를 선정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이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인 위원은 법률지원변호사가 된다.

제7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임기] 법률지원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직무] ① 법률지원변호사단은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교육신청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②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의 절차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상담실의 설치] ① 각 지방변호사회에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법률지원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상담실로 한다.

제10조 [명부비치]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법률지원변호사 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4. 5.)

제11조 [보고] 법률지원변호사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법률지원한 때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수당 등]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0.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식재산권위원회규정

2005. 10. 10.
규정 제6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지식재산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분석 · 평가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및 관련 법률과 소송 전반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 및 소송절차법 제정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변리사 등록 및 특허소송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이 소집하고 소관 상임이사로 하여금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임위원 포함)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0. 10.부터 시행한다.

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규정

2005. 4. 18.
규정 제63호

개정 2009. 2.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16.)

제2조 [권능] 위원회는 자질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및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관련사항을 연구·검토하여 그 개선안을 건의한다. (개정 2009. 2. 16.)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 2. 16.)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모의재판경연대회운영위원회규칙

2010. 2. 8.
규칙 제3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변협이 모의재판경연대회의 개최 및 준비를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모의재판경연대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하고, 경연대회 운영 및 개최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경연대회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2. 경연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3. 경연대회 구성 및 방식, 문제 출제 등에 관한 사항
4. 경연대회 심사에 관한 사항
5. 경연대회 시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경연대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특별회계] ① 모의재판 실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기금은 찬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총회가 이 규칙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협포럼운영규정

2010. 1. 25.
규정 제9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가 운영하는 포럼(변협포럼 · KBA GLOBAL FORUM)의 준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국내 · 외 현안에 대한 관련 사회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의견의 청취와 상호교환을 통해 법조인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 포럼의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포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포럼실행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포럼운영계획의 수립] ① 위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포럼의 주제, 연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포럼의 연사를 섭외하고, 개최장소와 기간 등 포럼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독도특별위원회규정

2005. 10. 10.
규정 제6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독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 연구 ·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독도 영유권에 관한 법률적 · 논리적 근거 확립에 관한 사항
2. 독도에 관한 문헌의 수집 · 연구 · 분석에 관한 사항
3. 독도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호사인 위원은 20인 이내, 교수 또는 역사학자인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에는 10인 이내의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수당] 이 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에 참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0. 10.부터 시행한다.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2. 11. 11.
규정 제58호

개정 2004. 11. 29.
2007. 7. 16.

제1조 [기타]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 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법률지원변호사단"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해 조직된 변호사단을 말한다.
3. "법률지원변호사"라 함은 법률지원변호사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조직 및 관리
2.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4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16.)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의 지원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사를 선정하고 법률지원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4. 11. 29.)
② 위원회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장은 이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임기] 법률지원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직무] ① 법률지원변호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구조신청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의 절차는 법률구조사업회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담실 설치] ① 각 지방변호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한다.
② 상담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법률지원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상담실로 한다.

제11조 [명부비치]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법률지원변호사 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법률지원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한 때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7. 16.)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노인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7. 2. 5.
규정 제69호

개정 2007. 7.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관련 인권 및 법률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노인법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6.)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지원변호사단"이라 함은 노인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해 조직된 변호사단을 말한다.
2. "법률지원변호사"라 함은 법률지원변호사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조직 및 관리
2. 노인문제에 관한 제도개선연구 및 세미나
3.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4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 7. 16.)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사를 선정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인 위원은 법률지원변호사가 된다.

제8조 [법률지원변호사의 임기] 법률지원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법률지원변호사의 직무] ① 법률지원변호사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관련 공 · 사 단체 및 시설로부터 의뢰받은 노인에 대한 법률상담, 상담원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률교육, 법률구조신청 등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 7. 16.)

② 노인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의 절차는 법률구조사업회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상담실 설치] ① 각 지방변호사회에 노인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한다.

② 상담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법률지원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상담실로 한다.

제11조 [명부비치]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법률지원변호사 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법률지원변호사가 노인을 상담한 때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규정

2009. 11. 23.
규정 제91호

개정 2010. 1. 2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 (이하 "피해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인권보호,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피해자 등의 보호 · 지원에 관한 조사 · 연구
2. 피해자 보호 관련 단체와의 연계 및 지원
3.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5.)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지원변호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의 지원을 받아 지원변

호사를 선정하고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인 위원은 지원변호사가 된다.

(신설 2010. 1. 25.)

제7조 [지원변호사단의 임기] 지원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2010. 1. 25.)

제8조 [지원변호사단의 직무] ① 지원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 유족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단체에서 의뢰받은 법률상담, 법률구조의 신청, 상담원들에 대한 법률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②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의 절차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1. 25.)

제9조 [상담실 설치] ① 각 지방변호사회에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한다.

② 상담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지원변호사의 법률사무소를 상담실로 한다.

(신설 2010. 1. 25.)

제10조 [명부비치]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지원변호사 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제11조 [보고] 지원변호사가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을 상담한 때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제12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 25.)

제13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0. 1. 25.)

제14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0. 1. 25.)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운영규정

2009. 9. 14.
규정 제8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이하 '담당변호사단'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기능] ① 담당변호사단의 구성은 담당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신청에 의하여 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담당변호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규정이 정한 업무 내용별 보수요율에 따라 소정의 수임료와 소송비용만을 받고 민사소액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경과를 소정 양식에 따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민사소액사건을 수임한 담당변호사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규칙 및 제규정에 따라 의뢰인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소송에 임하여야 하며, 승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담당변호사단의 목적사업의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사소액사건 담당변호사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담당변호사단 변호사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협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담당변호사단 지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지부는 활동내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담당변호사단 명부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담당변호사단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명부의 순서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의뢰된 사건을 담당변호사에게 소개, 안내하여야 하고, 사건을 소개받은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수임 여부를 운영위원회로 즉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뢰된 사건의 배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에 대한 해임을 협회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담당변호사단을 수시로 충원할 수 있다.

제5조 [담당변호사단 신청대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변호사단에 사건을 의뢰, 신청할 수 있다.

1.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신청인은 협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건을 수임할 담당변호사에게 제공받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인지세, 송달료 등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또는 담당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수임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1. 회사가 당사자로서 신청한 사건
2.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3. 패소가 확실한 사건
4. 시험소송
5. 소가에 비해 신청인에게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큰 사건
6. 친인척 간의 사건
7. 기타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6조 [공익활동의 인정] 이 규정에 의하여 활동한 담당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이 정하는 공익활동으로 인정한다.

제7조 [변호사 보수 등] ① 담당변호사는 협회가 정한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 보수요율표'에 따라 의뢰인에게 심급별로 최대 50만 원까지의 보수와 실비의 소송비용(부가가치세, 인지세, 송달료 등)을 받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다. 다만, 협회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심급별로 50만 원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 규정이 정한 변호사 보수 외의 추가 보수 약정을 할 경우, 이 규정이 정한 공익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건으로 취급한다.

③ 이 규정 보수요율표상의 업무 내용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협회의 지급금액은 매년 2차례(상 ·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그 상한액을 논의하여 협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및 수임료 반환 의무]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변호사단의 사건기록과 수임내역을 감사할 수 있으며, 담당변호사는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수임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감사 결과 담당변호사가 당해 사건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담당변호사는 해당 수임료를 운영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운영위원회 및 담당변호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회칙, 규칙 및 규정상의 관련 조항에 따르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5. 25.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 보수요율표

Ⅰ. 문서 작성 및 제출

■ 소장 작성 (조정신청서 포함)	20만 원
■ 준비서면 및 답변서작성 (변론요지서 등 포함)	5매 이하 : 10만 원 10매 이하 : 15만 원 11매 이상 : 20만 원
■ 증인신청서 작성	10만 원
■ 기타 증거신청서 작성	7만 원
■ 항고 및 상고장 작성	7만 원
■ 위 항목 서류의 제출대행	3만 원

Ⅱ. 법정 출석 등

■ 변론기일 출석 (조정 포함)	10만 원 (출석 1회 당)
■ 법률상담*	5만 원 (시간당)

*법률상담비는 사건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음.

Ⅲ.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사건	30만 원 ~ 50만 원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규정

2010. 7. 19.
규정 제10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고율의 서민금융으로 입은 피해자의 실태 조사
2. 서민금융의 규제를 위한 제도의 개선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익소송특별위원회규정

2010. 12. 6.
규정 제102호

개정 2011. 5. 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소송의 연구 및 수행을 위한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공익소송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다만, 공익소송은 그 개시 전에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신설 2011. 5. 23.)

1.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공익소송의 내용, 범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익 소송의 선정
2. 공익소송의 수행 또는 지원
3. 공익소송 관련 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송경비] ① 협회는 위원회의 소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작성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다.

② 공익소송 수행결과 당해 소송에서 성공보수 등 수입이 생긴 경우에 위원회는 당해 소송에 지출된 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변협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3.)

제7조 [수당 등] 공익소송대리인단의 소송 수행 수당과 제반경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 1건당 500만 원(심급 기준) 이내를 소송 대리인단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금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3.)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1. 5. 23.)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1. 5. 23.)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12. 4. 23.
규정 제112호

개정 2013. 9.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수호하고 이를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함을 업무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9.)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 아닌 자 중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보선에 관하여는 전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관] 이 위원회는 사업이사의 소관으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0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국제인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다.

1. 국제인권상황 및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2.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인권 관련 정부기관, 해외 인권단체 등에서 제안한 인권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개진
3. 회원의 국제인권법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기타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권리 구제 방안 모색 등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 2. 14.
규정 제10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제피해자 관련 인권 및 법률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일제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제피해자에 관한 문헌의 수집 · 연구 · 분석에 관한 사항
3. 일제피해자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10인 이내의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수당] 이 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규정

2013. 9. 9.
규칙 제122호

개정 2014. 2.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 법무부 · 안전행정부가 공동으로 출범한 마을변호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연구 ·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1. 마을변호사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마을변호사 활동 심사에 관한 사항
3.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마을변호사단 지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지부는 활동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마을변호사의 모집 및 위촉 등] ① 협회장은 안전행정부의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지역(읍 · 면 · 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에 대하여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를 모집한다.

② 위원회는 지역선정 및 배정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마을변호사를 배정하며, 배정된 마을변호사는 협회장,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마을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사유를 발견한 때에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장은 공동 위촉 기관장 및 해당 지역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마을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마을변호사의 임기] 마을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2. 3.)

제7조 [마을변호사의 직무] ① 마을변호사는 전화 · 인터넷 · 팩시밀리 등을 통해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며, 필요한 경우 마을을 방문하여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② 마을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구조신청을 한 뒤 직접 소송 진행을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위임 할 수 있다.

제8조 [보고] 마을변호사가 지역 주민을 상담한 때에는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활동의 인정] 이 규정에 의한 마을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이 정하는 공익활동으로 인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평가위원회규정

2014. 2. 3.
규정 제12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각종 입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각종 법령
2. 각종 법령안
3. 입법의 주체,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4. 기타 관련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제4조 [임원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선임 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평가기준 등] 입법평가의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표 등]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협회장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해당 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규정

2014. 6. 2.
규칙 제12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조사 · 연구와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공익법률지원단의 조직 및 관리
2.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3. 공익소송 지원 방안 연구
4. 기타 관련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상근위원과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협회장이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제4조 [임원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공동위원장 체제로 할 경우 위원장은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는 조사 및 법적조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의 지원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사를 선정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장은 이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인 위원은 법률지원변호사가 된다.

제8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임기] 법률지원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직무] ① 법률지원변호사단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공익소송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②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의 절차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연수규칙

1983. 5. 21.
규칙 제11호

개 정 1994. 2. 26. 1997. 2. 22.
1997. 10. 27. 1998. 6. 8.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전문개정 2007. 7. 23.
개 정 2009. 2. 26. 2009. 10. 19.
2010. 2. 8. 2012. 2. 20.
2013. 2. 25. 2014. 2. 2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 · 사회 · 자연과학 지식의 습득 ·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 [연수의 종류] 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 [일반연수의 실시] 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무연수

제5조 [현장연수의 원칙]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의무연수의 대상]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전항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①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단, 신규변호사(변호사자격취득 후 판·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제외)는 협회가 정한 2시간의 연수를 변호사자격등록한 해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연수과목과 이수방법 등은 변호사연수원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4. 2. 24.)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이수시간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2.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8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3.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4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3. 2. 25.)
4.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3. 2. 25.)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5.)

⑤ 연수주기 내에 60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를 면제하고, 65세가 되는 경우 의무연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 2. 25.)

1. ~ 2. 〈삭제〉 (2013. 2. 25.)

⑥ 연수주기 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연수주기 내의 실제 개업일수에 따라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에 의하고,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의무는 재개업 시까지 유예한다. (개정 2013. 2. 25.)

1. ~ 2. 〈삭제〉 (2013. 2. 25.)

제9조 [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제10조 [위임연수]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연수] 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정연수] 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연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임 등의 철회] 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위임규정]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사후교육인정신청] 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6.)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개정 2009. 2. 26.)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 및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 강사, 국내외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단체에서 실시한 법률학 또는 인접학문 강좌의 강사 또는 발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③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2. 26.)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제17조 〈삭제〉 (2009. 10. 19.)

제 4 장 변호사연수원

제18조 [연수원의 설치] 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 [연수원의 기구]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 ·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의무연수의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사항
2. 연수주기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인정에 관한 사항
4. 의무연수의 사후교육인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변호사연수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신설 2009. 10. 19.)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 · 사법연수원 · 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을 포함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⑤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09. 10. 19.)

제20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연수교육심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제21조 [직무]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연수계획의 수립]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비용 등 부과] 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회계]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변호사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26.)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장, 부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999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변호사법」제85조 및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은 통산하여 의무전문연수 7시간 이상, 의무윤리연수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2008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전문연수는 그 개업신고일이 2008. 1. 1.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③ 개업신고일이 2008. 7. 1. 이후인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2008년에 65세가 된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 제7조 제3항의 신규변호사연수를 2시간 이상 이수한 회원에게는 추가로 이수한 과목과 시간에 따라 전문연수 또는 윤리연수를 각 이수한 것으로 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2012. 2. 20.
규칙 제3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9항 및 회칙 제43조의2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이하 '연수')를 실시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수목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소양 함양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합연수 : 연수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 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연수
2. 위탁연수 : 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연수
3. 현장실습 : 법률사무종사기관, 법률사무소, 법원·검찰 등에서 실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수
4.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수

제4조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① 이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연수일정, 학사관리 등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2. 연수과목 및 연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연수 이수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5. 위탁연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법원행정처·법무부·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조 [연수기간] ① 연수는 매년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이 회가 정하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② 연수가 개시된 이후에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연수종료일까지의 기간만 법 제21조의 제1항에 따른 연수기간으로 인정된다.

제6조 [연수신청 및 변경]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2주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 중에 군복무,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 이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연수기간으로 인정되며, 이 회는 연수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수이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7조 [연수자명부] 이 회는 연수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수자명부를 작성하여 연수 관련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연수과정] ① 이 회는 제2조의 연수목표에 부합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집합연수와 현장실습 등을 적절히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 회가 운영하는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변호사 개업실무
2.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반 분야 실무
3. 기타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분야 실무

제9조 [연수의 이수] ① 연수자는 원칙적으로 이 회가 운영하는 연수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법 제21의2 제1항의 연수를 마친 것으로 한다.

② 연수 중에 예비군훈련, 질병, 기타 일시적으로 연수 이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수자는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개별연수 등 이 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 심의를 거쳐 보충연수 이수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연수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연수수료증을 발급한다.

제10조 [연수자의 의무] ① 연수자는 이 회가 실시하는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고 이 회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 회는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연수자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연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연수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수기간, 연수과목 등 기본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이 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기본연수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확정한다.

제12조 [비용 부과] 이 회는 연수신청자에게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비용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table>
<tr><td colspan="2">연수자등록번호
</td><td colspan="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신청서</td></tr>
<tr><td rowspan="5">신

청

인</td><td>성 명</td><td></td><td>성명(한자)</td><td colspan="2"></td></tr>
<tr><td>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 화</td><td></td><td>핸 드 폰</td><td colspan="2"></td></tr>
<tr><td>이 메 일</td><td></td><td>비상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등 록 기 준 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자 격 취 득</td><td colspan="4">제 회 변호사시험 합격 년 월 일</td></tr>
<tr><td colspan="2">변호사자격등록
번호(※해당자에 한함)</td><td></td><td>소속 지방회
(※해당자에 한함)</td><td colspan="2">지방변호사회</td></tr>
<tr><td colspan="6">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5">☐ 변호사시험합격증
☐ 연수서약서
☐ 이 력 서
☐ 사 진</td></tr>
</table>

연 수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수를 받는 동안 모든 준칙을 준수하고 연수 이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수자 등록번호	연수중지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이메일		핸드폰	
연수중지 사 유			
연수이수 사 항	연수기간		
	~ (_____개월_____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수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이수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수자등록번호 :

주 소 :

인 정 기 간 : ~ (개월 일)

위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위 기간 동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별지 제4호 서식

<table>
<tr><td>연수자등록번호
</td><td colspan="3">연 수 자 명 부</td><td rowspan="3">사 진
3.5×4.5㎝</td></tr>
<tr><td>연수
신청일</td><td>. . .</td><td>연 수 자
등록번호</td><td></td></tr>
<tr><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r>
<tr><td>이메일</td><td></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3"></td><td>. . .</td></tr>
<tr><td colspan="3"></td><td>. . .</td></tr>
<tr><td>자격취득</td><td colspan="4">제 회 변호사시험 합격 년 월 일</td></tr>
<tr><td>연수
개시일</td><td>. . .</td><td>연수
종료일</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6">변
호
사
연
수</td><td>연수기간</td><td>연수기관</td><td>인정기간</td><td>비고</td></tr>
<tr><td>~</td><td></td><td>개월 일</td><td></td></tr>
<tr><td>~</td><td></td><td>개월 일</td><td></td></tr>
<tr><td>~</td><td></td><td>개월 일</td><td></td></tr>
<tr><td>~</td><td></td><td>개월 일</td><td></td></tr>
<tr><td>~</td><td></td><td>개월 일</td><td></td></tr>
<tr><td rowspan="4">연수
중지사항</td><td>중지신청일</td><td>중지사유</td><td>인정연수기간</td><td>비고</td></tr>
<tr><td>. . .</td><td></td><td>총 개월 일</td><td></td></tr>
<tr><td>. . .</td><td></td><td>총 개월 일</td><td></td></tr>
<tr><td>. . .</td><td></td><td>총 개월 일</td><td></td></tr>
<tr><td>기타사항</td><td colspan="4"></td></tr>
</tabl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연수자
등록번호</td><td colspan="3">연수불참신고서</td></tr>
<tr><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이메일</td><td></td><td>핸드폰</td><td></td></tr>
<tr><td>연수불참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연수불참
기 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수 불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td></tr>
<tr><td>첨부
서류</td><td colspan="3">☐ 병원진단서
☐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 기 타</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연 수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수자등록번호 :

연 수 기 간 :

위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모두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d>연수자
등록번호
</td><td colspan="3">재 심 의 신 청 서</td></tr>
<tr><td>성 명</td><td></td><td>주민등록
번 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이메일</td><td></td><td>핸드폰</td><td></td></tr>
<tr><td>이의신청
내 용</td><td colspan="3"></td></tr>
<tr><td>이의신청
사 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시험합격자운영위원회의 연수 미이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td></tr>
<tr><td>첨부
자료</td><td colspan="3">(재심의 신청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td></tr>
</table>

개별연수방법등에관한규정

2007. 7. 16.
규정 제78호

개정 2012. 2. 20.
2014. 2.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변호사연수규칙 제5조에 따라 의무연수로 인정될 수 있는 개별연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연수의 방법] 변호사연수규칙 제5조에 따라 의무연수로 인정될 수 있는 개별연수의 방법은 협회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에 한한다.

제3조 [확인서 제출] 전조의 방법으로 개별연수를 받은 회원은 연수를 마친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개별연수의 인정범위] ① 개별연수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연간 의무전문연수 7시간과 의무윤리연수 1시간으로 정하며,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2. 2. 20.)

② 삭제 (개정 2014. 2. 3.)

③ 연수교육심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제출한 확인서를 심사하여 그 회원이 받은 개별연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④ 연수교육심사위원회가 전항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연수 시간의 일부만을 의무연수이수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⑤ 전항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있다. (개정 2012. 2. 20.)

제5조 [개별연수의 비용 등] 협회는 제2조의 개별연수를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일정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별연수교육 이수 확인서

회원	성명(한글)		한 자	
	등 록 번 호		소 속	지방변호사회
강좌	강 좌 번 호		시 간	시간 분
	강 좌 명		기 간	. . . ~ . . .
	강 사 이 름			

□ **강좌내용(요약)** ※ 별지사용 가능

상기 회원은 위와 같이 협회에서 실시한 개별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_____(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회원	성명(한글)		한 자	
	등 록 번 호		소 속	지방변호사회
강좌	개별연수 이수시간			
	의무연수 인정시간			

□ **이의사유** ※ 별지사용 가능

□ **소명자료** ※ 별지사용 가능

상기 회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_____(서명 또는 날인)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규정

1991. 2. 11.
규정 제3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조의 목적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협회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매년 1회 대회를 개최한다.

제3조 [행사의 내용] ① 협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실현을 위한 과제를 검토 ·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 · 발표한다.

② 대회는 연구회, 토론회, 심포지엄 및 기타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기구] ① 협회는 대회의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개최 4개월 전까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위 대회의 사무가 완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협회 총회의 의장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그 부의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집행내용 등의 결정] ① 대회의 개최일, 개최지, 행사의 주제 및 내용 등은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결정한다.

② 연구회, 토론회 등의 주제에 관하여 회원은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 [참가비용의 부담] 협회는 대회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참가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1. 2. 11.)

이 규정은 1991. 3. 1.부터 시행한다.

한국법률문화상규칙

1983. 5. 21.
규칙 제12호

전문개정 1998. 6. 8.
개 정 2001. 10.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가 수여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의 추천, 심사,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한국법률문화상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수여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 이 회에 한국법률문화상의 시상에 관한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한국법률문화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협회장은 변호사 중에서 9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법률학 교수, 판사, 검사 및 사회저명인사 중 3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 10.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협회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협회장은 법조인(각 해당 기관도 포함) 및 법학회, 대학 기타 유관기관이 추천마감일 전에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1. 10. 29.)

② 전항의 경우 추천권자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후보자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3. 수상후보자의 이력서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제7조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협회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 1인을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결과통지]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자발표] 협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수상자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29.)

제11조 [비밀준수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와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며, 관련서류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제12조 [특별회계] ① 이 상의 수여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기금은 회원의 찬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장은 이 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상당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울제일변호사회 및 서울통합변호사회가 시행한 한국법률문화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83년도의 시상일과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의 기한 등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1993. 6. 28.
규정 제44호

개 정 1994. 3. 29. 1998. 5. 25.
전문개정 2001. 7. 9.
개 정 2004. 2. 9. 2004. 11. 29.
2006. 2. 13.
전문개정 2007. 2. 5.
개 정 2009. 9.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회칙 제44조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정의]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변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 · 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 · 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제3조 [광고의 기본원칙] 변호사는 변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석방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법령 및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5조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①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 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변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변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변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⑦ 변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제6조 [사전 광고]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 '주로 취급하는 분야' , '주요취급분야' ,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 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4.)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법, 부동산관련법, 임대차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형사법, 상사법, 회사법, 해상법, 보험법, 행정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노동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증권법, 금융법, 국제거래법, 기업인수합병, 에너지법, 스포츠법, 엔터테인먼트법, 방송통신법, 환경법, IT법, 의료법, 도산법, 국제중재법, 무역법, 조선관련법, 건설법, 중재법, 등기사무 등 (개정 2009. 9. 14.)

③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9. 9. 14.)

제8조 [법률상담] ① 변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제9조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변호사가 간판의 설치 기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변호사는 광고 속에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변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해당 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변호사회장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변호사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④ 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협회나 해당 지방변호사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 또는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변호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⑤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광고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협회 광고심사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질의회신] ① 변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제19조 [세부 기준 제정] 협회는 인터넷, 컴퓨터, 방송, 유 ·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세칙인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은 이 규정 시행일부로 폐지한다.

부 칙 (2009. 9. 1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서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인터넷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터넷 웹사이트상에 개설된 홈페이지, 웹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카페, 블로그, 이메일, 웹메일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
2. 컴퓨터, PDA, 휴대전화, 무선통신 등 전송매체 및 공중파, 케이블, DMB 등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문자, 사진, 음향, 동영상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물

제3조 [인터넷등 광고기준] 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의 링크 및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변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에 의한 광고는 허용된다.

② 변호사는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에 이용자로 가입하고, 제3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일반 법률소비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변호사나 일반 법률소비자로부터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받게 하거나 약속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하나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① 변호사는 인터넷 등 하나의 웹사이트에 다른 변호사와 공동으로 업무나 경력 등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변호사는 제1항의 광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나 방법이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실제와 달리 공동근무 또는 업무제휴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는 인터넷 포털업체 기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등이 제2항의 오인, 혼동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경우 회원가입 기타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시행일] 이 광고기준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2009. 9. 14.
규정 제80호

개정 2009. 11. 23. 2010. 1. 25.
2010. 4. 5. 2013. 9. 9.
2014.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분야의 구분] ①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6. 2.)

②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3조 [신청 등] ①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와 전문분야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추천한 3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③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등록신청을 받는 즉시 해당 전문분야 담당 심사위원에게 그 심사를 의뢰하고, 이에 따른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협회장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이사 중 1인을 정해 전문분야 등록신청을 검토하도록 하고, 담당 상임이사로 하여금 심사 의견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9. 9.)

⑤ 상임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5.)

제5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수료 경력
2.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학위 취득 유무
3. 해당 전문분야에 관하여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강의 실적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기업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경력
5. 기타 법조계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저명성 유무
6. 해당 전문분야사건 취급 경력, 관련 판례 평석 및 연구논문 작성 실적

제6조 [등록증의 교부 등] 협회장은 전문분야를 등록(갱신)한 변호사에게 전문분야등록증을 교부하고, 1개월 이내에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분야 등록의 유지] ① 전문분야 등록(갱신 포함)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등록유효기간 중에 동 분야에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를 1회(10시간) 이상 수강하거나, 동 기간 중 취급한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보고서 또는 관련 연구보고서를 원고지 50매 이상의 분량으로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의 취소] ① 전문분야 등록(갱신) 후에 전문분야 등록의 기준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전문분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협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문분야 등록(갱신)을 취소할 경우, 협회장은 대한변협신문에 등록취소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의 갱신] ①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는 제 7 조에서 정한 등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변호사는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한 신청서와 소정의 등록 갱신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등록갱신를 위한 신청을 등록유효기간 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만일 등록 부적격 판단을 할 경우에는 2주간의 보정기간을 주어 재심사한다.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 전문분야 등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9조 3항에 의거 등록갱신 부적격판단에 대한 보정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갱신부적격 결의를 한 경우, 협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갱신신청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할 경우,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등록 말소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등록을 말소한 경우, 협회장은 대한변협신문에 전문분야등록말소를 공시한다.

제11조 [재심사청구] ① 변호사는 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 등록심사결과와 등록(갱신) 취소 결정, 갱신 부적합결정, 등록(갱신)말소 결정 에 대하여 관련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재심사청구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해당 변호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재심사결정 1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신청비] 전문분야 등록 및 갱신 신청에 따른 신청비는 전문분야별로 각 100,000원으로 하며, 등록 또는 갱신 거절 시 50,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0. 4. 5.)

제13조 [준용] 전문분야 등록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3.)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14. 6. 2.)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구 분	분 류
민 사	민사법 / 부동산 / 건설 / 재개발·재건축 / 의료 / 교통사고 / 등기 / 손해배상 / 임대차관련법 / 국가계약 / 민사집행 / 채권추심
상 사	상사법 / 회사법 / 인수합병 / 도산 / 증권 / 금융 / 보험 / 해상 / 무역 / 조선 / 중재 / IT
형 사	형사법 / 군형법
가 사	가사법 / 이혼 / 상속 / 소년법
행 정	행정법 / 공정거래 / 방송통신 / 헌법재판 / 환경 / 에너지 / 식품·의약 / 수용 및 보상
노 동	노동법 / 산재
조 세	조세법 / 관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 국제조세
지 적 재 산 권	지적재산권법 / 상표 / 특허 / 저작권 / 영업비밀 / 엔터테인먼트
국 제 관 계	국제관계법 / 국제거래 / 국제중재 / 해외투자 / 이주 및 비자
기 타	스포츠 / 종교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2000. 6. 26.
규정 제55호

개정 2006. 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장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3.)

제2조 [수임장부의 정의] 변호사 수임장부라 함은 변호사가 수임사무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28조에 따라 작성, 보관하는 장부를 말한다.

제3조 [수임사무의 정의] 변호사의 수임사무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 기타 일반 법률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수임한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4조 [수임장부 기재의무] 변호사는 수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건을 수임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수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임장부 기재사항] ① 변호사가 소송사무에 관하여 수임장부에 기재해야 할 수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임일자
2. 위임인
3. 상대방
4. 사건명
5. 사건번호
6. 수임사무내용
7. 처리결과
8. 변호사 수임액(신설 2006. 2. 13.)

② 변호사는 소송사무 이외의 일반 법률사무에 관하여도 수임장부를 작성하되, 수임일자, 위임인, 수임사무 내용 등을 기재한 장부를 제1항의 장부와 별도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보존기간] 변호사는 수임장부를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사무원규칙

1983. 5. 21.
규칙 제21호

개정 2000. 7. 4.
2006. 2. 20.
2009. 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41조에 의하여 변호사사무직원의 종류, 의무,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6.)

제2조 [종류] ① 사무직원의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직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한다.

③ 기능직 사무직원은 운전사, 타자원, 사환 기타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자격] 〈삭제〉 (2009. 2. 26.)

제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변호사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일부신설 2000. 7. 4.)
   가. 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6. 2. 20.)
5. (제3호로 통합) (개정 2000. 7. 4.)
6. (제4호로 변동) (개정 2000. 7. 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용하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무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③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06. 2. 20.)

제5조 [인원] 〈삭제〉 (2009. 2. 26.)

제6조 [의무] ① 사무직원은 이 규칙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사무직원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직원은 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임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2. 20.)

④ 사무직원은 그 정을 알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연수] 사무직원은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신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
2. 사무직원을 해고한 때
3. 제9조에 정한 사무직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제9조 [등록] ① 지방변호사회는 사무직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9. 2. 26.)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사무직원의 종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무직원의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록을 위한 신고, 명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10조 [사무직원회] ① 지방변호사회는 그 소속하에 사무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11조 [적용제외]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기능직 사무직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83. 5. 21.)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위원회규정

1991. 10. 21.
규정 제37호

개정 1998. 5. 25.
2001. 7. 9.
2005. 2.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변호권 침해 등 직무상 고충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대책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1. 변호사가 법원, 검찰 기타 기관 또는 소송 관계인 등으로부터 변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직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
2. 기타 변호사가 직무상 겪는 고충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2. 14.)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조사]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법정에 임하여 방청케 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조치] 협회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회원의 권익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1991. 10. 21.)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993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이 규정은 1991.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고충처리위원회시행세칙

1998. 8. 31.
세칙 제4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고충처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상 고충에 대한 적절 ·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신고의 방식] 변호사 직무상 고충신고는 변호사의 성명, 주소, 신고의 취지, 신고의 이유 및 관계서류, 기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사건부 양식] ① 사건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사건번호는 ○○고○○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며, 신고를 받은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인다.

제4조 [사건기록철의 양식] ① 위원회는 사안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철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편철한다.

② 고충사안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충신고 사건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서류철 맨 위에 편철한다.

제5조 [부구성] 위원회는 ○개의 부로 구성하고, 부는 주임위원을 순서에 따라 지명한다.

제6조 [정례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안을 심의한다.

② 부에 있어서 주임위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역할] ① 고충사건을 접수한 담당 회원과에서는 접수순으로 지체 없이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사건을 담당부 전 위원에게 송부하여 그 처리를 위촉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위촉을 받은 담당부는 규정 제6조에 의한 조사를 미리 시행하고, 그 조사경위 및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정례회의에 상정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변호사의 권익침해가 중대한 사안일 때에는 조사결과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사안에 상응한 조치를 건의한다.

④ 위원회는 전항에 따른 협회장의 조치가 있었을 때 및 조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한 변호사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⑤ 협회장은 필요한 조치실행에 있어서 주임위원에게 담당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위원회는 홍보과를 통하여 「인권과정의」에 고충처리사안의 내용 및 처리결과를 게재(익명)하며, 지방변호사회에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말에 전년도 고충처리사건보고백서를 발간한다.

제9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8. 8. 31.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사건부

사건번호	신고변호사	사건종별	담당부회주임	접수연월일	조사연월일	조사결과	조치연월일	조치내용	조치 · 통보 연월일	비고
○○고 ○○										

서식 제2호 사건기록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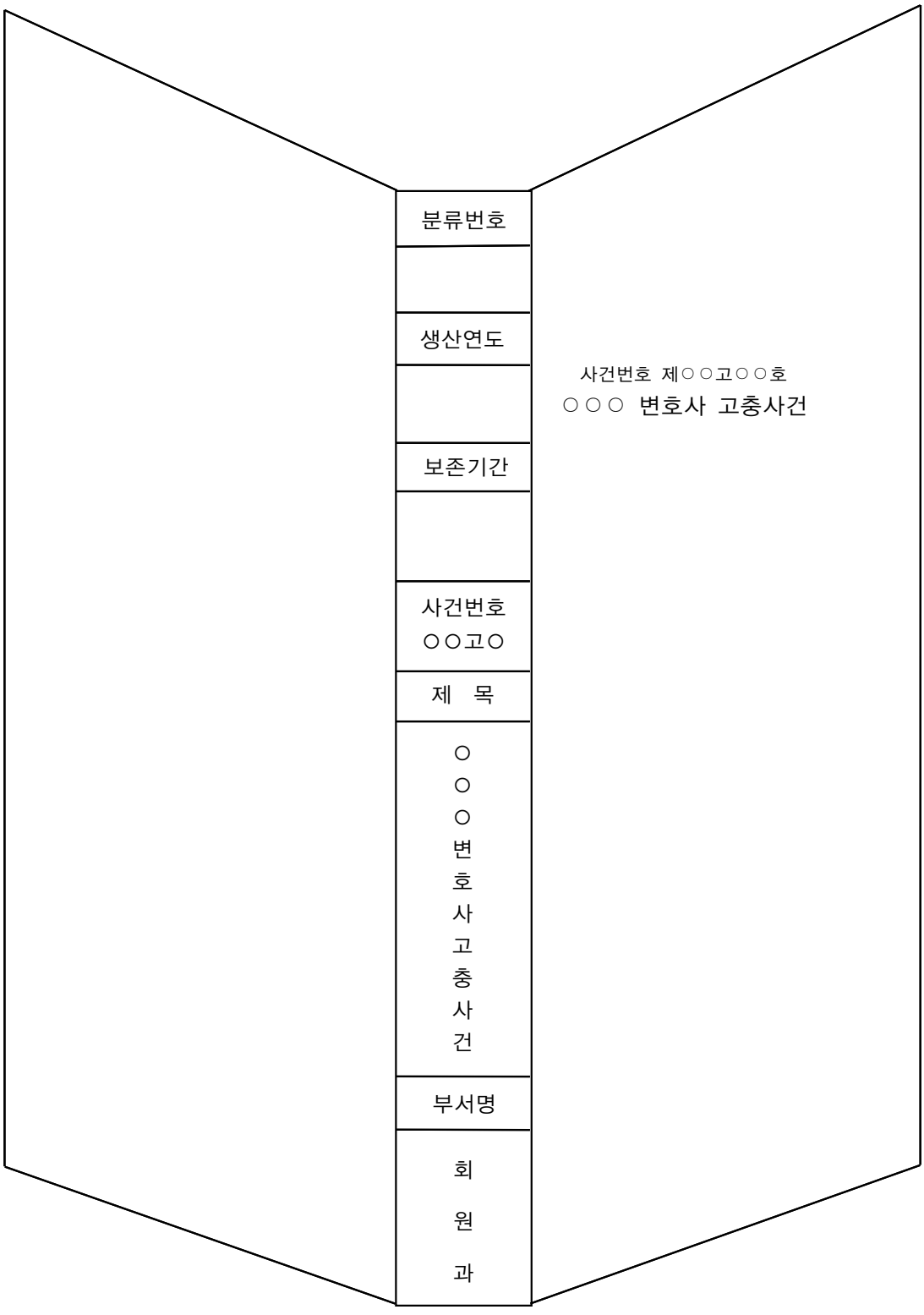

서식 제3호 고충사건처리카드

고충사건처리카드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사건번호	○ ○ 고 ○ ○		접수일자	
신 고 변 호 사	성 명	(한 자)		
	등록번호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사 무 소	(전 화 :)		
처 리 과 정	처 리 일 자	처 리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주 임 위 원				
담 당 부 원				
조 사 결 과				
위원회 결정	. . .			
조 치 일 자	. . .			
신고인 통지	. . .			
고 충 요 지				

회지간행규칙

1983. 5. 21.
규칙 제10호

개정 1988. 2. 27. 1989. 2. 25.
1990. 2. 24. 2003. 10. 27.
2007. 2. 26. 2009. 10. 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6조에 의하여 이 회가 간행하는 회지의 편집, 제작, 배포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① 회지는 이 회의 기관지로서 이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수단이다.

② 회지는 이 회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각종 공시사항을 게재하는 공보가 되고,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학계와 법조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종합법률지가 된다.

제3조 [체제] ① 회지의 제호는 "인권과정의(이하 회지라 한다)"라 한다. (개정 1989. 2. 25.)

② 회지는 월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간하거나 합병호를 간행할 수 있다.

③ 〈삭제〉 (1988. 2. 27.)

④ 회지의 간행 면수는 150면 전후로 한다. (신설 2009. 10. 19.)

제4조 [주관] ① 회지의 발행인은 협회장이 되고, 편집인은 공보이사가 된다.

② 〈삭제〉 (1990. 2. 24.)

제4조의2 [편집위원회] ① 회지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인과 편집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7. 2. 26.)

③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9.)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2. 24.)

제5조 [게재사항] ① 회지에는 공시, 연구, 조사, 분석사항 등을 게재한다. (개정 1990. 2. 24.)

② 공시사항의 범위는 회칙 제6조제2항 및 각종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사항의 범위는 변호사제도, 변호사실무, 법률학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논문, 논설, 작품, 기사, 자료 기타의 원고로 한다.

④ 회지에는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간행계획] ① 편집위원회는 매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에 간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의 간행계획을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붙여 이 회가 수립하는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88. 2. 27.)

제7조 [편집계획] ① 편집위원회는 매월 10일까지 다음 달에 간행할 회지의 편집계획을 심의 ·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편집계획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지를 편집하여야 한다. (개정 1988. 2. 27.)

제8조 〈삭제〉 (2009. 10. 19.)

제9조 [원고수집] ① 편집위원회는 월별 편집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편집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게재사항에 관한 원고를 청탁하고, 간행계획에 맞추어 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는 회지에 게재할 공시사항의 원고를 편집계획에 맞추어 편집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88. 2. 27.)

제10조 [원고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원고가 수집되면 이를 회지에 게재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고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때
2. 제2조에 정한 회지의 성격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때
3. 회지의 간행계획 및 편집계획에 비추어 회지에 게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개정 1988. 2. 27.)

제11조 [원고료] ① 회지에 게재된 연구사항에 속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② 원고료는 회지간행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삭제〉 (1990. 2. 24.)

제12조 [제작] ① 회지의 제작은 인쇄업자에게 도급 주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1990. 2. 24.)

제13조 [간행시기 및 부수] ① 회지는 매월 1일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1990. 2. 24.)

제14조 [배포] ① 회지는 유료로 한다. 다만, 이 회의 회원과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국내외의 법조단체, 기타 관련기관 및 협회장이 정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② 준회원,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국내외의 법조단체, 기타 관련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삭제〉 (1990. 2. 24.)

제15조 [특별회계] 〈삭제〉 (1985. 2. 27.)

제16조 [시행규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간행된 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고, 회지의 간행 호수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붙인다.

부 칙 (1988. 2. 27.)

이 규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5.)

이 규칙은 198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2. 26.)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차기 협회장 취임 시까지로 한다.

회지편집위원회규정

1988. 4. 18.
규정 제21호

전문개정 2000. 6. 26.
개 정 2009. 9. 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지간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회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회지의 내용, 지면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2. 회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집필의뢰 또는 청탁
3. 회지편집에 필요한 조사·분석
4. 회지에 게재하는 투고 및 광고 심사
5. 그 외 회지편집에 필요한 행위

제3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편집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9. 14.)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및 회지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매월 10일까지 다음 달에 간행할 회지의 편집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회의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편집위원과 편집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회지간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2007. 2. 5.
규정 제7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요령 및 투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인권과 정의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①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②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③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3조 [게재조건] ①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은 게재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동일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원고 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논설, 판례평석, 서평,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제목 표기), 이름(괄호 안에 영문이름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주소 및 팩스번호를 적고,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③ 논문, 논설, 판례평석 등의 경우, 국문 초록 및 주제어를 작성한다.

④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⑤ 원고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 : 왼쪽 여백 25, 오른 여백 25, 들여쓰기 5, 줄간격 17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10.5
2. 각주 : 왼쪽 여백 3,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9

⑥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제5조 [각주표기 요령] ① 저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가 2명인 경우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3명 이상인 경우, '○○○외'로 표기한다.
2.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출전은 저자, 논문명(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3.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로 인용면수를 표시한다.

4.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 : 대법원 1995. 1. 1. 선고, 1994다1111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5.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안에 언어를 표시한다. [예 : 화이트(James J. White)]
6. 공저자는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 김갑돌/이을순/박명희]
7.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를 사용한다.
8.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9.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10. 기념논문집은 '××× 기념논문집' 또는 '○○○-×××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11.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하지 않는다.

제6조 [투고방법] ① 투고원고는 원칙적으로 이메일(journal@koreanbar.or.kr)로 수시 접수하고, 투고일은 원고가 도착한 날로 한다.

② 인편전달, 우편송부된 원고는 당 협회에 도착한 날을 투고일로 한다.

제7조 [원고료 지급] 접수된 원고가 게재될 경우 회지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단, 인권과정의 발간 후 게재 논문이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원고료가 환수될 수 있다.

제8조 [원고의 저작권] 인권과 정의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홈페이지 게재, 기타 전자매체 등에 의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지게재논문심사규정

2007. 2. 5.
규정 제7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지로서 간행하는 『인권과 정의』(이하 '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심사대상 논문 등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회지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회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는 회지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회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갖는다.

1. 제출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2. 회지 게재 논문 등에 관한 심사규정의 개정
3. 기타 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논문 등의 심사]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편집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논문 등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 논문 등은 편집회의 개최 전에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에 대한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지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매 발행 시 편집회의를 통하여 심사대상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심사기준] 논문 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설정에 있어서 창의성과 적실성
2. 연구관점의 참신성
3. 연구방법의 논리적 일관성
4. 학문적 또는 실무적 기여도
5. 전체평가의견
6.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심사보고 및 결정] ① 심사위원은 편집회의에서 논문 등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회의 결과 편집위원회는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한다.

1. 무수정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가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 등은 필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편집회의에서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제7조 [논문 등의 게재] ① 편집위원회에서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로 결정한 논문 등은 회지에 게재한다.

② 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내용은 법학연구소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합지간행규칙

2011. 12. 12.
규칙 제3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6조에 의하여 이 회가 간행하는 종합지의 편집, 제작, 배포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이 종합지는 변호사의 정신세계 안정과 올바른 변호사상을 제시하는 휴먼 감성 문학지로 한다.

제3조 [체제] ① 이 회가 발간하는 종합지의 제호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종합지는 연 4회 발간한다. 단 정기간행 외에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종합지의 간행 면수는 100면 전후로 한다.

제4조 [주관] 종합지의 발행인은 협회장이 되고, 편집인 겸 편집장은 공보이사가 된다.

제5조 [편집위원회] ① 종합지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인과 편집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편집장과 이 회 사무국 홍보과 직원으로 편집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게재사항] ① 종합지에는 시론, 좌담 기획기사, 대담 인터뷰, 특집, 소설,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글, 그림 등을 게재한다.

② 종합지에는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간행계획] ① 편집장은 매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간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편집장은 제1항의 간행계획을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부쳐 이 회가 수립하는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편집계획] ① 편집위원회는 연 4회 간행할 종합지의 편집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편집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편집계획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한다.

제9조 [원고 모집] ① 편집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편집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게재사항에 관한 원고를 청탁하고, 간행계획에 맞추어 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0조 [원고의 심사] ① 편집 실무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1차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원고가 접수되면 이를 종합지에 게재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고는 종합지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때
2. 제2조에 정한 종합지의 성격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때
3. 종합지의 간행계획 및 편집계획에 비추어 종합지에 게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제11조 [원고료] ① 종합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② 원고료는 종합지 간행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제작] 종합지의 편집 디자인 및 인쇄는 인쇄업자에게 도급 주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간행시기] 종합지는 계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호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배포] ① 종합지는 회원에는 무료로 배포하고, 일반 구독신청자에게는 유료로 배포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종합지편집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0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종합지 간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종합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종합지의 내용, 지면 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2. 종합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집필의뢰 또는 청탁
3. 종합지에 필요한 조사 · 분석
4. 종합지에 게재하는 투고 및 광고 심사
5. 그 외에 종합지 편집에 필요한 행위

제3조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편집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및 종합지 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계간지 발행일 2개월 전후에 차기에 간행할 종합지의 편집계획을 심의 ·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회의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편집위원과 편집간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종합지 간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문간행규칙

2000. 7. 4.
규칙 제27호

개정 2001. 2. 12.
2003. 10. 27.
2005. 2. 21.
2009. 10. 19.
2011. 12.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6조의2에 의하여 이 회가 발행하는 신문의 편집, 제작, 배포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간정신] ① 신문은 이 회를 대표하는 정기간행물로서 이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수단이다.

② 신문은 이 회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각종 보도자료 및 회원들의 의견 등을 게재하는 공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신문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조계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학계와 법조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종합신문이 된다.

제3조 [체제 등] ① 신문의 제호는 "대한변협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신문은 주간으로 월요판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2.)

③ 신문의 판형은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되, 발행면수는 신문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 12. 12.)

제4조 [발행인 등] ① 신문의 발행인은 협회장이 된다. (개정 2009. 10. 19.)

② 신문의 편집인은 공보이사로 한다. (개정 2011. 12. 12.)

③ 편집인의 위임과 지시를 받아 신문편집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장 1인을 둔다. (개정 2011. 12. 12.)

④ 〈삭제〉 (2011. 12. 12.)

제5조 [신문편집위원회] ① 신문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신문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신문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19.)

③ 신문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단, 공보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개정 2009. 10. 19.)

④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0. 19.)

⑤ 신문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신문편집위원회의 직무 등] ① 신문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신문의 내용, 지면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2. 신문에 게재하는 원고의 집필의뢰 또는 청탁
3. 신문편집에 필요한 취재 · 조사
4. 신문에 게재하는 투고원고 및 광고 심사
5. 사설, 논단 등의 집필 기타 신문편집에 필요한 행위 (개정 2005. 2. 21.)

② 신문편집위원회는 한 달에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여 신문의 편집계획, 방향 등을 논의하고 발행된 신문에 대해 평가한다. (개정 2011. 12. 12.)

③ 편집인은 신문편집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편집 계획에 관하여 협의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2.)

④ 협회장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인과 미리 협의한 후 편집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2.)

제7조 [변호사기자 등] ① 신문의 집필과 취재 등을 위하여 약간 명의 논설위원 및 논설위원을 겸하는 변호사기자를 둔다. (개정 2005. 2. 21.)

② 변호사기자는 기자로서의 소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보이사가 추천하고 협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5. 2. 21.)

③ 논설위원 및 변호사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회장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④ 변호사기자에게는 원고료 외에 취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⑤ 〈삭제〉 (2011. 12. 12.)

(전문개정 2011. 12. 12.)

제8조 [발행계획] ① 공보이사는 매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에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공보이사는 전항의 발행계획을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붙여 이 회가 수립하는 매 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제9조 〈삭제〉 (2009. 10. 19.)

제10조 [기사 및 원고의 작성 등] ① 신문에 게재할 기사는 이 회의 사무국 홍보과에서 작성한다.

② 신문에 게재할 원고는 이 회의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에게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며, 투고는 수시 접수한다.

③ 원고 등의 수집 및 수정 · 정리는 이 회의 사무국 홍보과에서 담당한다.

④ 이 회의 사무국 홍보과는 작성된 기사 및 정리된 원고 등을 신문편집위원회에 넘긴다.

제11조 [편집] 신문편집위원회는 기사 및 원고 등의 게재 여부 및 게재면 등을 심의 · 결정한다.

제12조 [게재불가 원고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집필원고 및 투고는 신문에 게재하지 않는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3. 독단, 편견에 기한 경우 또는 기초자료를 다루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
4. 변호사법, 이 회 회칙 및 규칙 등에 반하는 경우
5. 다른 신문,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미 투고가 되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사회풍속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3조 [광고] ① 신문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게재 여부는 신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광고의 형태 및 요금은 별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장기적 광고, 유관기관의 광고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신문편집위원회의 결의로 광고료를 감액결정할 수 있다.
④ 이 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출고된 광고 또는 공익성을 띤 광고는 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게재불가 광고]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경우
2. 변호사법, 이 회 회칙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3. 기타 게재에 적당하지 않다고 결정되는 경우

제15조 [수당] ① 신문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한다.
② 논설위원 및 변호사기자에게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1. 12. 12.)

제16조 [원고료] ① 신문에 게재되는 집필원고 및 투고원고에 관하여는 그 집필자 및 투고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한다.
② 원고료는 신문발행 후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조판 및 인쇄] ① 신문의 조판은 이 회의 사무국 홍보과에서 하며, 인쇄는 인쇄업자에게 도급주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쇄업자 선정은 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 [배포 및 구독료] ① 신문은 회원, 유관기관 및 일반구독신청자에게 유료로 배포하며, 구독료는 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원의 구독료는 회비에 포함한다.
② 신문구독료는 6개월 또는 1년간의 비용을 예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편집위원회의 결의로써 그 기간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신문은 신문편집위원회의 결의로써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및 회원 이외의 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제19조 [원고 및 교정쇄의 보존] 신문의 원고 및 교정쇄는 당해 원고를 게재한 신문이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간 보존한다.

제20조 [신문의 보존] 신문은 각호당 3부를 영구 보존한다.

제21조 [축쇄판] ① 신문의 축쇄판은 100호마다 발행할 수 있다.
② 신문의 축쇄판은 각 권당 3부를 영구 보존한다.

③ 신문의 축쇄판은 전자매체로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2조 [보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신문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고, 신문의 발행 호수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붙인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9. 10.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차기 협회장 취임 시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001. 2. 12. 개정)

※ 부가세 10%는 별도

형 태		금 액		비 고
기본	4.4㎝×1㎝	흑백	20,000원	
		칼라	24,000원 (흑백금액에 대한 20% 증액)	
하단광고	24㎝×10㎝	흑백	1,000,000원	
		칼라	1,200,000원 (흑백금액에 대한 20% 증액)	
전면광고	24㎝×35.2㎝	흑백	3,000,000원	신문의 마지막 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칼라	3,600,000원 (흑백금액에 대한 20% 증액)	
돌출광고	기본형태에 따른 광고주와의 합의	흑백	기본형태 금액에 비례하여 계산	1. 돌출광고의 세로 크기는 10㎝를 넘지 않게 한다. 2. 1면에는 광고를 게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칼라	흑백금액의 20%증액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2010. 2. 8.
규칙 제3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회' 라 함) 회칙 · 규칙 · 규정의 공고사항 및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고할 매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매체] 회에서 아래의 매체 중 1가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한다.

1. 인권과 정의
2. 대한변협신문
3.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제3조 [공시송달] ①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협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공고매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인권과 정의 및 대한변협신문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로부터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2005. 10. 10.
규정 제6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관 임용을 포함한 공직추천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 신상정보의 정의] 변호사 신상정보라 함은 별지 서식에 기재된 변호사의 신상정보를 말한다.

제3조 [변호사 신상정보의 수집 및 보관] 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는 매년 1월 초 또는 필요한 시기에 법관 혹은 공직에 취임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에게 별지 서식의 신상정보를(신상정보를 이미 제출한 변호사에게는 변경하여 기재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변호사의 신상정보는 법조일원화 및 공직추천 관련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된 변호사의 신상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개별 변호사의 징계, 상벌, 기타 법관 및 공직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 신상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및 보전업무는 사업이사가 담당한다.

제4조 [변호사 신상정보의 활용] ① 본 회가 대법원 또는 법무부 등으로부터 법관 혹은 공직임용 후보자에 대한 추천 혹은 검토를 의뢰 받을 경우, 협회장은 의제를 정하고 법관 · 검사 등 인사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의견과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종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사법평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법관 및 공직임용 후보자를 추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0. 10.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변호사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

사 진 (3㎝×4㎝) *우편 별도 송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실 주 소	
	연 락 처	(H.P.)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별지)		
연구 실적(논문, 세미나, 주제발표 등 연구발표 경력 중요 활동사항 기재)		
변호사 활동 사항(수임사건 처리결과 등)		

사회활동 및 공익활동 사항 (정부, 기업 관련 자문 및 참여 활동 등)
회무 참여 사항(대한변협 및 지방회 활동)
진정 및 징계 사항
특기 사항
협회 기재 사항(면담 등을 통한 추천 의견) 공 란

【 변호사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요령 】

1. 성명은 한글을 우선 기재하고, 한자를 부가하여 기재

2. 사진(2매, 반명함판/3㎝×4㎝)은 뒷면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우편으로 별도 송부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추가해 주시기 바람

대변인규정

2007. 4. 16.
규정 제7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이 회의 홍보 및 선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변인 직책을 신설하고, 대변인의 정원,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대변인의 정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협회장은 필요에 따라 대변인을 증원할 수 있다.

제3조 [선임] 대변인은 공보위원회 위원 중 공보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직무] 대변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장 명의의 각종 성명서 및 보도자료 문안 작성
2. 협회장 명의의 공식 논평의 발표 및 기자 회견
3.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 및 협회 관련 대외 발표
4. 기타 협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성명 및 논평의 발표] ① 대변인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또는 논평을 발표할 경우, 사전에 공보이사와 협의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발표할 성명서 및 논평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발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및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07. 7. 16.
규정 제76호

개정 2011. 5. 2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년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성숙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변호사"라 함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을 제외하되, 경력기간은 실무경력에 산입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1. 5. 23.)
2. "멘토변호사"라 함은 청년변호사들이 성숙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줄 수 있는 경력과 인품을 갖춘 변호사로서 협회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3. "고문변호사"라 함은 청년변호사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고, 경력과 인품을 갖추고 청년변호사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로서 총회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1. 5. 23.)

제3조 [조직] ①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가입한 청년변호사(이하 "위원" 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상실하거나 협회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 하는 날 그 임기는 만료하되, 후임 위원이 정하여 질 때까지 그 직무는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3.)

제 2 장 임 원

제4조 [임원의 구성]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7인, 간사 2인 및 집행위원 10인 내지 40인의 임원을 둔다.

제5조 [선임] ①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1. 5.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5. 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대행 순서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총 회

제7조 [설치] 위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8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 5. 23.)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10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위원이 전 항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총회 전일까지 도착한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은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총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2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로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을 포함한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집행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집행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집행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사항
3. 총회가 위임한 사항
4. 위원장, 분과위원장이 부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 [회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의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분과위원회

제16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속위원의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1.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2. 학술분과위원회
3. 멘토링분과위원회
4. 공익분과위원회

5. 여성분과위원회
6. 공공기관변호사분과위원회
7. 사내변호사분과위원회

② 위원은 위원회 가입과 동시 또는 사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 또는 2인, 간사 1인을 둔다.

④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각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회는 주요활동을 서면으로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소집]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에는 소속위원의 관심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가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19조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분	분장사무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각종 특별연수 및 유학기회 제공, 외국어 및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학술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분야 연구 및 전문성 강화
멘토링분과위원회	원로 멘토변호사와 결연을 통한 실무능력 강화
공익분과위원회	법률구조 및 기타 공익활동 수행
여성변호사분과위원회	여성변호사가 당면한 현실적 애로사항 타파
공공기관변호사분과위원회	공공기관변호사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환
사내변호사분과위원회	사내변호사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환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2010. 1. 25.
규정 제96호

개정 2010. 4. 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로법조인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자조사업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법조원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법조원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중 75세 이상의 원로변호사들로 구성한다.

제2장 임 원

제3조 [임원의 종류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집행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1인 (개정 2010. 4. 5.)

② 위원회는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 4. 5.)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4. 5.)

제4조 [선임] ① 위원장은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 4. 5.)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0. 4. 5.)

③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0. 4. 5.)

④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0. 4. 5.)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총 회

제6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7조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8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 4. 5.)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4. 5.)
4. 기타 협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개정 2010. 4. 5.)

제10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4. 5.)

② 총회구성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송부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및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2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로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포함한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 4. 5.)

제13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사항
3.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선출 (신설 2010. 4. 5.)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개정 2010. 4. 5.)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 4. 5.)

제15조 [회의] 집행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4. 5.)

제5장 보 칙

제16조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삭 제 (2010. 4. 5.)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0.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0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내변호사 제도의 발전과 사내변호사들의 사회정의 실현, 인권옹호, 회원들 사이의 정보 교류, 위상 제고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회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내의 특별위원회로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사내변호사 지위 및 역할 등 사내변호사제도에 대한 조사 · 연구
2. 사내변호사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공동위원장 체제로 할 경우 위원장은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 3인 이상, 간사 3인 이상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여성변호사들의 상호 정보교류, 위상 제고 및 이들에 대한 지원과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내의 특별위원회로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성변호사의 정의] 이 규정에서의 "여성변호사"라 함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의 변호사자격을 보유한 자(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 [조직] ①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가입한 변호사(이하 "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사망, 휴업, 탈퇴 시까지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4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6인 내지 12인, 간사 2인, 집행위원 20인 내지 50인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선임] ①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집행위원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대행 순서는 연수원 기수 선행자, 동일기수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3 장 총 회

제7조 [설치] 위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제8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10조 [의결] ① 총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위원이 전 항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총회 전일까지 도착한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은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2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로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집행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위원 정원의 5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집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집행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13조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집행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사항
3. 총회가 위임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 [회의] ①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의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분과위원회

제16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속위원의 전문적인 연구 및 활동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17조 [세칙] 위원회는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백서간행특별위원회규정

2009. 9. 14.
규정 제8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의 변호사백서간행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변호사의 현황, 각종 통계 등 변호사백서 간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분석 · 연구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변호사백서를 간행함을 업무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백서 간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관] 이 위원회는 사업이사의 소관으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변호사백서간행을 위한 한시기구로서,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에 불구하고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09. 9. 14.
규정 제8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의 협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협회장 직선제를 구현하고 그에 따른 협회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에 관하여 연구·조사활동을 하여 그 제도개선책을 협회장에게 건의함을 업무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관] 이 위원회는 총무이사의 소관으로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협회장 직선제 등 협회 제도 개선을 위한 한시기구로서,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1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조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에 불구하고 그 임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10. 1. 25.
규정 제9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직역대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연구 · 활동한다.

1. 다른 직역의 변호사직역 침식에 대한 대책
2. 변호사직역의 확장방안
3. 기타 변호사직역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각 직역별 ·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저명인사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자문위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예산] 협회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의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9. 11. 23.
규정 제9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서비스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 다양화 · 국제화
2. 변호사소개 제도 양성화 등 법률서비스 정보 제공 문제
3. 변호사에 대한 제약 또는 규제 철폐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개선
4. 기타 법률서비스 개선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2010. 1. 25.
규정 제9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회' 라 함) 및 소속 회원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명예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변호사] 협회장은 회를 홍보하고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자격요건] 명예변호사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회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2.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제4조 [위촉기간] 명예변호사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구적으로 한다. 다만, 위촉사안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명예변호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명예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요청할 때
3. 회 또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변호사법제 5조의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5. 명예변호사 위촉사업이 폐기될 때

제6조 [위촉증 및 변호사 배지 수여] 협회장은 위촉된 명예변호사에게 위촉증 및 변호사 배지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명예변호사의 활동] ① 명예변호사는 초상권사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협회의 초상권의 사용범위는 목적사업에 한한다.

② 명예변호사는 이 회 또는 변호사의 이미지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명예변호사는 이 회의 각종 공익사업이나 중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보수] 명예변호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한 제1호 명예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2020년IBA총회서울유치추진위원회규정

2009. 11. 23.
규정 제8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20년에 개최되는 세계변호사협회(IBA)의 총회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2020년IBA총회서울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IBA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IBA 총회 유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준비 및 점검
2. IBA 및 IBA 회원국들에 대한 IBA 총회 유치 활동
3. 외교통상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4. IBA 총회 유치에 관한 대국민 홍보 활동
5.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회의 서울유치에 공헌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이상,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명예위원장 등] ① 협회장은 정부기관, 연구소, 국제기구의 종사자 기타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사 중에서 명예위원장, 명예위원, 명예홍보대사(이하 '명예위원장등'이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위원장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연 4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명예위원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주요활동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주요활동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기획단] ① 위원회의 실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획단을 둔다.

② 단장은 국제이사가 되며, 단원은 국제과장 및 국제과원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 및 명예위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 및 명예위원장 등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제교류특별위원회규정

2010. 12. 6.
규정 제10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및 회원들의 국제 법조단체와의 우호협력 및 상호교류를 강화하고 협회 및 회원들의 국제적 진출을 위한 기본적 정책과 실천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협회 및 회원들의 국제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함,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3항에 의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제1조 목적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국제 법조단체, 국제기구, 기타 해외 로펌 및 기업 (이하 "국제 법조단체 등"이라고 한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현황 파악 및 관리
2. 위원/회원의 국제 법조단체 등의 진출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3. 위원/회원의 국제회의 참가 지원
4. 국제 법조단체나 국제기구의 행사유치 및 조직, 홍보, 지원
5. 기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위원] ① 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국제 법조단체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회원 및 국제 법조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장이 위촉한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국제 법조단체 등에서 주요직책을 맡고 있고, 협회의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임명되는 위원의 반수는 그 임기를 1년으로 정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연 4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는 주요활동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연석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위원회 별로 따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케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 날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11조 [예산편성] 협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세부 예산편성은 위원회가 작성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얻은 지침에 따른다.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위원장은 집행전 협회의 재무이사 및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집행결과를 지체 없이 재무이사를 통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협회의 감사는 위원회의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료보존특별위원회규정

2010. 12. 6.
규정 제10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자료보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 ·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협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의 분류 및 보존
2. 외부단체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의 분류 및 보존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치발전위원회규정

2012. 4. 23.
규정 제11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정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협회 회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후 회원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 아닌 자 중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회 임원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T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0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 활용 및 보안 규정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IT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협회에서 필요로 하여 개발, 구매한 모든 웹사이트 운영 관리

② 협회 정보화, 정보 시스템 환경 향상 방안 연구 및 건의

③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의사]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② 위원회는 의사의 경과와 업무실적을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협회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규정 시행일로부터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규정

2012. 11. 21.
규정 제11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건을 감시 · 통제하기 위하여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 사건에 관한 자료수집 · 관계인조사 ·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의 조사활동과 그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 및 정책대안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업무를 처리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은 사안에 따라 제1항의 업무를 위원장이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상근위원과 6인 이상 30인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협회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 임원이 대리하여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공개함을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조사 및 법적조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에 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위하여 협회회원이나 협회회원이 아닌 대학교수,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5인 내지 10인의 범위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중 및 임기 만료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필요한 법적조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대리 등 변호사의 직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세칙제정] 위원회의 조사활동 · 신고센터의 설치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조일원화위원회규정

2013. 2. 1.
규정 제11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법조일원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등을 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법관(대법관 제외, 이하 생략) 및 검사 임용과 관련한 후보자 심사 기준과 절차 마련
2. 회원의 법관 및 검사 임용과 관련한 후보자 심사
3. 회원의 법관 및 검사 적임자 추천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사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있는 사회인사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각자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소관] 이 위원회는 기획이사의 소관으로 한다.

제9조 [지침]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는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선임된 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 2012. 10. 29. 제41차 상임이사회 심의의 거쳐 협회장이 제정한 법관임용지원자 평가지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본다.

법관임용지원자 평가지침

2012. 10. 29. 제41차 상임이사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관 임용을 지원한 회원 및 회원이었던 자(이하 "법관임용지원자")에 대하여 대법원에 충실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에 적용할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전문성
2. 정의감
3. 균형감각
4. 공정성
5. 청렴성
6. 성실성
7. 윤리성
8. 봉사정신
9. 의사소통 능력
10. 일반적 평판

제3조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3개 단계로 한다.

1. 우수
2. 적격
3. 부적격

제4조 [평가자료] 협회는 법관임용지원자에 대한 평가자료로 다음 각 항의 자료를 법관임용지원자 본인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참고로 한다. 협회는 대법원으로부터 법관임용지원자의 명단을 통보 받으면 법관임용지원자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해당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① 법관임용지원자가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

가. 이력서

나. 자기소개서

다. 사건수임내역서

라. 저술, 논문 목록

마.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특정변호사 사건내역 (해당되는 경우)

② 협회가 회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무연수 이수 내역
나.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법관임용지원자 징계 · 진정에 관한 자료
다. 전문분야 등록내역

③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다음 서류
가.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조회서
나. 지방변호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법관임용지원자 징계, 진정에 관한 자료
다. 지방변호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법관임용지원자의 공익활동 상세 수행내역 자료

제5조 [면담] ① 법조일원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관임용지원자에 대하여, 전문성과 균형감각 등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보다 충실히 파악하기 위해, 제4조에 규정한 평가자료 및 제8조의 보충적 평가자료를 기초로 면담위원들에 의한 면담을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면담일정을 지정하여 법관임용지원자에게 통보하고 면담위원을 배정하되, 보안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 [면담위원 구성] ① 면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 각 법관임용지원자에 대한 집중면담은 각 3인의 면담위원으로 구성되는 평가팀이 실시한다. 다만 면담위원의 수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면담위원의 회피] 면담위원은 면담대상 법관임용지원자와 사이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 법관임용지원자에 대한 면담위원의 직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함께 근무하고 있거나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경우
2. 동일한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 단체에 함께 근무하고 있거나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경우
3.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후 1년간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동일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 함께 근무하고 있거나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던 경우
4. 면담위원과 법관임용지원자 간에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제척사유, 같은 법 제43조의 기피사유 기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보충적 평가 자료] 면담위원은 법관임용지원자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집중면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충실한 평가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평가자료 및 제5조의 집중 면담 결과 이외에도 본인 또는 다른 면담위원이 개별적으로 수집 또는 입수한 자료 또는 정보, 기타 제3자의 면담 결과 등 다른 자료를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제9조 [공정심사의무] 법관임용지원자가 사전에 위원회 위원 또는 면담위원과 부당한 접촉을 통하여 청탁을 한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그 사실을 대법원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 면담위원, 협회 임원 및 직원 등 본 지침에 따른 법관임용지원자

심사업무에 관여한 자는 심사기간 전후를 막론하여 법관임용지원자의 개인신상정보와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및 의견서 작성] ① 면담위원은 평가자료 및 면담결과에 따라 제3조의 평가등급이 포함된 의견서 제1차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의 내용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본 평가지침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의 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2013. 5. 13.
규정 제11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 전화, 서신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5조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전일까지 도착한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은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5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2013. 5. 13.
규정 제120호

개정 2013. 9.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둔 별도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무소(이하 '확장된 단일사무소' 라고 한다)로 보기 위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①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한다.

②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9. 9.)

제2조의2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회는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협회장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이사 중 1인을 정해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담당 상임이사로 하여금 심사의견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9. 9.)

제3조 [심사의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조의 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 사무소 사이의 거리, 복수 사무소를 연결하는 통로 및 도로 등 물리적인 접근성
2. 복수 사무소의 이용 상황, 복수 사무소에 주재하는 변호사의 수 등 실질적인 사용현황
3. 인근 사무용 빌딩 등 사무공간 공실률(空室率), 임료(賃料)의 수준 등 경제적인 사무실 확보가능성
4. 본래의 사무소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내용
5. 본래의 사무소의 이용현황
6. 그밖에 이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하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실조회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조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3. 9. 9.)

부 칙 (2013. 5.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IT법정책위원회규정

2014. 6. 2.
규정 제12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IT법 분야의 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IT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 IT법 정책 포럼 운영

② IT법 정책 감시 · 평가

③ IT법 아카데미를 통한 회원의 IT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④ 외부 IT 전문기구와의 공동 프로젝트 진행

⑤ 기타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 · 행정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4. 6. 2.
규정 제12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가 운영하는 입법 · 행정 아카데미의 준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회원의 입법 및 행정 분야 전문성 제고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이 입법 및 행정 분야 진출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입법 · 행정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 · 행정 아카데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법 · 행정 아카데미 실행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입법·행정 아카데미 운영계획의 수립] ① 위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법 · 행정 아카데미의 주제, 연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입법 · 행정 아카데미의 연사를 섭외하고, 실시장소와 기간 등 입법 · 행정 아카데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산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4. 9. 22.
규정 제12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생 · 파산제도에 관하여 자료의 수집 · 연구와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도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조사 · 연구와 추진방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회생 · 파산 관련 교육과정 개설에 관한 사항
2. 국민 · 법원과의 신뢰 강화를 위한 변호사 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 변론권 보장 및 실력양성을 위한 전국 회원의 애로사항 청취에 관한 사항
4. 법률 복지차원의 법률구조 시스템 정비에 관한 사항
5. 회생 · 파산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및 유관기관에 대한 의견제시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이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 부위원장 ·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4. 9.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2000. 6. 26.
규정 제54호

개정 2003. 2. 10.
2006. 2. 13.
2010. 1. 25.
2014.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 회칙 제9조의2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03. 2. 10.)
2.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3.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4.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개정 2003. 2. 10.)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0. 1. 25.)
8.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신설 2010. 1. 25.)

제3조 [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공익활동 의무대체 등] ①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해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에게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

1.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 (개정 2006. 2. 13.)
2.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개정 2006. 2. 13.)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활동시간의 배분 인정은 그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13.)

⑤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조경력이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3.)

제5조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7조 [협력의무]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활동 등의 보고] ① 개인회원은 매년 1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소속회원의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2. 10.)

제10조 [위임] 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 · 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2002. 2. 4.
규정 제5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공익활동의 범위와 내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범위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 규정시행일로부터 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2. 4.부터 시행한다.

변호사공익대상규정

2012. 12. 28.
규정 제11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와 대한변협인권재단에서 공동으로 수여하는 변호사공익대상의 추천, 심사, 결정 및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여 상을 수여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 이 회에 변호사공익대상 심사를 위한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협회장은 변호사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그 중, 교수 · 판사 · 검사 및 사회저명인사 중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이 회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시상 등] ①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각 1인을 선정하여 매년 변호사 동계연수 시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변호사공익대상 상패(또는 메달)와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이 회와 대한변협인권재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회원들의 사회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① 위원회는 시상일 2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추천 및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상일 2개월 전까지 유관단체에 대하여 수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신청 등]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중 법인 등 단체의 경우 대표자
2. 전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10인 이상의 공동명의

3. 유관단체의 대표자

② 전항의 경우 추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후보자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③ 수상후보자의 신청자격은 협회 회원(준회원 포함)으로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후보자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3. 후보자의 이력서

⑤ 추천 및 신청 이외에 위원회는 직권으로 후보자를 발굴 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전조에 따른 후보자 중에서 개인 및 단체 수상자 각 1인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회장 및 대한변협인권재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원] 협회장 및 대한변협인권재단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변호사공익대상의 시상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예산에 책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 추천 및 신청 공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것으로 본다.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

2009. 11. 23.
규정 제8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외국법자문사 제도의 안정 및 국내 · 국제법률업무의 적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하며, 협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외국법자문사 관련 법령(규칙, 규정 등)의 정비 등 국내 및 국외 국제법률업무의 적정한 발전을 위한 제반 조건 정비에 관한 사항
2.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에 따르는 국내 및 국외 제반 조건 정비에 관한 사항
3.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외국법자문사 제도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 저명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조사, 연구] 위원회는 국외의 변호사 제도 및 외국법자문사 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외국법자문사에게 맡길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제7조에 따라 조사,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법자문사 기타 위원회를 보좌하는 협회 직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도 또한 같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2009. 11. 23.
규정 제85호

개정 2010. 1. 2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이 회가 행할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 · 신고 및 등록거부 ·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등록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운영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하려는 외국법자문사 및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게 적용한다.

제3조 [명부의 비치] ① 이 회는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이하 "외국법자문사명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및 한국 주소)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자격승인의 연월일 및 사유
5.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6. 업무개시 및 휴업에 관한 사항
7. 자격승인취소 및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8. 징계에 관한 사항
9. 원자격국
10. 외국변호사의 자격 명칭 및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연월일
11. 제6조 제2항의 등록 및 등록갱신 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② 이 회는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이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라 하며, 외국법자문사명부와 총칭하여 이하 "명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내용
7. 설립인가취소 및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8. 제28조 제2항의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제4조 [명부의 작성] 명부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다만,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명부의 보관 보존] ① 명부는 멸실,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명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③ 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증서, 등록통지, 등록보고, 회지게재사항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2장 외 국 법 자 문 사

제1절 등 록

제6조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을 하거나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진
5.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6.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상 감독기관에 의한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7. 별지 1 양식의 서약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및 한국 주소)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자격승인의 연월일 및 사유
5.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6. 업무개시의 연월일
7. 원자격국
8. 외국변호사의 자격 명칭,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연월일

제7조 [이 회의 처리] ① 제6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 회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신청 또는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장은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심사결과 제8조에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의 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거부의 사유] 이 회는 제6조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법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등록거부 등] ① 등록심사위원회가 협회장으로부터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거부안건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거부의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간주 및 등록명령의 처리] 이 회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등록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의 절차] 협회장은 제7조 제3항, 제9조 제3항 및 제11조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명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서와 함께 등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료의 납부] ① 이 규정에 의한 각종 등록 또는 등록갱신 등을 신청한 자는 이 회가 정한 등록료 또는 등록갱신신청수수료 등을 등록신청서류 또는 등록갱신신청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록료와 등록갱신료 등은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4조 [신고] ① 외국법자문사가 제6조 제2항에 정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변동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고,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수리를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 2 절 등록취소

제15조 [등록취소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취소는 다음의 2종으로 나눈다.

1.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2.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제16조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① 이 회는 등록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이 회에 변호사로 등록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② 등록외국법자문사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조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9조 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취소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① 등록외국법자문사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징계개시신청여부 또는 징계개시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취소의 절차] ① 이 회가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명부용지를 폐쇄한다.

② 협회장이 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통지서를 당사자(사망의 경우 제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 당사자는 제2항에 의해 등록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등록증명서를 이 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절 등록심사위원회

제2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판사 1인, 검사1인, 변호사 4인, 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인으로 구성하고, 동 자격을 갖춘 동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

는 동 자격의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심사 및 의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기구] ①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등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등록심사위원회는 업무를 보조하는 1인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다.

제23조 [안건의 회부] 협회장이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안건회부서와 관련자료를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안건이 회부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기일을 정하여 위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최초 심사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다음 심사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최초 심사기일의 통지서에는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또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선임이나 심사의 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⑤ 〈삭제〉 (2010. 1. 25.)

⑥ 〈삭제〉 (2010. 1. 25.)

제25조 [당사자 등의 권리 등] ①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외국법자문사를 보조인으로 각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정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등록심사위원회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심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법률사무소의 소재지 및 소속지방회 등을 등록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해임한 경우에도 같다.

⑦ 보조인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함께 등록심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들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인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즉시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진술로 간주한다.

제26조 [심사] ①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 개의 안건의 심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정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위원은 안건의 심사준비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심사기일에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심사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결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28조 [등록신청] 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제2항 제6호를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이 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내용

제29조 [등록심사] ① 이 회는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전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신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회에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의 비치, 열람 등] ① 이 회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이 적힌 서면
2.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이 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를 비치하고 제28조 제2항의 등록사항, 제30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32조 [공고] 이 회가 제30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33조 [시행세칙]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법자문사명부] ①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① 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4조 [각종 등록신청서] 규정 제6조, 제28조에 의한 각종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5조 [이력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이력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사진] ①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사진은 4매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의 것이어야 한다.

제7조 [서약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서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료납부] ①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등록료 납부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및 등록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 등록 : 150만 원
2.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 : 50만 원
3. 기타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취소 : 5만 원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 50만 원

③ 제2항의 등록비용(제5호 제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 [등록사무처리부] 협회가 규정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및 제30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규정 제11조 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한 등록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증명서] 규정 제12조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규정 제29조에 관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등록통지] 협회장이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등록거부통지] 협회장이 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한 등록거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 [각종 신고서] 규정 제14조 및 제30조에 의한 신고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14조 [등록취소사유신고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등록취소신청서] 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 [명부폐쇄방식] 협회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부를 폐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의 비고란에 다음 표지와 같은 붉은색 고무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명 부 폐 쇄
20 . . . ㊞

제17조 [등록취소통지서] 협회장이 규정 제19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안건회부서] 규정 제23조에 의한 안건회부서의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심사기일통지서] 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일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심사조서] 규정 제26조제4항에 의한 주임심사위원의 심사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제5항에 의한 심사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의결서] 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의결서의 서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 [보고] 이 회가 법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 제27호,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 1. 17.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목록”

제1호 외국법자문사명부/556
제2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보충용지/558
제3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559
제4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보충용지/561
제5호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562
제6호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563
제7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564
제8호 이력서/565
제9호 서약서/566
제10호 등록료납부서/568
제11호 등록사무처리부 /569
제12호 외국법자문사등록증명서/570
제13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증명서/571
제14호 등록통지/572
제15호 등록거부통지/573
제16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574
제17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서/575
제18호 등록취소사유신고서/576
제19호 등록취소신청서/577
제20호 등록취소통지서/578
제21호 안건회부서/579
제22호 심사기일통지서/580
제23호 주임심사위원 심사조서/581
제24호 심사조서/583
제25호 의결서/585
제26호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586
제27호 외국법자문사자격등록명세서/587
제28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명세서/588
제29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 등에 관한 보고/589
제30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명세서/590

[제1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 제1항

<table>
<tr><td>등록년월일
20 . . .</td><td colspan="3">외 국 법 자 문 사 명 부</td><td>등록번호
㉮</td></tr>
<tr><td rowspan="3">① 성 명</td><td colspan="2">원 어</td><td>신고년월일
. . .</td><td rowspan="3">사 진</td></tr>
<tr><td colspan="2">한 글</td><td>. . .</td></tr>
<tr><td colspan="2">영 어</td><td></td></tr>
<tr><td>②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번 호</td><td></td></tr>
<tr><td>③ 국 적</td><td>변동년월일
. . .</td><td>국 가</td><td colspan="2">신고년월일
. . .</td></tr>
<tr><td rowspan="2">④ 출 생 지</td><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3">⑤ 국내주소</td><td>. . .</td><td>주 소</td><td colspan="2">. . .</td></tr>
<tr><td></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5">⑥ 사 무 소
명 칭</td><td>. . .</td><td>명 칭</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rowspan="6">⑦ 사 무 소
소 재 지</td><td>. . .</td><td>소 재 지</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r><td>. . .</td><td></td><td colspan="2">. . .</td></tr>
</table>

외국법자문사명부 (전면)

210㎜×297㎜
인쇄용지 80g/㎡

⑧ 자격취득국가	취득년월일 . . .	국 가 외국변호사명칭 (원 어) (한 글) (영 어)		등록년월일 . . .
	. . .	(원 어) (한 글) (영 어)		. . .
⑨ 자격승인	승인년월일 . . .	승인번호		신고년월일 . . .
⑩ 개 업	개업년월일 . . .	개업구분		신고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⑪ 휴 업	휴업년월일 . . .	휴업사유		신고년월일 . . .
	. . .			. . .
	. . .			. . .
⑫ 등록취소	취소년월일 . . .	취소사유		등록년월일 . . .
	. . .			. . .
	. . .			. . .
⑬ 업무정지	결정년월일 . . .	정지사유		신고년월일 . . .
	. . .			. . .
⑭ 징 계	처분년월일 . . .	징계사유	징 계 벌	등록년월일 . . .
	. . .			. . .
	. . .			. . .
⑮ 비 고				

외국법자문사명부 (후면)

[제2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 제1항

성명		**명 부 보 충 용 지**	등록번호
등 록 사 항	원인년월일	변 동 사 항	등재년월일

명부보충용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3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 제2항

<table>
<tr><td>등록년월일
２０　.　.　.</td><td colspan="3">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td><td>등록번호
㉥</td></tr>
<tr><td rowspan="2">① 명　칭</td><td colspan="3">한　글</td><td>신고년월일</td></tr>
<tr><td colspan="3">영　문</td><td></td></tr>
<tr><td>② 설립인가</td><td>인가번호</td><td colspan="2">설립인가일</td><td></td></tr>
<tr><td>③ 설립목적</td><td colspan="3"></td><td></td></tr>
<tr><td>④ 본　점
사무소</td><td colspan="2">명 칭</td><td>설립일</td><td></td></tr>
<tr><td rowspan="2">⑤ 본　점
소재지</td><td colspan="3">최초소재지</td><td>신고년월일</td></tr>
<tr><td colspan="3">최종소재지</td><td></td></tr>
<tr><td rowspan="5">⑥ 사무소
주　소</td><td>설치년월일</td><td colspan="2">주　소</td><td>신고년월일</td><td>폐쇄년월일</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5">⑦ 대　표</td><td>인　가</td><td>한　글</td><td>영　문</td><td>신고년월일</td><td>폐쇄년월일</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전면)

210㎜×297㎜
인쇄용지 80g/㎡

[제3호 서식]

⑧ 구성원	가입인가	한 글	영 문	신고년월일	탈퇴년월일
⑨ 소 속 외국법자문사	채 용	한 글	영 문	신고년월일	사직년월일
⑩ 징 계	결정일	결정사유		벌	등재일
⑪ 설립인가 취 소	인가일	취소사유			등재일
⑫ 해 산	인가일	취소사유			등재일
⑬ 비 고					등재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후면)

210㎜×297㎜
인쇄용지 80g/㎡

[제4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 제2항

명 칭		명 부 보 충 용 지	등록번호
등 록 사 항	원인년월일	변 동 사 항	등재년월일

명부보충용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5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2항--본인작성--

외 국 법 자 문 사 등 록 신 청 서
Application Form of Registration to Foreign Legal Consultant

신청인 Applicant	① 성 명 Name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②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gistration Number)		③ 국 적 Nationality	
	④ 출 생 지 Birthplace			
	⑤ 국내주소 Address (Local)			
		□□□-□□□ 전화 : Postal Code Phone :	FAX :	
⑥ 자격취득국가 Home Country of License			⑦ 자격취득년월일 Date of Qualification Acquisition	
⑧ 외국변호사명칭 Title of Foreign lawyer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⑨ 자격승인월일 Date of qualification Approval			⑩ 자격승인번호 Approval Number	
⑪ 사무소명칭 Name of Office				
⑫ 사무소소재지 Seat of the Head Office				
		Postal Code TEL :	FAX :	
⑬ E - m a i l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신청합니다.

I apply the regist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accordance with Article 10, Section 1,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Regulations and Article 6, Registration Regulations for Foreign Legal Consultant, Korean Bar Association Bylaws.

2 0 . . .

Name of Applicant

To Korean Bar Association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 이 력 서 □ 사 진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서 약 서

[제6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 제3항--본인작성--

외 국 법 자 문 사 등 록 갱 신 신 청 서
The Application Form to Renew the registration

신청인 Applicant	① 등록번호 Registration Number			
	② 등록년월일 Date of Registration			
	③ 성 명 Name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④ 사무소명칭 Name of Office			
	⑥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gistration Number)		⑤ 국 적 Nationality	
	⑦ 출 생 지 Birthplace			
	⑧ 한국주소 Local Address	Postal Code Tel. : FAX :		
⑨ 자격취득국가 Home Country of License			⑩ 자격취득년월일 Date of Qualification Acquisition	
⑪ 자격승인월일 Date of qualification Approval			⑫ 자격승인번호 Approval Number	
⑬ 외국변호사명칭 Title of Foreign lawyer		(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		
⑭ 사무소소재지 Seat of the Head Office		Postal Code Tel. : FAX :		
⑮ E - m a i l				

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제3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I apply to renew the regist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accordance with Article 11, Section 3,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Regulations and Article 6, Registration Regulations for Foreign Legal Consultant, Korean Bar Association Bylaws.

2 0 . . .

Name of Applicant

To Korean Bar Association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 이 력 서 □ 사 진 □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 서 약 서

[제7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 제1항--본인작성--

외 국 법 자 문 법 률 사 무 소 등 록 신 청 서
Application Form - Regist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table>
<tr><td rowspan="4">사무소
Office</td><td>① 명 칭
Name</td><td colspan="3"></td></tr>
<tr><td>② 대 표
Name of The Representative</td><td></td><td>③ 설 립 인가일</td><td>Date on which authorization is granted for establishment</td></tr>
<tr><td>④ 목 적
Objectives</td><td colspan="3"></td></tr>
<tr><td>⑤ 주 소
Seat of the Office</td><td colspan="3">Postal Code Tel. : FAX :</td></tr>
<tr><td rowspan="3">구성원
Partners</td><td rowspan="3">⑥ 성 명
Name</td><td>(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td><td rowspan="3">⑦ 주거지 및 자격취득국가 자격취득년월일
1.Residential Area,
2.Home Country of License,
3.Date of Qualification Acquisition</td><td>1.
2.
3.</td></tr>
<tr><td>(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td><td>1.
2.
3.</td></tr>
<tr><td>(원어 Original Language)
(한글 Korean)
(영어 English)</td><td>1.
2.
3.</td></tr>
<tr><td rowspan="5">본점사무소
Head Office</td><td>⑧ 명 칭
Name</td><td></td><td>⑨ 설립일</td><td>Date on which authorization is granted for establishment of a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td></tr>
<tr><td>⑩ 소 재 지
Seat of the Head Office</td><td colspan="3">Postal Code Tel. : FAX :</td></tr>
<tr><td>⑪ 홈페이지
Homepage</td><td colspan="3"></td></tr>
<tr><td>⑫ 최초사무소
The First Seat of Office</td><td colspan="3">(본점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Only write in different with the seat of head office</td></tr>
<tr><td colspan="5">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을 신청합니다.
I apply the registration of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accordance with Article 18, Section 1,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Regulations and Article 28, Registration Regulations for Foreign Legal Consultant, Korean Bar Association Bylaws.

2 0 . . .
Name of Applicant
To Korean Bar Association</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4">☐ 각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표등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의 경력증명서
☐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증명서</td></tr>
</table>

[제8호 서식]-등록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본인작성--

이 력 서
Curriculum Vitae

사 진 Photo 3㎝×4㎝	성 명 Name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gistration Number	—	
	국적 및 출생지 Nationality and Birthplace		
	주 소 Address		
외국변호사자격국 Home country of License		외국변호사 명칭 Title of Foreign Lawyer	

연 월 일 Date(yy/mm/dd)	학 력 · 경 력 사 항 Academic Background / Career, Professional Experience	발 령 자 Organiz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인쇄용지 80g/㎡

[제9호 서식]-등록규정 제6조 제1항 제7호--본인작성-- (앞면)

서 약 서

Sworn Statement

1. 본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am not subject to and do not otherwise fall within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set out in Article 5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2. 본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For the registration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pursuant to Article 1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I, having been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under Article 6 of the same Act, hereby swear that I will sincerely perform my duties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년 월 일

_____이 름

_____서 명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담당자:

(뒷면)

[참고]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Article 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disqualified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1.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terminated or the exemption from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made definite;
2.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execution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the stay of the execution of the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or for whom two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lapse of the stay period;
3.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sentence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a stay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4.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fired from a public service through an impeachment or thre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dismissed or put to a heavier punishment through a disciplinary action;
5.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was put to an action equivalent to a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0 subparagraph 1 through 3 or Article 102 paragraph ②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for whom such an action has not been invalidated yet; and
6. A person who is incompetent, quasi-incompetent, or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is not yet rehabilitated, and a person who is treated likewise in accordance with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n original license country

[제10호 서식]-등록규정 제13조

등 록 료 납 부 서

1. 금 원

납 부 사 유	
	□ 외 국 법 자 문 사 등 록
	□ 외 국 법 자 문 사 등 록 갱 신
	□ 원자격국 변경 등록
	□ 기타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취소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납부합니다.

20 . . .

납 부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변협서식

210㎜×297㎜
인쇄용지 80g/㎡

[제11호 서식]

처리 번호	접수연월일	신 청·신 고 의 요 지	신 청·신 고 인	결정월일	비 고

210㎜×297㎜
인쇄용지 80g/㎡

[제12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 제1항

외국법자문사 등록증명서

Registration document (Foreign Legal Consultant)

성 명
Name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등 록 번 호
Registration Number
자격취득국가
Home Country of License

위 사람은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으므로 외국법자문사명부에 등록하였음.

20 . .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변협서식
등록증서

[제13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 제3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

명　　칭

등 록 일

등록번호

위 사무소는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등록하였음.

20　　.　　.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변협서식
등록증명서

[제14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 제4항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등 록 통 지**

등 록 구 분	□ 외국법자문사등록 □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
신 청 인	
신청서접수년월일	20 . . .

위 등록신청을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통지합니다.

1. 등록년월일 : 20 . . .
2. 등 록 번 호 : 제 호

첨부서류 : 등록증서 1통 끝.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등록통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15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 제1항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 0 . . .

수 신

제 목 등록거부통지

등 록 구 분	□ 외국법자문사등록 □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
신 청 인	
신청서접수년월일	2 0 . . .

위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12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 등록을 거부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합니다(신청인은 이 등록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유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2
등록거부통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16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 제1항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④ 사무소 주소			
		□□□-□□□ 전화 : FAX :		
	⑤ 국 내 주 소			
	⑥ 국 적		⑦ 자격등록번호	
⑧ 변 동 사 항		□성명 □사무소 □국내주소 □국적 □자격취득국가 □외국변호사명칭		
⑨ 변 동 내 용		※ 종전 기재내용, 변동년월일, 변동사유 및 근거등을 상세히 기입할 것.		
E - m a i l				

위 신고인에 대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귀중

첨부서류	□ 주민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 주소변경 시 주민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제17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8조 제4항

외 국 법 자 문 법 률 사 무 소 변 동 신 고 서

신청인	① 명 칭		② 등록번호	
	③ 대 표	-		
	④ 사무소 주소			
		□□□-□□□ 전화 : FAX :		
	⑤ 본 점 주 소			
⑧ 변 동 사 항		□명칭 □대표 □사무소주소 □본점주소 □구성원 □소속외국법자문사		
⑨ 변 동 내 용		※ 종전 기재내용, 변동년월일, 변동사유 및 근거등을 상세히 기입할 것.		
홈 페 이 지				

위 신고인에 대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변동이 있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귀중

첨부서류	□ 주민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 주소변경 시 주민 또는 외국인등록등본

[제18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제3항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사유신고서

당사자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 무 소	
	⑥ 등 록 번 호	
⑦ 등 록 취 소 사 유		□결격사유해당 □자격승인 취소
⑧ 취 소 사 유 내 역		
⑨ 사유 발생 년월일		20 . . .

위 사람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6조 제1항에 정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신고합니다.

20 . . .

신 고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변협서식

210㎜×297㎜
인쇄용지 80g/㎡

[제19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제3항

외 국 법 자 문 사 등 록 취 소 신 청 서

당사자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 무 소	
	⑥ 등 록 번 호	
⑨ 등록취소 신청사유		폐 업(상세사유 :)
⑩ 폐 업 예 정 일		20 . . .

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제3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18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 등록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고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변협서식

210㎜×297㎜
인쇄용지 80g/㎡

[제20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3조 제3항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20 . . .

수 신

제 목 등록취소통지

당사자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 무 소			
	⑥ 등 록 번 호			

위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당사자는 이 등록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그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취소의 구분 :

2. 등록취소 년월일 : . . .

3. 등록취소의 사유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변협서식 31-13
등록취소통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21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 제2항 -등록규정 제23조

안 건 회 부 서

당사자인적사항	① 성 명		② 영 문	
	③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⑤ 사 무 소			
	⑥ 등 록 번 호			
안건				
등록거부사유				
관련법규				
첨부서류				

위 당사자에 대한 { 외국법자문사등록거부 /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 } 안건을 회부합니다.

20 . .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등록심사위원회 귀중

210㎜×297㎜
인쇄용지 80g/㎡

[제22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 제2항--등록규정 제24조

심 사 기 일 통 지 서

당사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번 호			
심 사 일 시		20 . . .		
심 사 장 소				
(등록거부, 등록취소) 사유의 요지				
고 지 사 항		당사자는 (1)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2)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3) 대리인의 선임이나, (4) 심사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안건회부서 1부		

귀하에 대한 외국법자문사등록거부 /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 안건의 심사기일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귀하

210㎜×297㎜
인쇄용지 80g/㎡

[제23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 제2항--등록규정 제26조 제4항

주임심사위원심사조서

안건번호 :

당사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심 사 일 시		20 . . .		
심 사 장 소				
주 임 심 사 위 원				
참 여 인				
대 리 인				

심 사 의 경 과 및 내 용

20 . . .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주임심사위원 (인)

간 사 (인)

210㎜×297㎜
인쇄용지 80g/㎡

[제23호 서식별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24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 제2항--등록규정 제26조 제5항

심 사 조 서

안건번호 :

당사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리 인			

심 사 일 시	20 . . .
심 사 장 소	
주 임 심 사 위 원	
출 석 위 원	
당사자 출석여부	
대리인 출석여부	
참 여 인	
공 개 여 부	

심 사 의 경 과 및 내 용

20 . . .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간 사 (인)

210㎜×297㎜
인쇄용지 80g/㎡

[제24호 서식별지]

210㎜×297㎜
인쇄용지 80g/㎡

[제25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14조 제2항-등록규정 제27조 제2항

의 결 서

안건번호 :

당사자	성 명		영 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무 소			
	등 록 번 호			
	대 리 인			
주 문				
이 유				

20 . . .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210㎜×297㎜
인쇄용지 80g/㎡

[제26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 제2항

대 한 변 호 사 협 회

변 협 제 호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법무실장

제 목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

2 0 . . .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 등록거부, 신고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상황을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별첨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변협서식 31-16
등록 등에 관한 보고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27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 제2항

외국법자문사등록명세서

등록 년월일	성명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록 번호	자격승인년월일	자격취득사유

변협서식 31-19
외국법자문사등록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28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 제2항

외국법자문사 명부변동신고명세서

신고 년월일	성명 (영문)	자격등록번호	변동 년월일	사무소 명칭	변동내용

변협서식 31-24
명부변동신고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29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 제2항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회 원 제 호 . . .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국제법무과장

제 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 등에 관한 보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각종 등록, 등록거부, 신고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상황을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별첨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변협서식 31-16
등록 등에 관한 보고서

210㎜×297㎜
인쇄용지 80g/㎡

[제30호 서식]-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 제2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명세서

등록 년 월 일	명칭 (영문)	주소	등록 번호	자격승인 년월일	자격취득사유

변협서식 31-19
외국법자문사등록명세서

210㎜×297㎜
인쇄용지 80g/㎡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 10. 15.
규칙 제36호

개정 2014.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7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회원의 회비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3.)

제2조 [적용] 〈삭제〉 (2014. 10. 13.)

제3조 [월회비] 외국법자문사의 월회비는 이 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월회비의 고지] 협회장은 각 외국회원에게 납부해야 할 월회비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월회비의 납부] 매월 1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외국회원은 당월 20일까지 고지된 월회비를 당월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제6조 [가산금] 외국회원이 제5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까지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개정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2012. 10. 15.
규칙 제3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에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법자문사인 외국회원(이하 “외국회원”이라 한다)의 신분증 제작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및 발급의 대행] ①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분증 제작 및 발급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발급 대행의 경우 이 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제3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 [필수기재사항] 신분증에는 이 회의 명칭, 외국회원의 성명, 원자격국명, 등록번호,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각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휴대 및 제시] 외국회원은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재발급 및 변경] ①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외국회원은 재발급 수령 시까지 종전 신분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재발급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이 아닌 규칙 시행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외국회원이 영구제명 · 제명 · 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반납신분증의 폐기]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하며 폐기 조치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전면>

외국법자문사신분증
사진 ①
홍 길 동 ②
대한변호사협회 ③

<후면>

④

외국법자문사
등록번호 제 호 ⑤
발급번호 제 호 ⑥
원자격국
성 명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외국회원)
임을 증명함.

20 . . .

대한변호사협회장 ㊞

⑦

〈주〉 1. 신분증의 크기는 전체 가로 5.5cm, 전체 세로 8.5cm로 하고,
위 ①, ②, 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5cm × 4cm)
② 성명의 표시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표시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계인
⑤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등록번호 (번호기를 사용)
⑥ 대한변호사협회의 발급번호 (번호기를 사용)
⑦ 외곽선으로부터 2mm의 여백을 둔다.
2. 외국법자문사신분증은 투명 P.V.C로 포장한다.
3. 외국법자문사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를 사용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외국법자문사신분증을 패용할 때는 왼쪽 가슴에 단다.

별지 제1호 서식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다음과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분증번호 :
5. 재발급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사 진 (2매첨부)

20 년 월 일

원인 (인)

(주민등록번호 -)

신분증 발급권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귀하

결 재	담 당	과 장	부국장	국 장

별지 제2호 서식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폐기대장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폐기대장

연번	직 위	성 명	발급 번호	발행 일자	소 각 일 자	결 재		비 고
						담 당	과 장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2009. 11. 23.
규정 제86호

개정 2010. 1. 25.

제1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외국법자문사 2인, 변호사 2인,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 및 외국법자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고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인 예비위원은 판사인 위원이, 검사인 예비위원은 검사인 위원이, 변호사인 예비위원은 변호사인 위원이, 법과대학 교수인 예비위원은 법과대학 교수인 위원이, 외국법자문사인 예비위원은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조사위원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5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 · 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 및 징계개시청구

제9조 [징계의 종류 및 사유] 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②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전항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항 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한 경우
2. 이 회가 정하는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징계개시의 청구]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전조 제 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전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1조 [의뢰인 등의 징계개시청구의 신청]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이하 “의뢰인 등”이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전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협회장의 결정]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 협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1조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13조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개시청구 절차] ① 징계개시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본 10통 및 의뢰인 등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청구 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개시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외국법자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5조 [징계개시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가 있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의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결정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제17조 [심의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개시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 · 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제18조 [심의기일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 ·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기일의 비공개] ① 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0조 [사건의 병합 · 분리]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정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 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단, 그 일시 및 장소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심의기일조서 등]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 ·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 [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 1. 25.)

제28조 [비밀엄수] 위원장 · 위원 · 예비위원 · 간사 · 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30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징계혐의자의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및 특별변호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주문
4. 이유
5. 의결 연월일

② 징계결정서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 [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개시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32조 [이의신청]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3조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35조 [징계의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는 징계혐의자의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등록취소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보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공고 및 공표]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징계에 관한 처분 또는 징계결정서의 주문 및 이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38조 [공고방법 등의 지정]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방법 및 공고주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고주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월을 도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39조 [정보제공의 신청] 사건의뢰, 상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외국법자문사를 특정하여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신청방법]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때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신청의 처리] 협회는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내용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부과 또는 견책인 경우
2. 제44조의 정보제공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인 경우 (개정 2010. 1. 25.)

제42조 [제공방법] 정보제공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협회에서 직접수령, 우편발송,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한다.

제43조 [유의사항] ① 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정보제공 기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취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년
3. 과태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제45조 [자기 정보 열람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46조 [비용 등 부담]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09. 11. 23.
규정 제8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정의]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외국법자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법자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 · 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 · 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제3조 [광고의 기본원칙]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구성원 포함) 및 그 업무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하거나 다른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외국법자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관계에 있는 의뢰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5조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 · 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협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행위를 함에 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방법으로서 별도의 세부기준이 정하는 광고

⑦ 외국법자문사가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제6조 [사전 광고] 외국법자문사는 협회에서 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미리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외국법자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 '주로 취급하는 분야' ,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②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광고는 다음 업무 또는 분야를 포함하되, 달리 적절히 표시할 수 있다. 헌법재판, 민사,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형사, 상사, 회사, 해상, 보험, 행정, 조세, 공정거래, 노동, 지적재산권, 스포츠, 연예, 오락, 증권, 금융, 국제거래, 무역, 조선, 건설, 중재 등

③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외국어 포함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단, "전문"이라는 용어는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법률상담] ① 외국법자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외국법자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국법자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제9조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외국법자문사가 간판의 설치 기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속에 원자격국 허용된 업무 범위,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외국법자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외국법자문사가 부담한다.

제13조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외국법자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회장이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또는 협회 사무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외국법자문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법자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광고가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의심이 있어 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경우 광고를 한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위원장을 대행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광고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변호사업무광고기준을 따른다.

제18조 [질의회신] ① 외국법자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2013. 9. 9.
규칙 제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고 한다),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4조의2 내지 5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게 적용한다.

제3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의 작성] 이 회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설립인가 연월일
4.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한 내용
6.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번호 및 연월일
7.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취소 연월일 및 사유
8. 제7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9.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

제4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의 작성]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다만, 명부 보충용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의 보관·보존] ①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③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이 규정에 따라 발부한 등록증명서 및 각종 통지서, 회지게재사항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공동사건처리등 등록

제7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신청] ①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설립인가 연월일
4.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한 내용

②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서약서

③ 공동사건처리등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시행세칙에 따른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료의 납부]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회가 정한 등록료를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료는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 ① 이 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의 구분]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는 다음의 2종으로 나눈다.

1. 명령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2. 직권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제12조 [명령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이 회는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직권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① 이 회는 제2항의 신고를 받거나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 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절차] ① 이 회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그 사유와 취소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명부 보충용지를 폐쇄한다.

② 이 회가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증명서를 이 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4조 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면의 비치, 열람 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등록사항이 적힌 서면
2. 등록취소에 관한 서면

제17조 [신고]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회에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취지를 신고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고] 이 회가 제17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제19조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등] ① 제7조의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계약체결일 및 사안별 요지
3. 실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한 상대방 측 변호사의 성명 및 사안별 수임액
4. 수익을 분배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 회가 법 제32조 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 · 재산의 현황, 수임 · 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는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자료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처리수수료의 납부] ①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이 회가 정한 신고처리수수료를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회계규칙

1983. 5. 21.
규칙 제14호

개정 1990. 2. 24.
1998. 6. 8.
2000. 7. 4.
2011. 2.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 · 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회의 예산 · 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하여는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계원칙] ① 이 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에 따라 예산서, 회계장부 및 계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재정집행과 회계처리는 진실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3. 회계장부는 예산단위의 총액이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단식부기,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즉시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8.)
4. 계산서류는 회계장부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매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고,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회계구분] ① 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특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둘 수 있다. (개정 1998. 6. 8.)

제6조 [기록의 보존] ① 이 규칙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회계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서류 30년
2. 회계장부 10년

3. 기타 회계기록 5년

제7조 [시행세칙] 예산관리, 회계관리 기타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계정과목과 장표조직

제8조 [계정과목] ① 이 회의 모든 회계거래는 다음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 대차대조표계정과목
2. 수지계산서계정과목

② 각 계정과목의 명칭, 배열, 내용 및 계정과목의 세분과 특별회계의 계정과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8. 6. 8.)

제9조 [회계장부] ① 이 회에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회계연도마다 갱신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기타 보조부

② 회계장부의 구체적 종류, 양식 및 기재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전표] ① 이 회는 모든 회계거래 시마다 다음 구분에 따라 회계전표로 나누고 연속번호의 순서에 따라 매월마다 이를 합철한다. (개정 1998. 6. 8.)

1. 입금전표
2. 출금전표
3. 대체전표

② 회계전표는 그 회계거래가 정당하고 계산이 정확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각 전표철과 대응하게 나누어 전표순에 따라 1개월마다 전표철과는 별도로 철하고 각각 합철한다. (신설 1998. 6. 8.)

④ 회계전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예 산

제11조 [예산의 목적] 예산은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명확한 계수로써 표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예상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수지의 합리적 규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예산기간] ① 예산기간은 제4조에 정한 회계연도와 같게 하되, 필요하면 이를 다시 3개월씩

세분하여 4분기로 나눌 수 있다.

② 계속사업의 집행 기타 장기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기간을 장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각 회계연도마다 예산액은 세분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편성] ① 예산은 사업계획에 맞추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되, 모든 세입과 세출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재무이사는 매 회계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총무이사 및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에 맞추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계획과 함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년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집행] ① 예산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엄밀히 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수시 파악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무이사는 매 분기마다 예산의 집행실적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예산집행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전용] 예산에 정하여진 금액은 원칙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관간을 유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4.)

제16조 [예비비의 사용]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액의 1할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잠정예산]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수입과 지출은 후에 성립되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추가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결 산

제19조 [결산의 목적] 결산은 일정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수지를 계산하고 당해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결산의 종류] ① 결산은 기말결산과 연말결산으로 나눈다.

② 재무이사는 매 분기 말마다 회계기록을 정리하고 수지계산을 마감하여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이사는 매 년도 말마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안을 사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사무보고와 함께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년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결산안을 총회에 부의함에 있어 사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결산서류] ① 매 기말 결산 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지계산서
2. 예산집행실적표

② 매 연말 결산 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수지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각종 결산서류의 종류, 양식 및 기재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잉여금의 이입]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중 50% 이상을 다음 연도의 회관건축기금특별회계예산에 이입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제 5 장 금전회계

제23조 [금전] ① 이 규칙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을 말하며, 현금은 통화외 보관 중인 수표 및 우편환을 말한다.

② 기한이 도래된 유가증권과 어음은 금전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제24조 [출납] ① 금전의 출납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자가 행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재무이사로 하고, 회계담당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0. 7. 4.)

③ 모든 금전출납은 회계전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5조 [영수증의 발행] ① 이 회가 외부로부터 금전을 수납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영수증은 회계담당자가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제26조 [예입] ① 수납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책임자가 그 날 중에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책임자는 예측할 수 없는 현금의 지출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재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은행과의 예금거래는 이 회 명의로 하고, 그 거래인감은 재무이사인으로 한다. (개정 2000. 7. 4.)

③ 예금거래통장과 거래인감은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신설 2000. 7. 4.)

제27조 [현금대조] 회계책임자는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에 금전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금전의 차입] ① 회 운영상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입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차입은 재무이사가 협회장에게 품의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차입금은 늦어도 당해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 [금전의 지출] ① 금전의 지출은 최종 수령인으로부터 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받고 행하여야 한다.

② 금전을 지출한 때에는 반드시 최종 수령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① 유가증권을 취득, 대여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고 취득가액으로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시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 [금전의 대여] 금전의 대여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시적 가지급금으로서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고정자산회계

제32조 [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관하여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또는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

제33조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구입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환자산은 교환시 제공한 물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수증자산은 수증시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 [고정자산의 구입] 고정자산의 구입은 회계책임자가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구입한다. 다만,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구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 [고정자산의 관리] 고정자산의 재고조사, 개량, 보수, 매각, 처분, 이관 및 감가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물품회계

제36조 [물품의 범위] 물품이라 함은 소모성물품과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100,000원 미만인 기구, 작품 또는 비품을 말한다.

제37조 [물품의 구입] 물품의 구입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물품의 관리] 물품의 재고조사, 개량, 보수, 수선, 처분, 이관 및 폐기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회계감사

제39조 [감사의 종류] ①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 분기마다 감사가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재무이사가 실시한다.

제40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와 목적을 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회계전표,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출과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무이사는 수시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회계기록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제41조 [감사보고] ① 감사는 회계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재무이사는 수시감사의 결과,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계정과목표

1. 대차대조표계정

(1) 자산계정

관	항	적 요
유동자산	현 금	시재현금
	예 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금전신탁
	유 가 증 권	국채, 지방채, 주식, 회사채
	보 증 금	임차보증금, 기타 보증금
	미 수 금	미수회비, 분담금, 기타 미수금
	가 지 급 금	일시대여금, 선급금, 기타 가지급금
고정자산	토 지	소유토지
	건 물	소유건물
	구 축 물	부속시설
	차 량 운 반 구	승용차, 트럭
	집 기 · 비 품	서류보관함, 책상, 의자, 타자기, 복사기, 도서
	무 형 자 산	전화가입권, 기타 무형고정자산

(2) 부채·자본계정

관	항	적 요
부 채	차 입 금	대외단기차입금
	미 지 급 금	외상매입금, 미지급임료, 기타 미지급금
	가 수 금	선수금, 대내차입금, 기타 가수금
	예 수 금	계약금, 보증금, 기타 예수금
	장 기 차 입 금	대외장기차입금
	퇴 직 금 충 당 금	직원퇴직금충당금
자 본	기 금	기금전입금(예, 법률문화상기금, 기타)
	잉 여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2. 수지계산서계정

(1) 수지계정

관	항	목	적 요
회비수입	분담금	분담금	지방회분담금
	등록금	자격등록금	변호사자격등록금
	소속변경	소속변경등록금	변호사소속변경등록금
	합동사무소	신규설치	법무법인등
기타수입	기금수입	예금이자	예금이자
	광고료	신문광고료	변협신문광고료
		회지광고료	인권과정의광고료
	잡수입	위임장대	위임장대
		배지대	배지대
		회지대	인권과정의구독료
		기타수입	변호사자격등록 증명원발급수수료

(2) 지출계정

관	항	목	적 요
사업비	회의비	총회비	총회비
		이사회비	이사회비
		위원회비	각종위원회비
	사업비	행사비	행사비
		연구사업비	각종연구사업비
		조사감찰비	조사감찰비
		인권사업비	인권사업비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
		홍보사업비	홍보사업비
		국제사업비	국제사업비
		포상비	포상비
		기타사업비	기타사업비
	임원수당	임원수당	임원수당
		감사수당	감사수당
		사무차장수당	사무차장수당
	섭외비	판공비	임원판공비
		찬조금	각종후원 및 지원비
		경조비	경조사비
	부담금	I.B.A.	I.B.A 지원금
		LAWASIA	LAWASIA 지원금

관	항	목	적 요
사 업 비	회 지	제 작 비	회지제작비
	간 행 비	원 고 료	회지원고료
		운 영 비	회지편집위원회비
	신 문	제 작 비	신문제작비
	간 행 비	원 고 료	신문원고료
		운 영 비	신문편집위원회비
	잡 비	잡 비	잡비등
관 리 비	급 여	본 봉	본봉
		상 여 금	상여금
		직 책 수 당	직책수당
		가 족 수 당	가족수당
		휴 일 근 무 수 당	휴일근무수당
		시 간 외 수 당	시간외수당
		연 차 수 당	연차수당
		장 기 근 속 수 당	장기근속수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 리 후 생	의 료 보 험	의료보험비
		국 민 연 금	국민연금
		고 용 보 험	고용보험
		산 재 보 험	산재보험
		중 식 비	직원중식비
		연 수 비	직원연수비
	사 무 비	비 품 비	집기 및 비품비
		관 리 비	관리비
		영 선 비	컴퓨터 및 집기수리비
		소 모 품 비	각종소모품, 탕비실등
		도 서 비	도서구입비
		교 통 통 신 비	우편료, 교통비등
		사 무 자 동 화 비	홈페이지 및 자동화비
	잡 비	잡 비	잡비등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연 수 교 육	연수교육기금
		한국법률문화상기금	한국법률문화상기금
		법률구조재단기금	법률구조재단기금
		퇴 직 적 립 기 금	퇴직적립기금
		회 관 건 축 기 금	회관건축기금

회계처리규정

1998. 5. 25.
규정 제51호

개정 2000. 6. 26.
2013. 2.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사업계획규칙, 예산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조 [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 · 특별회계 :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
2. 전도금 현금출납부

② 제1항이 정한 회계장부는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출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회계장부기재사항] ① 회계장부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일반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회계장부에는 매월 말의 그 합계와 누계를 기재한다.

③ 계정과목의 설정 및 그 개폐는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4조 [전표양식] 입금전표는 별지 제1호 서식, 출금전표는 별지 제2호 서식, 대체 전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작성한다.

제5조 [전표와 기장]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②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복선을 긋고 글자의 오기는 그 부분을, 숫자의 오기는 그 전부를 정정하고 정정한 부분에 정정자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전표는 매일 연속번호를 붙여 이를 집계하고 소정의 전표집계표를 첨부하여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은 후 전표의 오기,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 전표를 작성하고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신구전표에 그 정정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기재하고,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입에는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영수증 원부와 부합되는 입금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⑦ 수입과 지출은 현금출납부와 원장에 항목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제6조 [전표의 편철]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나누고 연속번호의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이를 합철한다.

② 증빙서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각 전표철과 대응하게 나누어 전표순에 따라 1개월마다 전표철과는 별도로 철하고 각각 합철한다.

제 3 장 금전회계

제7조 [현금의 관리] ① 현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거래통장과 인감은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개정 2000. 6. 26.)

② 은행 마감시간 후 수입된 현금은 총무과장이 책임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③ 장기예금(1개월 이상)은 확정이율의 조건으로 은행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에 예치하고, 회계현황표에 명시한다. (개정 2000. 6. 26.)

제8조 [영수증] ① 수입이 있는 때에는 영수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발행하고, 1통은 원부로 남긴다.

② 영수증과 원부에는 담당출납직원이 날인하고 총무과장은 매일 미사용 잔여매수를 확인한다.

③ 영수증원부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100장 단위로 철하고 철마다 번호를 붙여 총무과장이 관리한다.

④ 총무과장은 영수증원부수급대장을 비치하여 그 수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지출신청] ① 사업비신청 및 각종인쇄,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예산신청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모품 신청(문구류,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등) : 별지 제5호 서식
2. 도서구입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 [일상경비의 범위] 일상경비의 지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상적, 정기적인 지출
2. 교통 · 통신비로 지급하는 경비
3. 직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4. 섭외비
5. 기타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1조 [금전의 지출] ① 각종인쇄, 용역공사 등을 발주한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즉시 용역공사 등을 확인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즉시 무통장입금방식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액(10

만 원 이하)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전을 지출한 때에는 반드시 최종 영수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대에는 지급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현금대조 등] 재무이사는 수시로 그 현금잔고와 장부잔고를 대조하고 과부족이 있는 때 또는 금전출납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26.)

제 4 장 고정자산회계

제13조 [고정자산의 관리] ① 고정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의하여 구입한 자산은 매년 고정자산 구입현황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다만, 금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상임이사회의, 2천만 원 이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자산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해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물품회계

제15조 [물품의 관리]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의 처분] ① 물품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처분한 때에는 물품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물품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해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 및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입금전표

일 자 : 년 월 일

결재	담당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협 회 장

코드번호 / 계정과목	지 출	수 입	거 래 선		No.

대한변호사협회

별지 제2호 서식

출금전표

일 자 : 년 월 일

결재	담당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협 회 장

코드번호 / 계정과목	지 출	수 입	거 래 선		No.

대한변호사협회

별지 제3호 서식

대체전표

일 자 : 년 월 일

결재	담당	총무과장	사무국장	사무총장	재무이사	협 회 장

코드번호 / 계정과목	지 출	수 입	거 래 선		No.

대한변호사협회

별지 제4호 서식

예산지출신청서

용 도	
금 액	
집행부서	
지출내용	
지출예정일	
예산항목	
비 고	※ 지출근거서류 첨부(견적서, 회의록, 영수증 등)

위와같이 예산지출을 신청합니다.

20 . . .

담 당 과 장 (인)

사무국장	사무총장	담당이사	재무이사	협 회 장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소모품신청서

구분 / No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2					
3					
4					
5					
합 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도서구입신청서

구분 / No	도 서 명	수 량	가 격	용 도	비고
1					
2					
3					
4					
합 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자산(물품)대장

순번	품명	규 격 (모델명)	수량	단가	금 액	구 입 년월일	사용처	폐기일	폐기 사유	확인인	비고

분담금납부규칙

1983. 5. 21.
규칙 제13호

개정 1984. 2. 25.
1990. 2. 24.
2000. 7. 4.
2005. 2.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및 회칙 제9조제2항에 정한 분담금, 특별분담금 및 특별회비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4.)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회칙 제7조에 정한 모든 회원에 준용한다.

제3조 [분담금] ① 지방변호사회는 매월 1일 현재의 소속 회원 수에 당해연도 정기총회가 정한 분담금 월정액을 곱한 금액 및 특별분담금을 매월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2. 24.)

② 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분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1.)

제4조 [분담금의 고지] 협회장은 매월 20일까지 각 지방변호사회에 분담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 [분담금의 납부] 지방변호사회는 매월 말일까지 제4조에 의하여 고지된 분담금을 어김없이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산금] 지방변호사회가 제5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제7조 [특별회비] ① 협회장은 회지의 발간, 법률구조사업, 변호사연수, 국제회의의 개최 또는 참가,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에게 회칙 제9조제2항에 의한 특별회비를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별회비의 정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그 때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③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별회비의 납부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1983. 5. 21.)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5.)

이 규칙은 198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전결규정

1989. 6. 26.
규정 제30호

개정 2007. 7.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7조제2항 및 회규관리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본 협회 사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 협회장 전결사항] 협회장은 부협회장으로 하여금 협회사무의 일부를 그 범위를 특정하여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총무이사 위임전결사항] 총무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사항에 관한 사무
2. 관계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정방침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문서
4. 각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5. 기타 일반 잡서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재무이사 위임전결사항] 재무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에 의한 세입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따른 정기적 지출에 관한 사항
3. 금 200만 원 이하의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7. 16.)

제5조 [기타 상임이사 전결사항] 협회장은 임원인사규칙 제11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상임이사로 하여금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그 범위를 특정하여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예외]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 정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 중 전결권자가 중요 회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처리 후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9. 6. 26.)

이 규정은 198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비규정

1984. 2. 13.
규정 제7호

개정 1991. 2. 11.
2000. 6. 26.
2002. 11. 11.
2004. 2.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여비, 일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여비는 신분에 상응하는 실비 또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친지로부터 접대를 받은 경우 등)을 지불한다.

제3조 [일당] ① 임원이 서울지역(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 포함) 외에 출장하는 경우 별표와 같은 일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출장하는 경우 급여규정 제14조에 따라 휴일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 2. 9.)

제4조 [여비 및 일당의 지급] 여비 및 일당은 별표와 같은 청구서에 의하여 이를 출장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지급된 여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1. 2. 11.)

이 규정은 1991. 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 표

【 개정 1991. 2. 11., 2000. 6. 26., 개정신설 2002. 11. 11., 개정 2004. 2. 9. 】

일당지급기준표

직 급	일 당
임 원	60,000원
사 무 총 장	60,000원
사 무 차 장	50,000원

별 표

출장비청구서

1. 출 장 지	
2. 출 장 목 적	
3. 출 장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박 일)

4. 출장비총액 : 원

1) 교통비합계 원
항 공 료 원
기 차 료 원
택 시 료 원
기 타(휘발유값 등) 원
2) 객 실 료 : 1일 원× 일= 원
3) 식 사 료 : 1식 원× 식= 원
4) 잡 비(음료수대 등) : 원
5) 일 당 : 1일 원× 일 = 원

위 금액을 출장비로서 청구합니다.

20 . .

출 장 자 ㊞

위 금액을 출장비로서 정히 영수함.

20 . .

㊞

임원등해외여비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협회의 공무로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지급할 항공료, 숙박료 및 체재비의 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협회장의 체재비는 아래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200달러(US달러 이하 동일) 내지 3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출장의 성격
2. 출장지의 물가
3. 숙박료에 조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그 외 임원의 체재비는 위항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50달러 내지 250달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직원의 체재비는 위 1항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00달러 내지 2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조 ① 협회장의 항공료는 출장지까지의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지급한다.

② 그 외 임원의 항공료는 출장지까지의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지급한다.

③ 직원의 항공료는 3등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 ① 협회장의 숙박비는 특급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그 외 임원의 숙박비는 출장지의 사정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직원의 숙박비는 1급 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2000. 6. 27.부터 시행한다.

변호사포상규칙

1986. 6. 22.
규칙 제24호

개정 1990. 2. 24. 1992. 7. 31.
1993. 2. 27. 1995. 2. 25.
2000. 7. 4. 2010. 12. 20.
2011. 12.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 등의 포상 및 상훈법에 의한 서훈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50년상
2. 공로상
3. 청년변호사상 (신설 2011. 12. 12.)
4. 표창 (제3호에서 이동 2011. 12. 12.)
5. 감사포상 (제4호에서 이동 2011. 12. 12.)

② 시상은 협회장의 이름으로 상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과 상품을 수여 또는 추서한다.

③ 변호사50년상의 상장문은 〈별표 1〉과 같다.

④ 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호사50년상 : 56.25그램의 순금메달로서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2.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 18.75그램의 순금메달로서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2. 12.)
3. 표창 · 감사포상 :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제3조 [변호사50년상] 변호사50년상은 변호사로서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회 · 지방변호사회 발전 또는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영예로운 변호사에게 수여 또는 추서한다.

제4조 [공로상] 공로상은 회원(준회원 및 폐업한 전 회원 포함)으로서 협회 · 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 수여 또는 추서한다.

제5조 [청년변호사포상] 청년변호사상은 인권, 공익활동, 학술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인권옹호' 와 '사회정의실현' 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률제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청년변호사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판사 · 검사 ·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을 제외하되, 경력기간은 실무경력에 산입한다)]에게 수여한다. (신설 2011. 12. 12.)

제6조 [표창 및 감사포상] 표창 및 감사포상은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회무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7조 [직원포상]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직원 · 전 직원으로서 다년간 근속하고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를 위하여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표창 · 감사포상)을 수여 또는 추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8조 [기간산정] 제3조에 규정한 변호사 종사기간은 본 협회의 변호사명부에 기재된 변호사 개업연수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9조 [제외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변호사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4.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변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8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10조 [절차] ① 협회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회원위원회의 자문과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11조 [시기] 포상은 정기총회 또는 변호사대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12조 [서훈대상자추천] 협회는 정부로부터 상훈법에 의한 서훈대상자 추천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그 추천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1. 12. 12.)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2. 8. 1.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의 포상은 이 규칙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③ 추서는 이 규칙 시행 후에 사망한 자에 한한다.

부 칙 (1993. 2. 27.)

이 규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법조50년상을 수상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7. 4.)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호사50년상 상장문

변호사50년상

변호사 ○ ○ ○

위 사람은 50년 이상 변호사로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회 발전 및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영예로운 변호사이므로 변호사포상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 □ □

별표 2 변호사50년상 상품(순금메달) 제식

별표 3 공로상 상품(순금메달) 제식

경조규정

1985. 12. 27.
규정 제12호

개정 2004. 2. 9.
2007. 2.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경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경조의 대상은 협회의 현 임원, 총회 구성원, 전임 협회장, 개업변호사경력이 통산 10년 이상인 회원 각 본인 및 그 배우자 · 직계존속 · 비속과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조 당시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협회장이 경조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4. 2. 9.)

제3조 [사유] 경조는 전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행한다.

1. 결혼 · 회갑
2. 부상과 질병 · 사망
3. 기타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조 [방법] 경조방법은 그 사유에 상당한 금품의 급여 · 화환 증정 · 방문 또는 전문 등에 의한 상당한 문언의 표시방법 중의 한 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을 병행할 수 있다. 위 경조사유에 상당한 금품의 액수와 화환의 품위는 매년도 초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 [대한변협장] 협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회원이 사망한 때에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장례를 대한변협규정에 따른 장례(이하 "대한변협장"이라 한다)로 거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5.)

제6조 [장례위원회 설치] 대한변협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 2. 5.)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직무] 장례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장례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장례 절차에 관한 유족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례에 관한 필요 사항 (개정 2007. 2. 5.)

제8조 [직원의 경조방법] 직원의 경조방법은 제4조의 제한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7. 2. 5.)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관행에 따라 이미 시행한 경조행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2. 5.)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세제위원회규정

1989. 2. 13.
규정 제26호

개정 1992. 2. 17.
2001. 7. 9.
2003.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세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변호사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에 대한 세무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회원에 대한 세무대책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 7. 9.)

④ 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추가 지명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전 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위원회의 의사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비밀회의로 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 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2. 17.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전의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1. 7. 9.)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2011. 2. 14. 규정제목개정)

2006. 7. 14.
규정 제68호

개정 2011. 2. 14.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추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한변협종합회관이란 협회 사무국 및 각종 회의실, 연수원, 그리고 대한변협 인권재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로스쿨평가위원회, 법조윤리협의회 등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있는 업무수행에 사용될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11. 2. 14.)

(전문개정 2011. 2. 1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기금의 조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 14.)
2. 대한변협종합회관부지 확보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 14.)
3. 대한변협종합회관건축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2. 1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각 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기와 같이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 7. 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무국직제규칙

1983. 5. 21.
규칙 제6호

개정 1995. 2. 5. 1997. 2. 22.
1998. 6. 8. 2000. 7. 4.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8. 2. 18.
2010. 12. 20. 2011. 12. 12.
2013. 2. 25. 2014. 2. 24.
2014.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5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약간인,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부국장, 촉탁변호사, 촉탁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과를 두되, 필요한 경우 수개의 과를 분장하는 국을 둘 수 있고 1개의 과 안에 수개의 팀을 구분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12.)

1. 총무과
2. 법제과 (개정 2003. 10. 27.)
3. 회원과 (개정 2011. 12. 12.)
4. 홍보과 (개정 2011. 12. 12.)
5. 윤리과 (개정 2014. 10. 13.)
6. 인권과 (개정 2011. 12. 12.)
7. 사업과 (개정 2014. 2. 24.)
8. 국제과 (신설 2008. 2. 18.)
9. 연수과 (신설 2011. 12. 12.)
10. 재무과 (신설 2013. 2. 25.)
11. 기획과 (개정 2014. 2. 24.)

② 국 신설, 국별 과 분장, 과내 팀 구분 및 이에 따른 기타 각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1. 12. 12.)

제3조 [정원] ① 사무국의 직제 및 사무국장급 이하 전체 직원의 정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2. 12.)

② 직원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채용하되 전체 정원 한도의 15%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을 요건으로 한 경력채용 방식으로 채용한다. (신설 2011. 12. 12.)

③ 경력채용의 대상이 되는 직급은 대리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직급 및 호봉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단, 사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직급,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2.)

제4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0.)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④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차장] 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상임이사회가 정한 순위로 변호사인 사무차장,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11. 25.)

② 사무차장은 수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2. 20.)

③ 사무차장은 전임 또는 촉탁직으로 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12. 20.)

제5조의2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일반직인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1. 12. 12.)

② 사무국장은 1급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2. 11. 25.)

제5조의3 [사무부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부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부국장은 2급으로 한다.

③ 사무부국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1. 12. 12.)

제6조 [과장] ① 각 과에 과장 1인을 둔다.

② 과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3급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협회장은 4급 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2.)

③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총무과] 총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기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 2. 25.)
6. 〈삭제〉 (2011. 2. 25.)
7. 물품의 구입, 조달, 출납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각종 회의의 소집 및 개최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 2 [재무과] 재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제8조 [법제과] 법제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각종 법제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제도 및 변호사사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제정책 수립
4. 각종 입법안 수립
5. 각종 상황탐지 및 대책수립 (개정 2003. 10. 27.)
6. 변호사직역 및 유사직역에 대한 연구 및 대책수립 (개정 2014. 2. 24.)

제9조 [회원과] 회원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3. 10. 27.)

1.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신고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13.)
2. 〈삭제〉 (1995. 2. 25.)
3. 〈삭제〉 (2011. 12. 12.)
4. 회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1. 12. 12.)
6. 변호사사무직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제10조 [홍보과] 홍보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회지 · 신문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7. 4.)
2. 법률지식의 보급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3.~4. 〈삭제〉 (2008. 2. 18.)

제11조 [윤리과] 윤리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0. 13.)

1.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징계청구사건의 징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된 사항

제12조 [인권과] 인권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정부기구 및 인권단체활동 모니터링
3.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03. 10. 27.)

제13조 [사업과] 사업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2. 24.)

1. 국선변호, 당직변호,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14. 2. 24.)
2. 법정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2014. 2. 24.)
3. 회원들의 의견 수렴 (개정 2014. 2. 24.)

제13조의2 [기획과] 기획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관계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4.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본조신설 2014. 2. 24.)

제14조 [국제과] 국제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8. 2. 18.)

1.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업무
2. 법률문화의 국제적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해외파견, 외국법률가의 초청 기타 섭외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 [연수과] 연수과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1. 12. 12.)

1. 변호사의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 수습에 관한 사항

제15 조 [특례와 지시] ① 협회장은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사무국 직원에게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하거나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겸무하여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각 과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제1항에 준하는 사무처리 또는 겸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직접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세칙] 사무국의 사무집행, 문서관리 기타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조사과의 업무는 조사과가 신설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직급 중 참사는 과장으로, 주사는 주임으로 서기는 직원(4급)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25.)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기획과 업무는 기획과가 신설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2015년 정기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2014. 2. 24. 개정)

직급 구분			**정원 한도** (총 11개과)
사무국장		1급	1
사무부국장		2급	3
과 장		3급	12
대 리		4급	15
주 임		5급	17
직원	일반직	6급	25
	계약직	7급	
합 계			73인 이내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1997. 2. 22.
규칙 제26호

개정 2010. 12.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무총장 및 변호사인 사무차장(이하 "사무총장 등" 이라 한다)의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사무총장 등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칙(규칙 제8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복무] ①~② 삭 제 (2010. 12. 20.)

제4조 [보수 등] 사무총장 등의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원인사규칙

1983. 5. 21.
규칙 제8호

개정 1984. 2. 25. 1986. 2. 22.
1997. 2. 22. 2000. 7. 4.
2002. 2. 25. 2005. 2. 21.
2006. 2.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의 채용, 복무, 급여, 신분, 상벌 기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무총장, 변호사인 사무차장, 촉탁 및 계약직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7. 4.)

제3조 [직종] 직원의 직종은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4조 [촉탁 및 계약직원] 협회장은 회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촉탁 및 계약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 7. 4.)

제2장 채 용

제5조 [채용원칙]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7. 10. 27.)
② 〈삭제〉 (1997. 10. 27.)

제6조 [채용방법] 채용방법은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의한다. (개정 1997. 10. 27.)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4.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6. 2. 20.)
8.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자

제8조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병역증명서
4. 학력 및 자격증명서
5. 〈삭제〉 (2000. 7. 4.)
6. 신원보증서
7. 사진

제9조 [임명권자] 직원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촉탁 및 계약직원의 채용] 촉탁 및 계약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7. 4.)

제10조의2 [촉탁 및 계약직원의 일반직 직원으로의 계약 변경]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촉탁 및 계약직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그 채용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촉탁 및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 7. 4.)

제11조 [승진]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경력평점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제 3 장 복 무

제12조 [성실의무] 직원은 법령 및 회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직무개발] ① 직원의 성실한 회무수행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원직무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1.)

② 직원직무개발비의 기준과 범위는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 [비밀준수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영리업무·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협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 [정치운동금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16조 [품위유지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복무기간] 직원의 근무시간, 휴직시간, 출근 및 결근, 휴일, 휴가, 기타 복무기준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급 여

제18조 [급여의 종류] ①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2. 2. 25.)

1. 본봉 (개정 1997. 10. 27.)
2. 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② 총액임금제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2. 25.)

제19조 [본봉] 직원의 본봉은 직급과 호봉별로 정한다. (개정 1997. 10. 27.)

제20조 [수당] ① 수당은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제수당의 지급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0. 27.)

③ 〈삭제〉 (1997. 10. 27.)

제21조 [상여금]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연간 기본급 월액의 4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여비] 직원이 근무상 출장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 [퇴직금]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4조 [급여지급일] ① 본봉 및 수당은 월액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달의 20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7. 10. 27.)

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급여계산] ① 신규채용, 승진, 감봉 및 면직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7일 이상을 근무한 때에는 그 달의 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7. 4.)

③ 촉탁 및 계약직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00. 7. 4.)

제26조 [휴직기간 중의 급여] ①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본봉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27.)

② 제29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휴직된 때에는 그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퇴직금기금] ① 직원의 퇴직금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금적립금을 둔다.

② 퇴직금적립기금에는 매년 직원에 대한 급여액의 12분의 1 이상의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 5 장 신 분

제28조 [면직] ① 협회장은 직원이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멸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 [휴직] ①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병으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3.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4.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②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1조제3호의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30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협회장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위해제]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일시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 대상이 되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자
3.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32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1997. 10. 27.)
2. 과장 이상은 만 60세 (개정 1997. 10. 27.)
3. 기타 직원은 만 55세 (개정 1986. 2. 22.)

제 6 장 상 벌

제33조 [포상] 협회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에 모범이 되고, 이 회에 대하여 공로가 있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사유]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1.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35조 [종류] ① 징계는 면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중 급여의 10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00. 7. 4.)

③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36조 [시효]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한다.

제37조 [징계의 절차와 집행] 징계의 절차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2. 25.)

이 규칙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22.)

이 규칙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27.)

이 규칙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재직하는 계약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2. 18.)

이 규칙은 2002. 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원인사규정

1991. 12. 23.
규정 제39호

개정 1997. 12. 15. 2000. 6. 26.
2002. 2. 4. 2002. 11. 11.
2006. 2. 13. 2011. 2. 14.
2011. 12. 12.

제 1 장 총 칙 (2011. 2. 14. 장 제목 신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칙에 정한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4.)

제2조 [채용원칙] ① 직원은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 11. 11.)

② 직원의 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근무연수, 학력, 경력 기타 능력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4.)

③ 직원의 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4.)

④ 직원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제목개정 2011. 2. 14.)

제3조 [직원인사위원회] ① 일반직원과 촉탁 · 직원 등의 채용, 계약 갱신, 연장 및 촉탁 · 계약직원의 일반직원으로의 계약변경, 근무평정, 승진 심사 등 직원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인사위원회는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총장, 사무차장 1인,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을 2인까지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원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1. 2. 14.)

제 2 장 임용 · 승진 등 (2011. 2. 14. 장 제목 신설)

제4조 [채용 방법 및 절차] ① 총무과장은 채용 공고 방법, 공고문의 내용, 채용 일정 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관한 채용 시 구비서류와 계약 조건 등이 기재된 채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서류 전형 및 면접 진행 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한 위원들이 서류전형심사표와 면접심사표에 각 점수, 등급 또는 가부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시한다.
(신설 2011. 2. 14.)

제5조 [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 11. 28.)

1. 사무국장은 2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개정 2002. 11. 11.)
2. 사무부국장은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개정 2011. 11. 28.)
3. 과장은 4급 직원으로서 4년 이상 근속한 자 (개정 2011. 11. 28.)
4. 대리는 5급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개정 2011. 11. 28.)
5. 주임은 6급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신설 2011. 11. 28.)

② 징계처분 · 직위해제 · 휴직기간은 전항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상의 징집, 소집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무로 인한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③ 협회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본 협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6조 [전보] 본 협회의 업무효율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능력,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7조 [직무대행] 3급 이상의 직위자가 공석일 때에는 협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2.)

제8조 [대기발령] ① 직제의 개폐, 징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② 대기발령의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9조 [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10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직원인사규칙 제32조에 따르며, 직원의 정년퇴직기간은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월말로 한다. (신설 2011. 2. 14.)

제11조 [연임] 사무국직제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사무국장의 연임 여부는 임기 만료 1주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1. 2. 14.)

제12조 [근무기강확립] 직원은 법령 · 회칙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 3 장 근무평정 등 (2011. 2. 14. 장 제목 신설)

제13조 [근무평정 등] 직원의 근무평정 및 승진심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협회장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11. 2. 14.)

제14조 [평정시기]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매년 6월 말 및 12월 말을 기준하여 7월 및 1월에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단 정년퇴직 6개월 이전 또는 퇴직예정인 직원에 대해서는 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2. 14.)

제15조 [승진후보자명부] ① 승진후보자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제5조의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각 평정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6월 말 및 12월 말을 기준으로 〈별표 4〉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감점사유가 생긴 경우 또는 기타 근무성적평점 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분기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14.)

제16조 [평정의 방법 및 종류] ① 평정의 종류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직원교육 참여로 평하되 근무성적평정은 70점, 경력평정은 20점, 직원교육 등은 10점으로 하여 이를 만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사무국장은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7월 및 1월의 각 첫째 주 종료 전까지 모든 사무국 직원의 인사기록부를 첨부하여 근무평정표 〈별표 3〉를 직원인사위원회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각 직원의 최종 근무평정 점수는 전항의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자의 수로 나눈 평균 점수로 한다.
(신설 2011. 2. 14.)

제17조 [근무성적평정] ① 근무평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평정표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③ 직원이 전보후 2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부서에서 전보전까지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당해 부서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14.)

제18조 [근무성적평정기준]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동일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평정한다.
2.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신뢰성,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서식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1. 2. 14.)

제19조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직급별로 근무평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비율은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한다.

1. 수(61점 이상) 2할
2. 우(51점 ~ 60점) 3할
3. 양(35점 ~ 50점) 4할
4. 가(34점 이하) 1할

(신설 2011. 2. 14.)

제20조 [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직급별 승진소요최저기간의 기본경력과 그 초과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② 기본경력의 평정점은 14점을, 초과경력 평정점은 6점을 만점으로 하여 경력별평정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1. 2. 14.)

제21조 [경력기간계산불산입] 2주일 이상 휴가 또는 정직기간은 경력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휴가는 제외한다. (신설 2011. 2. 14.)

제22조 [가점평정] 가점평정은 근무평정대상기간중 해당직급에서 받은 표창에 한하여 가점을 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평정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1. 2. 14.)

제23조 [감점평정] 감점평정은 근무평정대상기간중 해당직급에서 받은 징계와 근무태만 등에 한하여 감점을 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평정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1. 2. 14.)

제 4 장 징 계 (2011. 2. 14. 장 제목 신설)

제24조 [징계절차] ① 직원인사규칙 제34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협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요구한다.

③ 협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사유, 상임이사회 소집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당직원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

⑥ 협회장은 징계심의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

(제8조의 2에서 이동 2011. 2. 14.)

제 5 장 포상휴가 등 (2011. 2. 14. 장 제목 신설)

제25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법원공무원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26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27조 [연차휴가] 직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28조 [병가] ① 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에는 그 기간을 연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 11. 1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 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29조 [포상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칙 제33조에 의한 포상을 받은 자
2.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장을 받은 자
3.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장의 포상을 받은 자

(제13조에서 이동 2011. 2. 14.)

제 6 장 기 타 (2011. 2. 14. 장 제목 신설)

제30조 [준용규정]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1. 2. 1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7. 12. 15)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11.)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개정 2000. 6. 26., 개정·신설 2002. 11. 11., 개정 2011. 12. 12. 】

직원채용기준표

<table>
<tr><th>직 급</th><th colspan="2">임 용 기 준</th></tr>
<tr><td>사 무 국 장</td><td colspan="2">2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td>사무부국장</td><td colspan="2">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td>과 장</td><td colspan="2">4급 직원으로서 4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td>대 리</td><td colspan="2">5급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td>주 임</td><td colspan="2">6급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td></tr>
<tr><td rowspan="8">직 원</td><td colspan="2">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다음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 산정</td></tr>
<tr><td>구 분</td><td>호 봉 가 산</td></tr>
<tr><td>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td><td>2호봉</td></tr>
<tr><td>4년제 대학 졸업자</td><td>4호봉</td></tr>
<tr><td>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td><td>6호봉</td></tr>
<tr><td>병역필자</td><td>복무기간 1년당 1호봉, 연미만은 절삭</td></tr>
<tr><td>경력인정자</td><td>환산경력 1년당 1호봉, 〃</td></tr>
<tr><td>기타</td><td>상임이사회가 결정</td></tr>
</table>

별표 2

【 개정 2002. 11. 11. 】

경력환산기준표

1. 사무직

경 역	환산율	비 고
변호사단체 근무경력	100%	
법률사무소 근무경력	80%	
공무원 및 교육법에 의한 교육공무원 경력 공공단체 및 상장기업 근무경력	70%	
군경력 : 3년까지 3년을 초과하는 경력	100% 70%	

2. 기능직 (2002. 11. 11. 신설)

경 역	환산율	비 고
해당직무와 동일한 계통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해당직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70%	

3. 전산, 경리 등 전문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경력환산은 제2호 기능직의 경력환산 기준표를 적용한다.

별표 3

【 신설 2011. 2. 14. 】

근 무 평 정 표

소 속 :
직 급 :
피평정자 :

평정자	직위	
	성명	(인)

(1) 근무성적표

평정요소 및 배점		평정기준	평정등급 및 평정점수		총점
근무성적	직무의 양	담당 직무를 기간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A(10.0) B(8.0) C(7.0) F(6.0)		
	직무의 질	담당 직무수행함에 있어 과정 및 결과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었는가?	A(10.0) B(8.0) C(7.0) F(6.0)		
직무수행 능력	지식 및 기술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A(10.0) B(8.0) C(7.0) F(6.0)		
	이해판단력 통솔력	담당 직무수행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 판단력과 부하직원에 대한 통솔력이 있는가?	A(10.0) B(8.0) C(7.0) F(6.0)		
	자질판단	상위직 승진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A(10.0) B(8.0) C(7.0) F(6.0)		
근무수행 태도	책임성 적극성 협조성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 책임감을 가지고 상하동료간 인화 협조하고 있는가?	A(5.0) B(4.0) C(3.0) F(2.0)		
	근무상황	담당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을 준수하고 있는가?	A(5.0) B(4.0) C(3.0) F(2.0)		
청렴도		부정과 불의에 야합하지 않고 사리보다는 공익에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A(10.0) B(8.0) C(7.0) F(6.0)		
총 점					

* 평정 등급구분 … A:매우 훌륭함, B:훌륭함, C:보통, F:미흡함

(2) 경력 성적표

구 분	직 급 별	평점 만점	평정점
기본경력	2급	14	
	3급	14	
	4급	14	
	5급	14	
	6급	14	
초과경력	기본경력 경과 후 1월~24월	2	
	기본경력 경과 후 25월 이상	4	
총 점			

(3) 직원 교육 참여

구 분(교육명 및 교육내용)	평정점 (만점 10점)
총 점	

별표 4

【 2011. 2. 14. 신설 】

승 진 후 보 자 명 부

작성일 :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

순 위		소 속	성 명	총평정점	평 정 점 내 역				비고
정기	조정				근무성적	경 력	교육 등 행사	가 · 감점	

별표 5 【 신설 2011. 2. 14. 】

경력별 평정점표

구 분	직급별	평점만점
기본경력	2급 3급 4급 5급 6급	14
초과경력	기본경력 경과 후 1월 ~ 24월 기본경력 경과 후 25월 이상	2 4

별표 6 【 신설 2011. 2. 14. 】

가점 평정점표

표창의 구분	평 정 점
훈장,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5점
협회장·장관표창	4점
기타 업무와 관련한 표창	3점

별표 7 【 신설 2011. 2. 14. 】

감정 평정점표

징계 등의 구분	평 정 점
정 직	5점
감 봉	4점
견 책	3점
시말서 1건	1점
결근 1일	1점
지각 3회	1점
직원연수 등	1점

급여규정

1984. 2. 13.
규정 제6호

전문개정 1991. 2. 11.
개 정 1991. 12. 23. 1994. 2. 15.
1995. 5. 13. 1996. 2. 12.
1997. 2. 10. 1997. 3. 17.
1997. 10. 13. 2000. 6. 26.
2002. 2. 4. 2002. 11. 11.
2006. 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장에 정한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의 종류] ① 급여의 종류는 본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으로 한다. (신설 2002. 2. 4.)
1. ~ 4. 〈삭제〉 (1997. 10. 13.)
② 총액임금제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에 관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2. 4.)

제3조 [급여의 결정] ① 급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정한다.
② 협회장은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반표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3.)
③ 급여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7. 10. 13.)

제4조 [급여의 계산] ① 본봉은 월급으로 하고,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삭제〉 (2002. 2. 4.)
③ 승급 등으로 본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④ 퇴직자의 본봉은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되 1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당월 7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달 본봉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⑤ 본봉의 일할 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본다.

제5조 [호봉결정] ① 〈삭제〉 (2002. 2. 4.)
② 승진된 자의 호봉은 승진된 직급의 호봉 중에서 승진 전 직급의 호봉보다 바로 상위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신설 1991. 12. 31.)

제6조 [호봉의 정기승급] ① 직원은 매년 1월 또는 7월에 승급사정을 받아 1호봉씩 정기승급한다. (개정 2002. 11. 11.)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

1. 승급자격기간 중 휴직 또는 정직된 자
2. 승급자격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승급자격기간 중 결근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4.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
5.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와 승급기간 중 경위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 (신설 2002. 2. 4.)

제7조 [호봉의 특별승급] ① 〈삭제〉 (1997. 10. 13.)

② 협회장은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7. 10. 13.)

제8조 [본봉] ① 협회장은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직급 · 호봉별 본봉표 · 직책수당표 · 가족수당표 및 직원별 급여지급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전항의 경우 협회장은 전년도, 금년도와의 대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13.)

③ 신규채용직원은 1년간 수습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해당 호봉의 90%를 지급한다. (신설 1997. 10. 13.)

제9조 [직책수당] ① 부서책임자, 회계출납 담당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직책수당은 매월 본봉에 부가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0조 [출납수당] 〈삭제〉 (1997. 10. 13.)

제11조 [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② 부양가족은 배우자(고정소득이 없는 자), 20세 미만의 2인 이내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하고 그 부양가족수는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11. 11.)

제12조 [후생수당] 〈삭제〉 (1997. 10. 13.)

제13조 [근속수당] 〈삭제〉 (1997. 10. 13.)

제14조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및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5조 [연차휴가수당] ①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 2. 13.)

②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휴가일수를 근무일수로 보고 계산한다. (개정 2006. 2. 13.)

③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 2. 13.)

④ 연차휴가수당은 연말에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6조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매월 별표(1)과 같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 2. 13.)

제17조 [체력단련수당] 〈삭제〉 (1997. 10. 13.)

제18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만 4세(49개월)부터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월 자녀 1인당 20,0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 2. 13.)

제19조 [물가수당] 〈삭제〉 (1997. 10. 13.)

제20조 [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연간 본봉의 4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13.)

②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 급여 중 본봉의 동 액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6. 26.)

③ 상여금은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 [퇴직금]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평균급여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1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에는 해당 근속연수에 2를 가산하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일 때에는 4를 가산한 수치를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② 평균급여 월액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④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합산한다.

⑤ 퇴직금은 퇴직 후 본인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 6. 26.)

제22조 [신용대출] 퇴직금기금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가계보조를 위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대출액은 해당직원의 퇴직금산정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1991. 12. 23.)

부 칙 (1991. 2. 11.)

① 이 규정은 1991. 2. 11.부터 시행한다.

② 1991년도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

부 칙 (1991. 12. 23.)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15.)

이 규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12.)

이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10.)

이 규정은 1997.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3)

①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급배수를 적용한다.
산식 : 근속연수× [150+(근속연수-5년)]÷100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 속 연 수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월 지 급 액	30,000원	40,000원	50,000원

사무처리규정

1989. 6. 26.
규정 제29호

개정 1998. 5. 25.
2000. 6. 26.
2001. 7. 9.
2005. 4. 18.
2014. 2. 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7조제2항 및 회규관리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본 협회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화의 원칙] ① 협회의 사무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 · 신속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그 요지를 문서에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제3조 [결재] ① 협회의 모든 사무는 사무차장, 사무총장, 소관 상임이사, 부협회장, 협회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② 협회장이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협회장이 대결하고 협회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 [사무의 인계·인수] 직원이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 · 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 · 관계문서 · 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계 · 인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2장 문서의 처리와 보존

제4조 [기안] ① 기안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안하여 결재가 끝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8. 5. 25.)
② 정기 보고사항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그 내용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③ 문서의 용지는 도표, 통계표, 증명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210mm×297mm)를

사용한다.

④ 문서작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첫째 항목 : 1, 2, 3, 4,……
2. 둘째 항목 : 가, 나, 다, 라,……
3. 셋째 항목 : (1), (2), (3), (4),……
4. 넷째 항목 : (가), (나), (다), (라),……
5. 위 항목 이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당히 구분할 수 있다.

⑤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 ·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⑥, ⑦, ⑧ 〈삭제〉 (1998. 5. 25.)

제4조의2 [문서의 통제] ① 협회장 등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통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의한 결재권자의 일치 여부
2. 기안문과 시행문서의 일치 여부
3. 문서번호, 시행문서상의 처리담당자 기재 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 여부
4. 전결, 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 여부
5. 첨부물의 첨부 여부 (신설 1998. 5. 25.)

제4조의3 [문서의 간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는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등록 · 결정서 등에 관계되는 문서 (신설 1998. 5. 25.)

제4조의4 [문서의 발송] ① 발송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재된 기안문을 정서하여 발송자의 직위명, 성명 및 직인을 찍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발송부에 문서번호와 발송연월일을 각 기입한다. 다만, 협회장으로부터 성명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 뜻의 지시가 있는 문서는 변협명, 위원회명 또는 직명만을 쓸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발송부는 필요시 해당과에서도 따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③ 협회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4조의5 [문서번호] 제4조의4 제1항에 의한 각 과별 문서번호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신설 1998. 5. 25.)

제5조 [문서의 접수, 처리] ① 접수된 문서는 총무과에서 개봉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문서의 첫면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찍은 후 주무과에 송부한다. (개정 1998. 5. 25.)

② 제1항의 문서접수부는 필요시 해당과에서도 따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③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문서는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5. 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제6조 [회의록] ① 모든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성립내용과 회의의 경과, 결의내용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문서의 분류] ① 문서는 부서별로 분류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1998. 5. 25.)

1. 1차 분류 : 대분류로서 그 구분기준은 각 부서별로 한다.
2. 2차 분류 : 중분류로서 1차분류의 하위분류로 그 구분기준은 각 소관이사별로 한다.
3. 3차 분류 : 소분류로서 2차분류에 속하는 사무의 하위분류로 그 기준은 2차분류별 세부사무로 한다. (신설 1998. 5.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문서의 분류번호는 별표 제2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는 가장 유사한 기능의 문서번호에 따른다. (개정 1998. 5. 25.)

③~④ 〈삭제〉 (1998. 5. 25.)

제7조의2 [문서의 편철] ① 처리가 끝난 문서는 소정의 문서철에 연도별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고, 한 개의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1년치를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의 양은 200매 내외로 철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문자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는 발생, 경과 및 완결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 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③ 소정의 문서철에 편철이 곤란한 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규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④ 편철된 문서의 표지는 별표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7조의3 [문서색인목록] ① 문서철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서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문서철 표지의 이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문서색인목록은 개별문서단위로 작성한다.

(신설 1998. 5. 25.)

제7조의4 [문서의 보관] ①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과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문서를 처리하는 처리과의 문서보관은 자물쇠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서보관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제7조의5 [문서의 이관] ①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총무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이관할 때에는 처리과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존문서인계 · 이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자체보관하고, 1부는 인계 · 이관되는 문서와 함께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8조 [문서의 보존] ① 이관된 문서는 일정한 문서보존실에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가 등에 정리 · 보존할 수 있다.

② 보존된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과, 문서명, 보존기간, 생산연도, 총매수, 분류번호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③ 보존문서 및 주무부서의 과장은 연 1회 이상 보존문서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대조하여 보존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존문서의 변질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98. 5. 25. 개정)

④~⑤ 〈삭제〉 (1998. 5. 25.)

제8조의2 [문서의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별표 제2호에 의거 영구, 30년, 10년, 5년으로 구분된다.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유사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③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 문서를 처리 · 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④ 협회장이 사료 또는 참고자료 기타 특별한 사유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록 또는 서류 등은 보존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9조 [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여야 할 때에는 폐기일시와 방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5.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존문서폐기대장에 폐기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폐기문서의 문서색인목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③ 소각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문서의 폐기에 대한 실무처리는 총무과에서 행한다. (신설 1998. 5. 25.)

제 3 장 재무관리 (1998. 5. 25. 본장삭제)

제10조 ~ 제12조 〈삭제〉 (1998. 5. 25.)

제 4 장 비품 및 도서의 관리

제13조 [비품의 관리] ①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록하고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비치 · 관리한다.
② 훼손된 비품은 이를 수리 재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도서의 관리] ① 도서는 별지 제8호의 도서대장에 등록하고 일정한 장소에 정리 · 보관한다. (개정 1998. 5. 25.)
② 열람자가 도서를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간행물 배포등] 잡지 기타 간행물의 간행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대장에, 배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배포상황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제 5 장 인장의 관리

제16조 [인장의 종류] ① 협회에서 사용할 인장은 회인, 회장직인, 법률구조사업회장인, 연수원장인, 사무총장인, 분과위원장인, 총회 의장인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인장을 둘 수 있다.
② 각 인장은 한 개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협회장 승인하에 용도별로 복수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일련번호를 붙여 각 인장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장의 등록] 총무과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인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인장을 신조 또는 개조할 때에는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제18조 [인장의 사용] ① 인장사용부서는 별표 제12호 서식에 의한 인장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 문서명, 날인연월일을 기재한 뒤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② 모든 발송문서는 결재가 끝난 뒤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문서는 사무차장이 전화로 승인을 받고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인장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인 : 사령장, 위촉장, 표창장, 단체결연장
2. 회장직인 : 대외발송문서, 제증명, 사무직원신분증, 계약서 등 권리문서
3. 법률구조사업회장인 : 법률구조사업회 관리문서
4. 연수원장인 : 변호사연수원 관리문서
5. 사무총장인 : 사무총장 관리문서
6. 분과위원장인 : 소관 위원회 관리문서
7. 총회 의장인 : 총회 관리문서

제19조 [인장의 제작] ① 인장의 자체는 한글 또는 한문 가로쓰기로 제작한다.

② 사용 중인 인장의 인영이 마멸로 인하여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인장의 보관] ① 모든 인장은 사무차장이 보관하며 일과후에는 함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장을 사무소 밖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인장의 폐기] ① 인장의 파손 기타 사유로 사용불가능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② 폐기승인된 인장은 지정된 장소에 1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하며, 사무차장은 인장등록대장에 폐기일, 방법, 입회자, 참고사항을 명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인장의 분실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부 칙

이 규정은 198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10.)

이 규정은 1993.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5.)

이 규정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8.)

이 규정은 2005. 4. 20.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00. 6. 26. 】

大韓辯護士協會

우 : 137-885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 3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전화 : 3476-4000~2 FAX : 3476-2770
담당과 : ○○과, 과장 : ○○○, 담당 : ○○○, E-mail : ○○○○@koreanbar.or.kr 홈페이지 : koreanbar.or.kr

문서번호 X 0 0 0
시행일자 X 0 0 0

수 신

참 조 X 0 0 0

선 결	①	②	지시	③	
기안일	20 . . .			⑥	
보 존	년		결	⑥	
처리과	④			⑥	
과 장	⑤		재	⑥	
담당자	⑤			⑥	

제 목 X 0 0 0

1.※(본문내용)----------
------0(X는 2타(한글1자)※는 1타(숫자1자)를 뛰움)
가.※0 0 0----------0
(1)※----------0
첨부X000----------0X 끝.

〈 처 리 요 령 〉
① ② 선결 : ①란에 결재권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②란에 서명한다.
③ 지 시 : 결재권자가 선결한 후 지시할 일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④ 처리과 : 처리과명을 기재한다.
⑤ 과장·담당자 : 처리과의 과장 및 문서처리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⑥ 결재 : 결재할 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⑦ 문서생산과에서 당해 문서의 처리·문의에 응할자를 기재한다.
⑧ 성안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결재란을 수신인 결재용으로 변경하여 발송한다.
※ "수신"은 "받음"으로, "첨부"는 "붙임"으로, "수신처"는 "받는곳"으로 하여 할 수 있다.

좌측 끝에서 4.5㎝~5.5㎝ |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 회 장 ○ ○ ○ | 우측 끝에서 4.5㎝~5.5㎝

하단에서 4.5㎝~5.5㎝

수신처 : X0 0 0

별지 제2호 서식

문 서 발 송 부

번호	발송 일자	문서 번호	수신	발신	제 목	첨부물		발송방법		원 본 인수인	비 고
						명칭	수량	우편	사송		

별지 제3호 서식

문 서 접 수 부

번호	일자	문서 번호	발신	제 목	첨부물		처리 담당	인계 일자	인수인	비 고
					명칭	수량				

별지 제4호 서식

문서색인목록

색인 번호	연월일	문서번호	제 목	수신	발신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보존문서인계 · 이관서

부서명 :

일련번호	보존기간	생산연도	분류번호	문 서 철 명(수량)
받은날			받은사람	

별지 제6호 서식

보존문서기록대장

생산부서 : 생산연도 :

일련번호	분류번호	보존기간	문 서 철 명(수량)	이관연월일	폐기연월일

별지 제7호 서식

보존문서폐기대장

분류번호							
일련번호	허 가 연월일	생산연도	문 서 철 명(수량)	폐기일	폐기방법	확인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도 서 대 장

일 자	등록 번호	청구 번호	저 자	서 명	권차	출판사	출판년	수입처	가격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간행물대장

간행일자	등록번호	간 행 물 명	권차	출판과	부수	확인

별지 제10호 서식

간행물배포대장

1. 간행물

간행일자	등록번호	간 행 물 명	권차	출판사	부수

2. 배포현황

배 포 처	배 포 일	부 수	비 고

별지 제11호 서식

인장등록대장

종 류	인 형	신 조		개 조		폐 기			
		일자	인재	일자	인재	일자	방법	입회자	확인인

별지 제12호 서식

인장사용대장

연번	일자	관 련 부 서	문 서 번 호	수 신	문 서 명	통수	날인자

별표 제1호 서식

문 서 번 호

부 서 명	문 서 번 호	비 고
총 무 과	총무 제000호 재무 제000호	
법 제 과	법제 제000호	
인 권 과	인권 제000호 구조 제000호	
회 원 과	교육 제000호 회원 제000호 등록 제000호 연수 제000호	
홍 보 과	공보 제000호	
심 사 과	징계 제000호 조사 제000호 진정 제000호	
사 업 · 기 획 과	사업 제000호 기획 제000호	
국 제 과	국제 제000호	

별표 제2호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1. 제1차 분류 및 분류번호

부 서 명	분류번호	비 고
총 무 과	100	
법 제 과	200	
인 권 과	300	
회 원 과	400	
홍 보 과	500	
심 사 과	600	
사 업 · 기 획 과	700	
국 제 과	800	

2. 제2차 분류 및 제3차 분류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총 무 과	100	101	총무이사		
			101- 1	회칙철	영구
			101- 2	규칙철	영구
			101- 3	규정철	영구
			101- 4	총회회의록철	영구
			101- 5	회무인계서철	영구
			101- 6	직원인사사령부	영구
			101- 7	퇴직인사사령부	영구
			101- 8	직원인사기록카드	영구
			101- 9	인장등록대장	영구
			101-10	비품대장	영구
			101-11	보존문서인계 · 이관서철	영구
			101-12	보존문서기록대장	영구
			101-13	세칙 · 지침철	영구

[총무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총 무 과	100	101	101-14	보존문서폐기대장	영구
			101-15	이사회회의록철	10년
			101-16	상임이사회회의록철	10년
			101-17	회무감사 및 감사보고서철	10년
			101-18	총회관계서류철	10년
			101-19	회무일지	10년
			101-20	인장사용대장	10년
			101-21	문서접수부	10년
			101-22	문서발송부	10년
			101-23	문서색인목록대장	10년
			101-24	노사관계서류철	10년
			101-25	직원구비서류철	10년
			101-26	회무보고서철	10년
			101-27	이사회철	5년
			101-28	상임이사회철	5년
			101-29	총무위원회철	5년
			101-30	사업계획서철	5년
			101-31	지방변호사회관계철	5년
			101-32	제증명원철	5년
			101-33	의협과의 간담회철	5년
			101-34	감정인등추천관계서류철	5년
			101-35	일반잡서류철	5년
			101-36	출근부	5년
			101-37	대법원관계서류철	5년
			101-38	법무부관계서류철	5년
			101-39	휴가원철	5년
			101-40	결근·조퇴원·지참철	5년
			101-41	한국법률문화상운영위원회철	5년
			101-42	사법연수원관계서류철	5년
			101-43	지방변호사회총회철	5년

[총무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총 무 과	100	102	재무이사		
			102- 1	예결산서철	30년
			102- 2	회계장부	10년
			102- 3	입·출금전표(증빙서)철	10년
			102- 4	급여지급대장	10년
			102- 5	갑근세연말정산철	10년
			102- 6	매입처별세금계산서철	10년
			102- 7	세무보고서철	10년
			102- 8	의료보험관계서류철	10년
			102- 9	국민연금관계서류철	10년
			102-10	고용보험관계서류철	10년
			102-11	직원퇴직금철	10년
			102-12	영수증원부수급대장	5년
			102-13	원고료지급대장(인권과정의, 대한변협신문)	5년
			102-14	시간외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 지급대장	5년
			102-15	분담금납부고지서철	5년
			102-16	재무관계서류철	5년
			102-17	회계감사관계철	5년
			102-18	예산지출신청서철	5년
			102-19	소모품·도서구입신청서철	5년
			102-20	비품신청서철	5년
			102-21	출장비청구서철	5년
			102-22	세제위원회철	5년
			102-23	관리비관계서류철	5년
			102-24	신문광고비입금대장	5년
			102-25	부가가치세철	5년
			102-26	매출처별세금계산서철	5년
			102-27	재무위원회철	5년

[법제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법 제 과	200	201	법제이사		
			201- 1	법제위원회철	5년
			201- 2	통일문제연구위원회철	5년
			201- 3	광고심사위원회철	5년
			201- 4	지식재산권위원회철	5년
			201- 5	사법평가위원회철	5년
			201- 6	법조제도개혁연구위원회철	10년
			201- 7	여성위원회철	5년
			201- 8	각법령관계건의·의견서철	10년
			201- 9	변호사법질의서철	5년
			201-10	일반법률질의서철	5년
			201-11	법의날행사철	5년
			201-12	대법원·헌재국선변호인관계철	5년
			201-13	대법원간담회철	5년
			201-14	법제관계기타서류철	5년
			201-15	대법원예규등관계철	5년

[인권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인 권 과	300	301	인권이사		
			301- 1	인권위원회서류철	5년
			301- 2	인권관련소위원회철	5년
			301- 3	인권보고서철	5년
			301- 4	일반진정서철	5년
			301- 5	인권관계기타서류철	5년
			301- 6	일반진정서처리부철	5년
			301- 7	세계인권선언기념행사철	5년
			301- 8	국제사면위원회철	5년
			301- 9	IBA인권연구소철	5년
			301-10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철	5년
			301-11	환경·에너지문제연구총서철	5년
			301-12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철	5년
			301-13	독도특별위원회철	5년
		302	법률구조		
			302- 1	법률구조사건처리카드철	30년
			302- 2	법률구조사업회철	5년
			302- 3	법률구조신청서철	5년
			302- 4	법률구조관계잡서류철	5년

[회원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회 원 과	400	401	교육이사		
			401- 1	변호사연수원철	10년
			401- 2	특별연수관계철	10년
			401- 3	변호사연수회관계서류철	10년
			401- 4	교육위원회관계서류철	5년
			401- 5	교육관계일반서류철	5년
			401- 6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철	5년
		402	회원이사		
			402- 1	변호사명부	영구
			〈삭제〉 (2014. 2. 3.)		
			402- 3	법무법인명부	영구
			402- 4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명부	영구
			402- 5	변호사명부색인철	영구
			402- 6	변호사등록거부철	영구
			402- 7	등록취소철	영구
			402- 8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철	영구
			〈삭제〉 (2014. 2. 3.)		
			402-10	등록사무처리대장	영구
			402-11	법무법인관계서류철	영구
			402-1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관계서류철	영구
			402-13	변호사업무정지명령철	영구
			402-14	변호사현황철	10년
			402-15	소속변경등록신청서철	10년
			402-16	변호사개업신고서철	5년
			402-17	변호사휴업신고서철	5년
			402-18	사무소이전신고서철	5년
			402-19	명부변동신고서철	5년
			402-20	보완명령철	5년
			402-21	등록서류접수대장	5년
			402-22	변호사등록에관한보고서철	5년
			402-23	회원등록관계제증명발급대장	5년
			402-24	회원위원회관계서류철	5년
			402-25	회원위원회일반서류철	5년
			402-26	등록심사위원회철	5년
			402-27	고충처리위원회관계서류철	5년
			402-28	고충처리사건철	5년

[홍보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홍 보 과	500	501	공보이사		
			501- 1	연도별회지철	영구
			501- 2	도서대장	영구
			501- 3	간행물대장	10년
			501- 4	성명서철	10년
			501- 5	회지발송현황철	5년
			501- 6	회지납본철	5년
			501- 7	회지정기구독철	5년
			501- 8	회지등록관계서류철	5년
			501- 9	간행물배포대장	5년
			501-10	도서대출대장	5년
			501-11	공보관계서류철	5년
			501-12	회지편집위원회철	5년
		502	공보이사		
			502- 1	신문편집위원회철	5년
			502- 2	신문편집위원회 관계서류철	5년
			502- 3	논설위원관계철	5년
			502- 4	신문모니터위원관계철	5년
			502- 5	제00호신문원고관계철	5년
			502- 6	신문배포현황등관계철	5년
			502- 7	신문정기구독철	5년
			502- 8	신문구독지로영수증철	5년
			502- 9	신문철	영구
			502-10	신문축쇄판철	영구
			502-11	원고료등지불관계철	5년
			502-12	신문등록관계서류철	5년
			502-13	기타 신문관계서류철	5년

[심사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심 사 과	600	601	회원이사		
			601- 1	윤리위원회의사록철	10년
			601- 2	회원진정처리철	5년
			601- 3	개인별 진정기록철	5년
			601- 4	진정이첩 결정철	5년
			601- 5	진정처리결과통지결정철	5년
			601- 6	경위서제출요청결정철	5년
			601- 7	진정서처리결과보고철	5년
			601- 8	진정관련잡서류철	5년
			601- 9	윤리위원회결정철	5년
			601-10	윤리위원회잡서류철	5년
			601-11	감찰위원관계철	5년
			601-12	감찰보고서철	5년
		602	회원이사		
			602- 1	조사위원회결정철	10년
			602- 2	조사위원회회의록철	5년
			602- 3	조사위원회잡서류철	5년
			602- 4	조사사건부	5년
			602- 5	개인조사기록철	5년
		603	회원이사		
			603- 1	징계결정서철	영구
			603- 2	징계사건부	영구
			603- 3	개인별징계기록철	30년
			603- 4	징계개시청구철	10년
			603- 5	징계위원회결정문서철	10년
			603- 6	징계위원회의사록철	5년
			603- 7	징계위원회잡서류철	5년
			603- 8	징계결과통보서철	5년
			603- 9	이의신청경유철	5년
			603-10	이의신청서철	5년

[사업·기획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사업·기획과	700	701	사업이사		
			701-1	사업위원회철	10년
			701-2	당직변호위원회철	5년
			701-3	국선변호관계철	5년
			701-4	공익활동심사위원회철	5년
			701-5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철	5년
			701-6	사업기타서류철	5년
		702	기획이사		
			702-1	기획위원회철	10년
			702-2	변호사직역확보대책위원회철	5년
			702-3	기획기타서류철	5년
			702-4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철	5년

[국제과]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3차		
국제과	800	801	국제이사		
			801- 1	IBA관계서류철	10년
			801- 2	LAWASIA관계서류철	10년
			801- 3	일변연과의 상호교류회철	10년
			801- 4	중화전국율사협회와의 상호교류회철	10년
			801- 5	아변장회의관계서류철	10년
			801- 6	국제관계서류철	5년
			801- 7	법률사무개방연구관계서류철	5년

별표 제3호

일반문서철표지

〈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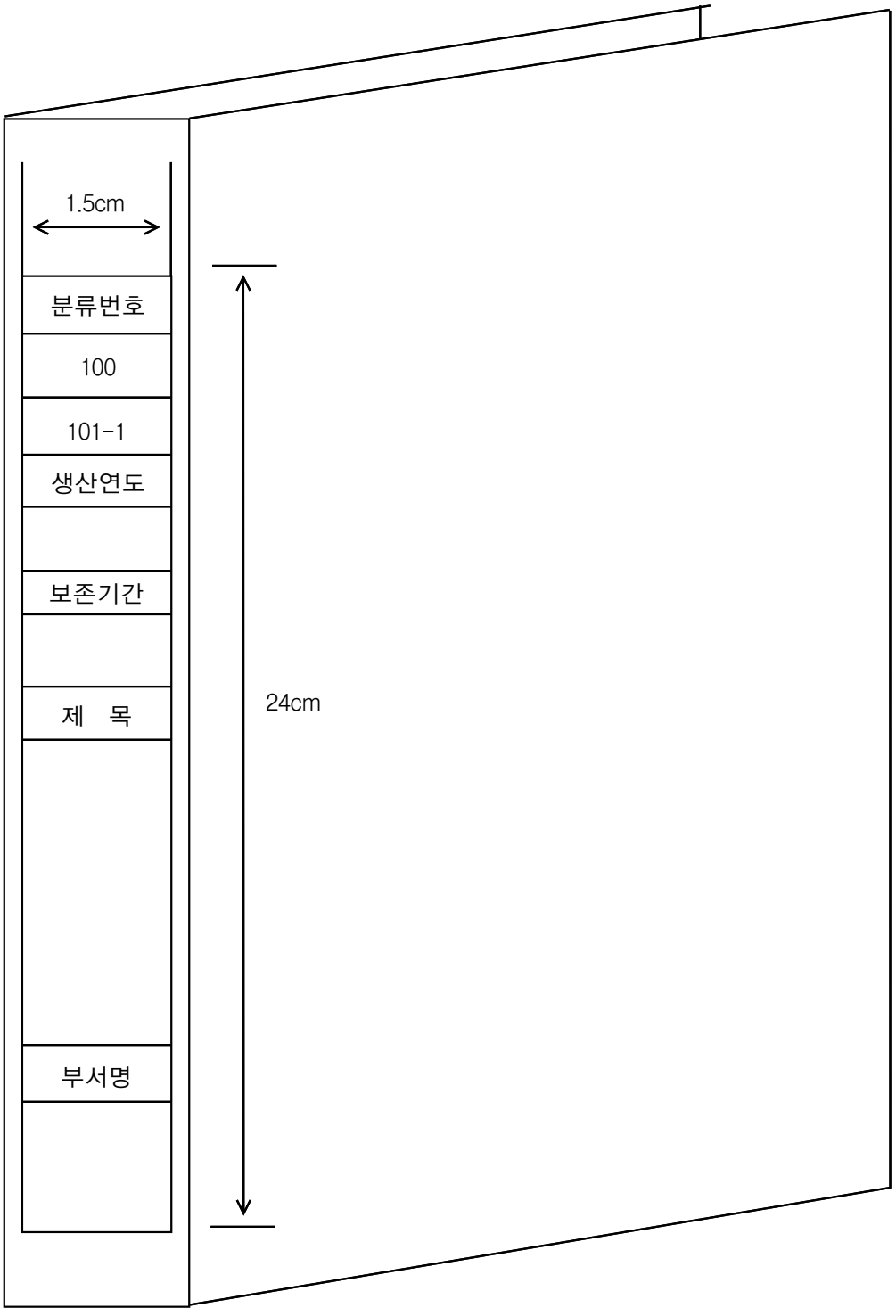

〈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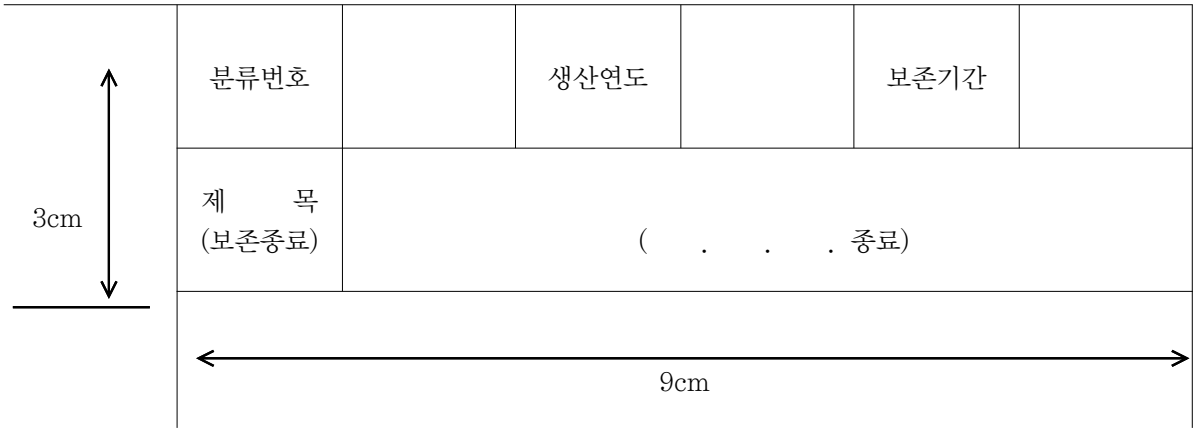

규칙·규정 번호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칙	제 1 호	회규관리규칙	1983.05.21.
	제 2 호	총회운영규칙	1983.05.21.
	제 3 호	이사회운영규칙	1983.05.21.
	제 4 호	상임이사회운영규칙	1983.05.21.
	제 5 호	위원회운영규칙	1983.05.21.
	제 6 호	사무국직제규칙	1983.05.21.
	제 7 호	임원인사규칙	1983.05.21.
	제 8 호	직원인사규칙	1983.05.21
	제 9 호	사업계획규칙	1983.05.21.
	제 10 호	회지간행규칙	1983.05.21.
	제 11 호	변호사연수규칙	1983.05.21.
	제 12 호	한국법률문화상규칙	1983.05.21.
	제 13 호	분담금납부규칙	1983.05.21.
	제 14 호	예산회계규칙	1983.05.21.
	제 15 호	변호사등록규칙	1983.05.21.
	제 16 호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05.21.
	제 17 호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05.21.
	제 18 호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1983.05.21.
	제 19 호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1983.05.21.
	제 20 호	변호사징계청구규칙	1983.05.21.
	제 21 호	변호사사무원규칙	1983.05.21.
	제 22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칙	1986.06.22.
	제 23 호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1986.06.22.
	제 24 호	변호사포상규칙	1986.06.22.
	제 25 호	변호사징계규칙	1993.05.24.
	제 26 호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1997.02.22.
	제 27 호	신문간행규칙	2000.07.04.
	제 28 호	임원선거규칙	2002.11.25.
	제 29 호	변호사신분증규칙	2004.02.23.
	제 30 호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2006.02.20.
	제 31 호	모의재판경연대회운영위원회규칙	2010.02.08.
	제 32 호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2010.02.08.
	제 33 호	종합지간행규칙	2011.12.12.
	제 34 호	협회장및대의원선거규칙	2012.02.20.
	제 35 호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규칙	2012.02.20.
	제 36 호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10.15.
	제 37 호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2012.10.15.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1 호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	1983.01.17.
	제 2 호	세제위원회규정	1983.06.27.
	제 3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3.06.27.
	제 4 호	사할린교포귀환추진위원회규정	1983.06.27.
	제 5 호	회계장부및입금전표등작성규정	1984.02.13.
	제 6 호	급여규정	1984.02.13.
	제 7 호	여비규정	1984.02.13.
	제 8 호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규정	1985.03.18.
	제 9 호	윤리위원회규정	1985.06.10.
	제 10 호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1985.06.10.
	제 11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정	1985.09.09.
	제 12 호	경조규정	1985.12.27.
	제 13 호	변호사등록규칙에의한각종신고서의첨부서류에관한규정	1986.02.10.
	제 14 호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1986.03.17.
	제 15 호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규정	1986.06.10.
	제 16 호	헌법재판소연구위원회규정	1987.03.09.
	제 17 호	국제위원회규정	1987.03.09.
	제 18 호	변호사직역위원회규정	1987.03.09.
	제 19 호	고문추방운동본부규정	1987.06.01.
	제 20 호	사법제도연구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8.02.15.
	제 21 호	회지편집위원회규정	1988.04.18.
	제 22 호	법령개폐특별위원회규정	1988.08.01.
	제 23 호	사법시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88.08.01.
	제 24 호	행정관계심의위원회규정	1988.12.19.
	제 25 호	노사관계연구위원회규정	1988.12.19.
	제 26 호	세제위원회규정	1989.02.13.
	제 27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9.02.13.
	제 28 호	임원선출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9.03.28.
	제 29 호	사무처리규정	1989.06.26.
	제 30 호	위임전결규정	1989.06.26.
	제 31 호	아세아변호사협회장회의집행위원회규정	1990.03.30.
	제 32 호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규정	1991.02.11.
	제 33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02.11.
	제 34 호	사법시험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91.06.24.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35 호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1991.06.24.
	제 36 호	법정위원회규정	1984.02.13.
	제 37 호	고충처리위원회규정	1991.10.21.
	제 38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10.21.
	제 39 호	직원인사규정	1991.12.23.
	제 40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2.07.27.
	제 41 호	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1984.02.13.
	제 42 호	컴퓨터연구위원회규정	1992.12.14.
	제 43 호	일본전후책임문제위원회규정	1993.03.23.
	제 44 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1993.06.28.
	제 45 호	법조제도개혁연구위원회규정	1995.02.13.
	제 46 호	당직변호위원회규정	1995.09.11.
	제 47 호	변호사보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95.09.11.
	제 48 호	특허소송연구위원회규정	1997.10.13.
	제 49 호	윤리위원회규정	1997.12.15.
	제 50 호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1998.05.25.
	제 51 호	회계처리규정	1998.05.25.
	제 52 호	사법평가위원회규정	1999.03.15.
	제 53 호	21세기변호사위원회규정	1999.03.15.
	제 54 호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2000.06.26.
	제 55 호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2000.06.26.
	제 56 호	변협50년사발간위원회규정	2001.02.12.
	제 57 호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2002.02.04.
	제 58 호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2.11.11.
	제 59 호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2002.11.11.
	제 60 호	법조제도연구위원회규정	2003.02.10.
	제 61 호	여성위원회규정	2003.02.10.
	제 62 호	변호사직역확보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04.04.19.
	제 63 호	법학전문대학원특별위원회규정	2005.04.18.
	제 64 호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5.04.18.
	제 65 호	독도특별위원회규정	2005.10.10.
	제 66 호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2005.10.10.
	제 67 호	지식재산권위원회규정	2005.10.10.
	제 68 호	연수원건립추진위원회규정	2006.07.14.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69 호	노인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7.02.05.
	제 70 호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2007.02.05.
	제 71 호	회지게재논문심사규정	2007.02.05.
	제 72 호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07.04.16.
	제 73 호	임원인사규정	2007.04.16.
	제 74 호	대변인규정	2007.04.16.
	제 75 호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07.04.16.
	제 76 호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07.07.16.
	제 77 호	연수교육심사위원회규정	2007.07.16.
	제 78 호	개별연수방법등에관한규정	2007.07.16.
	제 79 호	재개발 · 재건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9.02.16.
	제 80 호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2009.09.14.
	제 81 호	변호사백서간행특별위원회규정	2009.09.14.
	제 82 호	협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09.09.14.
	제 83 호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운영규정	2009.09.14.
	제 84 호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	2009.11.23.
	제 85 호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2009.11.23.
	제 86 호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2009.11.23.
	제 87 호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09.11.23.
	제 88 호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2009.11.23.
	제 89 호	2020년IBA총회서울유치추진위원회규정	2009.11.23.
	제 90 호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9.11.23.
	제 91 호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규정	2009.11.23.
	제 92 호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제 93 호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제 94 호	간통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제 95 호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2010.01.25.
	제 96 호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제 97 호	반부패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제 98 호	변협포럼운영규정	2010.01.25.
	제 99 호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0.04.05.
	제 100 호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규정	2010.07.19.
	제 101 호	국제교류특별위원회규정	2010.12.06.
	제 102 호	공익소송특별위원회규정	2010.12.06.
	제 103 호	자료보존특별위원회규정	2010.12.06.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104 호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02.14.
	제 105 호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05.23.
	제 106 호	IT특별위원회규정	2011.05.23.
	제 107 호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05.23.
	제 108 호	회칙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1.05.23.
	제 109 호	종합지편집위원회규정	2011.05.23.
	제 110 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05.23.
	제 111 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2012.04.23.
	제 112 호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12.04.23.
	제 113 호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2.04.23.
	제 114 호	정치발전위원회규정	2012.04.23.
	제 115 호	협회장및대의원선거규칙시행규정	2012.09.24.
	제 116 호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규정	2012.11.21.
	제 117 호	변호사공익대상규정	2012.12.28.
	제 118 호	법조일원화위원회규정	2013.02.01.
	제 119 호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2013.05.13.
	제 120 호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2013.05.13.
	제 121 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2013.09.09.
	제 122 호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규정	2013.09.09.
	제 123 호	입법평가위원회규정	2014.02.03.
	제 124 호	IT법정책위원회규정	2014.06.02.
	제 125 호	입법 · 행정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4.06.02.
	제 126 호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및진상조사특별위원회규정	2014.06.02.
	제 127 호	도산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4.09.22.

폐지된 회규

구분	회규번호	규 칙 · 규 정 명	제 정 일 자	폐 지 일 자
규칙	제 19 호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1983. 05. 21.	2000. 01. 01.
	제 20 호	변호사징계청구규칙	1983. 05. 21.	1993. 05. 24.
	제 22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칙	1986. 06. 22.	2009. 10. 19.
규정	제 2 호	세제위원회규정	1983. 06. 27.	1988. 06. 28.
	제 3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3. 06. 27.	1988. 06. 28.
	제 4 호	사할린교포귀환추진위원회규정	1983. 06. 27.	1987. 03. 09.
	제 5 호	회계장부및입금전표등작성규정	1984. 02. 13.	1998. 05. 25.
	제 8 호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규정	1985. 03. 18.	1989. 03. 20.
	제 9 호	윤리위원회규정	1985. 06. 10.	1987. 03. 09.
	제 11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정	1985. 09. 09.	2009. 09. 14.
	제 14 호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1986. 03. 17.	1989. 02. 13.
	제 15 호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규정	1986. 06. 10.	2009. 04. 13.
	제 16 호	헌법재판연구위원회규정	1987. 03. 09.	1991. 04. 08.
	제 17 호	국제위원회규정	1987. 03. 09.	1989. 03. 20.
	제 18 호	변호사직역위원회규정	1987. 03. 09.	1989. 03. 20.
	제 19 호	고문추방운동본부규정	1987. 06. 01.	1989. 02. 13.
	제 20 호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8. 02. 15.	1995. 02. 13.
	제 22 호	법령개폐특별위원회규정	1988. 08. 01.	1989. 02. 13.
	제 23 호	사법시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88. 08. 01.	1989. 03. 28.
	제 24 호	행정관계법심의위원회규정	1988. 12. 19.	1989. 03. 28.
	제 25 호	노사문제연구위원회규정	1988. 12. 19.	1991. 04. 08.
	제 26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9. 02. 13.	2003. 02. 10.
	제 28 호	임원선출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9. 03. 28.	1991. 04. 08.
	제 31 호	아세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집행위원회규정	1990. 03. 30.	1991. 05. 11.
	제 33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 02. 11.	1992. 07. 27.
	제 34 호	사법시험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91. 06. 24.	1995. 02. 13.
	제 36 호	법정위원회규정	1984. 02. 13.	1998. 05. 25.
	제 38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 10. 21.	1992. 07. 27.
	제 40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2. 07. 27.	1993. 05. 10.
	제 41 호	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1984. 02. 13.	1998. 05. 25.
	제 42 호	컴퓨터연구위원회규정	1992. 12. 14.	2003. 02. 10.
	제 43 호	일본전후책임문제위원회규정	1993. 03. 23.	2003. 02. 10.
	제 45 호	법조제도개혁연구위원회규정	1995. 02. 13.	1999. 03. 14.
	제 47 호	변호사보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95. 09. 11.	2000. 01. 01.
	제 48 호	특허소송연구위원회규정	1997.10. 13.	2005. 10. 10.

구분	회규번호	규 칙 · 규 정 명	제 정 일 자	폐 지 일 자
규정	제 53 호	21세기변호사위원회규정	1999. 03. 15.	2003. 02. 10.
	제 56 호	변협50년사발간위원회규정	2001. 02.12.	2003. 02. 10.
	제 59 호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2002. 11. 11.	2012. 11. 21.
	제 62 호	변호사직역확보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04. 04. 19.	2009. 04. 13.
	제 64 호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5. 04. 18.	2009. 04. 13.
	제 77 호	연수교육심사위원회규정	2007. 07. 16.	2009. 09. 14.
	제 73 호	임원인사규정	2007. 04. 16.	2012. 09. 24
	제 79 호	재개발 · 재건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9. 02. 16.	2011. 05. 23.

법 규 집

인 쇄 2014. 12.
발 행 2014. 12.
편집인 · 발행인 위 철 환
발 행 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 3476-4000